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03-10

2020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303-10

2020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CONTENTS

제 1 편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
1. 법적근거 3
 2. 정의 3
 3. 목적 3
 4. 필요성 3

제 2 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
1. 수행체계 7
 2. 의료급여관리사 8
 3. 예산 13

제 3 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
1. 지역유형 17
 2. 사례관리 대상 17
 3. 사례관리 관리인원 18
 4. 사례관리 수행횟수 19
 5. 사례회의 19

제4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제1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23
I. 개요	25
1. 정의	25
2. 목적	25
3. 관리대상	25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25
5. 업무 흐름도	26
II.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실제	27
1. 대상자 선정	27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29
3. 종결	46
4. 종결 후 계속 관리	46
제2장 고위험군 사례관리	47
I. 개요	49
1. 정의	49
2. 목적	49
3. 관리대상	49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49
5. 업무 흐름도	50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51
1. 대상자 선정	51
2. 요구 사정	55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67
4. 수행	69
5. 평가 및 종결	80

CONTENTS

제3장 장기입원 사례관리	85
I. 개요	87
1. 정의	87
2. 목적	87
3. 관리대상	87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88
5.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88
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연계	88
7.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계)	89
8. 업무 흐름도	90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91
1. 대상자 선정	91
2. 요구 사정	94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09
4. 수행	111
5. 평가 및 종결	121
III.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	124
1. 의료급여기관 대상 선정	124
2. 협조 요청	126
3. 간담회 개최	128
4. 방문 및 모니터링	130
IV.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32
1. 사회복지시설 대상 선정	132
2. 협조 요청	134
3. 간담회 개최	135
4. 방문 및 모니터링	137
제4장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139
I. 개요	141
1. 정의	141
2. 목적	141

3. 관리대상	141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141
5. 업무 흐름도	143
II.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실제	144
1. 대상자 선정	144
2. 요구 사정	145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47
4. 수행	150
5. 평가 및 종결	151
제5장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153
1. 개요	155
2. 목적	155
3. 내용	155
4. 종류	155
5. 연계대상	156
6. 연계방법	157
7. 의뢰받은 경우	160
8. 사례관리 회의 참석	160
9. 기타 협조사항	160

제5편

각종 서식

제6편

부 록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안)	195
----------------------	-----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신규대조표

쪽수	2019년	2020년
9	<p>제2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p> <p>2. 의료급여관리사</p> <p>나. 인력배치</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나) 인원 : 17개 시·도청 32명</p>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나) 인원 : 228개 자치구 시·군·구청 604명</p>	<p>제2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p> <p>2. 의료급여관리사</p> <p>나. 인력배치</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나) 인원 : 17개 시·도청 31명</p>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나) 인원 : 228개 자치구 시·군·구청 605명</p> <p>※ 임기제공무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가능 여부는 '의료급여관리사 예산 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기초의료보장과 -4458, 2018.5.31.) 공문 참고 <신설></p>
11	<p>2. 의료급여관리사</p> <p>라. 업무내용</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장기입원 사례관리</p>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보장기관 특성에 따른 특수사업 실시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홍보 및 교육</p>	<p>2. 의료급여관리사</p> <p>라. 업무내용</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장기입원 사례관리 수행 및 지원 : 요양병원 신규입원자, 관외입원자 관리, 심사연계 중재 등</p>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시·군·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 · 사례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p>
12	<p>마. 직무교육</p> <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4) 사이버교육 · 교육내용 : 의료급여사업안내, 약물의 이해 Ⅰ, Ⅱ, Ⅲ</p>	<p>마. 직무교육</p> <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p> <p>4) 사이버교육 · 교육내용 : 의료급여사업안내</p>

쪽수	2019년	2020년
32	제4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제1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1. 개요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가. 서신 · 리플릿활용 - 파일다운로드 (※ 수정보완 또는 자체제작 가능)	제4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제1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1. 개요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가. 서신 · 리플릿활용 - 파일다운로드 (※ <u>저작권 관련 무단 제작 또는 복사·배포 유의</u>)
49	제2장 고위험군 사례관리 1. 개요 1. 정의 ●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제2장 고위험군 사례관리 1. 개요 1. 정의 ●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u>중</u> 에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79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4. 수행 나. 서비스 수행 내용 3) 자원연계 자원연계 • 자원연계 계획, 서비스 수혜 여부 동의 등 안내 •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기본 정보 제공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4. 수행 나. 서비스 수행 내용 3) 자원연계 자원연계 • 자원연계 계획, 서비스 수혜 여부 동의 안내 • <u>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3] 작성<신설></u> • <삭제>
87	제3장 장기입원 사례관리 1. 개요 1. 정의 ●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제3장 장기입원 사례관리 1. 개요 1. 정의 ●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u>중</u> 에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신규대조표

쪽수	2019년	2020년
88	<p>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따라 퇴원하는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연계대상 : 만 65세 미만의 퇴원자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신체수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3개월, 40시간) 	<p>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의료급여사례관리(신규군제외)에 따라 퇴원하는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연계대상 : 만 65세 미만의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신체수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6개월, 40시간) ※ 시·군·구 가사간병담당부서와 대상자 중복 지원여부 등 사전 확인
89	<p>7. 기타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p>	<p>7.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 모델 개발 - 대상자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재정 효율화가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제도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시범사업 기간 : 2019년 6월~ (2년간 실시예정) ● 시범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노인형 13개 시·군·구) 의료급여 퇴원자 ● 시범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요구 및 필요도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지역 의료급여관리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관부서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하여 장기입원사례관리 수행 및 퇴원 후 필요자원 연계
105	<p>II. 장기입원 사례관리 실제</p> <p>2. 요구 사정</p> <p>나. 요구 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점수 사정 영역 	<p>II. 장기입원 사례관리 실제</p> <p>2. 요구 사정</p> <p>나. 요구 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점수 사정 영역

쪽수	2019년		2020년	
	영역	세부항목	영역	세부항목
	V. 지지 체계 구축	2. 요구되는 서비스 수 대상자 초기 면담 시 퇴원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원 서비스 수 매우 많음(10개 이상) 많음(6~9개) 보통(3~5개) 적음(1~2개) 없음	V. 지지 체계 구축	2. 자원 연계 정도 현재 대상자에게 필요로 되는 자원에 비해 연계된 자원의 충족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 1. 매우 부족 2. 약간 부족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나. 서비스 수행 내용 3) 자원연계 및 의뢰	<p>▣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및 의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기준으로 관할 보장기관에서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타 시·도 입원 시 해당 보장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음. ※ 의뢰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와 협의할 것 • 의뢰받은 보장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한 경우 의뢰한 보장기관과 의뢰받아 사례관리를 수행한 보장기관 모두 실적으로 인정 	<p>나. 서비스 수행 내용 3) 자원연계 및 의뢰</p> <p>▣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및 의뢰 ▣</p> <p>※ 타 시·군·구 의뢰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119		<p>▣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및 의뢰 ▣</p> <p>예)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나 경기도 수원시에 입원 중인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서초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한 경우 : 관외관리 • 경기도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의뢰·수행한 경우 : 관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신규대조표

쪽수	2019년	2020년															
119		<p>■ 시·도 및 시·군·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비교 ■ <신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80 379 832 449">구분</th> <th data-bbox="832 379 1069 449">시·도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th> <th data-bbox="1069 379 1302 449">시·군·구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80 449 832 741">관리 대상</td> <td data-bbox="832 449 1069 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에서 도로 관리 의뢰한 경우 (도내 시·군청과 의료기관 소재 시·군청 간 편도 거리 50km를 초과한 경우) </td> <td data-bbox="1069 449 1302 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td> </tr> <tr> <td data-bbox="780 741 832 883">수행 주체</td> <td data-bbox="832 741 1069 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의 관외 전담 의료급여관리사 * 미채용 지역 : 기존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td> <td data-bbox="1069 741 1302 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td> </tr> <tr> <td data-bbox="780 883 832 1024">관리 인원</td> <td data-bbox="832 883 1069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96명 </td> <td data-bbox="1069 883 1302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유형별 장기입원자 목표관리인원 기준 내 </td> </tr> <tr> <td data-bbox="780 1024 832 1165">유의 사항</td> <td colspan="2" data-bbox="832 1024 1302 1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공유 행복e음 시스템 상 관외 개입 의료급여관리사 명으로 시·도와 시·군·구 관리 대상자 구분 필요 </td> </tr> </tbody> </table>	구분	시·도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시·군·구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에서 도로 관리 의뢰한 경우 (도내 시·군청과 의료기관 소재 시·군청 간 편도 거리 50km를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수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의 관외 전담 의료급여관리사 * 미채용 지역 : 기존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9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유형별 장기입원자 목표관리인원 기준 내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공유 행복e음 시스템 상 관외 개입 의료급여관리사 명으로 시·도와 시·군·구 관리 대상자 구분 필요 	
구분	시·도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시·군·구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에서 도로 관리 의뢰한 경우 (도내 시·군청과 의료기관 소재 시·군청 간 편도 거리 50km를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수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의 관외 전담 의료급여관리사 * 미채용 지역 : 기존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9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유형별 장기입원자 목표관리인원 기준 내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공유 행복e음 시스템 상 관외 개입 의료급여관리사 명으로 시·도와 시·군·구 관리 대상자 구분 필요 																
141	<p>제4장 집중관리군 사례관리</p> <p>I. 개요</p> <p>1.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병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 또는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로서 단기간의 관리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 관찰 및 개입으로 대상자 변화를 지지·지원하는 종합적 사례관리 활동 	<p>제4장 집중관리군 사례관리</p> <p>I. 개요</p> <p>1.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병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 또는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로서 단기간의 관리로는 <u>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아</u>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141	<p>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p> <p>※ 행복e음 시스템 상 종결 예정일자는 12월 20일로 자동 설정되며, 12월 1~20일 사이에만 자체평가서의 일반종결로 공단 전송 가능</p>	<p>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p> <p>※ 행복e음 시스템 상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1분기 <u>이내에</u> 등록, 종결 예정일자는 12월 20일로 자동 설정되며, 12월 1~ 20일 사이에만 자체평가서의 일반종결로 공단 전송 가능</p>															

쪽수	2019년	2020년														
155	제5장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3. 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 정보 제공	제5장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3. 내용 ● <u>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13]작성 <신설></u> ● <삭제>														
156	5. 연계대상 ●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각 사업별 관리기준 등을 확인한 후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만65세 이상 독거 노인 중 복지서비스 또는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연계 제외대상 :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5. 연계대상 ●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여 <u>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u> 에 대해 각 사업별 관리기준 등을 확인한 후 연계 · <u>통합사례관리사업</u> ※ <u>명확하지 않은 것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으로 연계</u>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u>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u>														
157	6. 연계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사업」 - (대상자 연계) · 양식 : 연계 대상자 명단 및 기초조사서 사본 (연계일 : 년 월 일)	6. 연계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사업」 - (대상자 연계) · <u>서식 : 자원연계 의뢰서 <명단 삭제></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0080; color: white;">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0%;">성별</th> <th style="width: 10%;">나이</th> <th style="width: 10%;">주소</th> <th style="width: 10%;">전화번호</th> <th style="width: 10%;">질병분류 (필요한 서비스)</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질병분류 (필요한 서비스)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질병분류 (필요한 서비스)	비고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 「 <u>통합사례관리사업</u> 」 및 「 <u>드림스타트</u> 」 - (<u>대상자 연계</u>) · <u>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등록 대상자에 한함</u> - (<u>의뢰 접수</u>)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신규대조표

쪽수	2019년	2020년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에서 의뢰된 대상자 조회 및 접수상태 설정
160	7. 의뢰받은 경우	7. 의뢰받은 경우 <신설> ※ 예시) 질병 대비 의료쇼핑, 부적정 의료기관 선택, 약물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 숙식목적 또는 가족이 동반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 적정 입원자
170	[서식2](장기)입원자 기초조사서 5. 지지체계 구축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수 1. 매우많음(10개 이상) 2. 많음(6~9개) 3. 보통(3~5개) 4. 적음(1~2개) 5. 없음	(장기)입원자 기초조사서 5. 지지체계 구축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집수리서비스<신설> - <u>자원연계정도</u> <u>현재 대상자에게 필요로 되는 자원에 비해 연계된 자원의 충족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u> 1. 매우 부족 2. 약간 부족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서식12]자원연계 의뢰서	첨부내용 <삭제>
		[서식13]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추가>
부록	2.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안내	<삭제>

제 1 편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1. 법적근거	3
2. 정의	3
3. 목적	3
4. 필요성	3

01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1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3 목적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4 필요성

-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
 - 다빈도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밀착상담 및 관리
 -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지원
- 수급권자·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제2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1. 수행체계	7
2. 의료급여관리사	8
3. 예산	13

1 수행체계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방향 기획 및 사업운영 총괄
- 의료급여사례관리 정책 수립
- 의료급여사례관리 예산 지원 및 기금 관리

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관련 각종 계획 수립 및 집행상황 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실태조사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모형개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사업평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운영세칙상 「지원단」 역할 및 기능
- 기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도 의료급여 담당부서

- 시·도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의료급여기금 예산 확보, 관리 및 운용, 결산 보고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도 점검

라.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 시·군·구 자체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보장기관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발취 및 의료이용 현황 제공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DB 구축
 - 의료급여 진료내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례관리 관련 명단 발취 및 의료이용 현황 제공

2 의료급여관리사

가. 역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2)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 3) 의사의 진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 4)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 5)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인력 배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1명. 다만, 관할 시·군·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2.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명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 1개 ~ 15개 시·군·구청 이하 : 1명
- 16개 ~ 31개 시·군·구청 이하 : 2명
- 관외 입원자 관리 전담인력 : 시·도당 1~2명 추가 배치
※ 단, 기존인력으로 관외입원자 관리가 가능한 경우 기존인력 활용 가능

나) 인원 : 17개 시·도청 31명(세종특별자치시 포함)

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 수급권자 3,000명 이하 : 1명
- 수급권자 3,000명 초과 ~ 6,000명 이하 : 2명
- 수급권자 6,000명 초과 ~ 9,000명 이하 : 3명
- 수급권자 9,000명 초과 ~ 12,000명 이하 : 4명
- 수급권자 12,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 : 5명
- 수급권자 15,000명 초과 ~ 18,000명 이하 : 6명
- 수급권자 18,000명 초과 ~ 21,000명 이하 : 7명
- 수급권자 21,000명 초과 : 8명

※ 2019년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

나) 인원 : 228개 자치구 시·군·구청 605명(제주시·서귀포시 포함)

- ※ 의료급여관리사의 퇴직,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군·구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
-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의료급여관리사의 채용기준 및 보수체계를 준용(단,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 임기제공무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채용가능 여부는 '의료급여관리사 예산 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초의료보장과-4458, 2018.5.31.) 공문 참고

다. 업무권한

- 전자결재 ID 부여 : 공문 발송 등 업무수행 체계의 효율성 확보
-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ID 부여
- 공공기관용 외부 메일 계정 부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ID 부여
- DW(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이용 ID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이용 권한 공유
 - 의료급여기관 현황조회, 보장기관 신고센터 등 이용을 위한 보장기관별 ID 공유
- 의료급여관리사 신분증 발급
 - 방문상담,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 채용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있는 자임을 표시
 - ※ 공무원증에 준하는 신분증을 발급

■ 신분증 : 예시 ■

- 전 면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p>사진 (반명함판)</p></div>
<p>홍길동</p>
<p>○○시</p>

- 후 면 -

소속	○○시
직위/직급	의료급여관리사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2000.00.00
	○○시장(직인)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행된 것임	
	☎ 031-123-1234

라. 업무내용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시·도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수행 지원
- 시·군·구 사례관리사업 현장점검 실시 및 평가
- 시·군·구 사례관리 실적관리·모니터링 및 보고
- 의료급여관리사 수퍼비전 제공 및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 장기입원 사례관리 수행 및 지원 :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관외입원자 관리, 심사연계 중재 등
- 시·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
- 사례관리 간담회, 사례검토회의 등 개최
- 사례관리사업 홍보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시·군·구와 업무 협력

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시·군·구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 신규수급권자,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조건부 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 상해요인조사, 중복청구 업무 등
- 실적보고 및 자체평가 실시
- 사례검토회의, 유관부서와 연계회의 등 개최
- 시·군·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
- 사례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

※ 의료급여 자격관리, 처분사전통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관련 업무는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마. 직무교육(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 제5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경력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이론 및 실무교육
※ 자살예방 교과목 필수

2)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 대상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경력 1년 미만인 자로, 신규 직무교육 미 이수자)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이론 및 현장실무(단, 현장실무교육은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주관)

3) 시·도 주관 교육

- 대상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관련 교육, 현장실무교육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4) 사이버 교육

-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교육내용 : 의료급여사업안내

바.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

- 보장기관 : 매년 초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안전사고 대비 의료급여관리사 상해보험 가입 포함 안전대책 수립, 안전교육 실시 (현장 대처요령 및 감염병 예방 등)
 -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 방문 시 반드시 사전 내부보고 및 2인 1조(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 등) 방문 추진(협조)

3 예산

- 인건비 : 월보수액,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 및 퇴직금 등 법정 부담금 지급
 - ※ 출장여비는 의료급여기금 행정경비 항목에서 지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1. 지역유형	17
2. 사례관리 대상	17
3. 사례관리 관리인원	18
4. 사례관리 수행횟수	19
5. 사례회의	19

03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1 지역유형

- 지역 및 수급권자 특성을 분석하여 아래 지역유형 중에서 선정

구분	내용
입원 고위험지역	상대적으로 입원 의료이용이 높고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
혼합지역	외래 의료이용과 입원 의료이용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외래 고위험지역	외래 의료이용이 높고 입원 의료이용이 낮은 지역

2 사례관리 대상

가. 신규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재 취득자

나. 고위험군

- 질병 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확인되는 대상자

다. 장기입원

- 장기입원자(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자), 부 적정 입원자(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 숙식 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등), 해당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라. 집중관리군

- 단기간의 사례관리 수행보다는 연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 중 상위 30% 이내인 자 우선 관리

3 사례관리 관리인원

- 선정된 지역유형에 따른 연간 사례관리 목표 대상자 수 설정

▮ 연간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

지역 구분	(A) 장기입원자	(B) 고위험군	(C)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	총계
입원고위험	30~40명	50~65명	5~10명	전수관리(200명)	300명
혼합	15~25명	65~80명	5~10명	전수관리(200명)	300명
외래고위험	5~15명	75~90명	5~10명	전수관리(200명)	300명

※ (A)+(B)+(C) = 총합 100명 관리

※ 신규 수급권자 200명 이하 지자체의 경우 해당 인원만 관리

- 월별·분기별 사례관리 대상군에 따른 사례관리 목표 대상자 수 설정

▮ 월별·분기별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

(단위 : 월, 명)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기입원자	0~3	0~3	1~4	0~3	0~3	1~4	0~3	1~3	1~4	1~4	0~3	0~3	5~40
고위험군	2~7	3~7	3~8	5~8	5~8	5~8	5~8	5~7	5~8	4~7	4~7	4~7	50~90
집중관리군	1~3	2~3	2~4	연중 관리(12월 중 일괄종결)									5~10
소계	8	9	11	8	8	9	8	8	9	8	7	7	100
계	28			25			25			22			
신규 수급권자 (전체)	매월 선정된 전체 대상자 관리												200
총계	300명												

※ 상기 인원은 종결기준이며, 지역유형 및 연간 목표관리 인원 수를 고려하여 분기별·월별·주별 사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등록·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 포함)

※ 단, 집중관리군은 등록일자 기준

4 사례관리 수행횟수

- 대상자별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에 의거 연간 업무량 설정

▮ 대상자별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분 류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방문	전화	서신	집합교육
장기입원자	6개월	2회 이상	6회 이상	수시	-
고위험군	3개월	2회 이상	4회 이상		
집중관리군	연중 관리 (12월 종결)	고위험군 수행서비스 기준 이상			
신규 수급권자 (전체)	1개월	1회*	필요시 전화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 사례관리 대상자인 신규 수급자의 5%(예시 : 연간 신규 수급자가 200명인 경우 10명 방문)

5 사례회의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욕구 또는 문제를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의료급여 관련 부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논의
 - 대상자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보장기관 내 각 단위사업 업무 담당자와 사례 검토회의 개최
 - ※ 통합사례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자활, 드림스타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제4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제1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23
제2장	고위험군 사례관리	47
제3장	장기입원 사례관리	85
제4장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139
제5장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153

제 1 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I. 개요	25
II.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실제	27

I 개요

1 정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로서 1개월 이내인 자 또는 재 취득자 관리

2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해 예방적 측면의 건강관리 지원

3 관리대상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연간 200명 미만인 지역에 한해서는 해당 인원만 관리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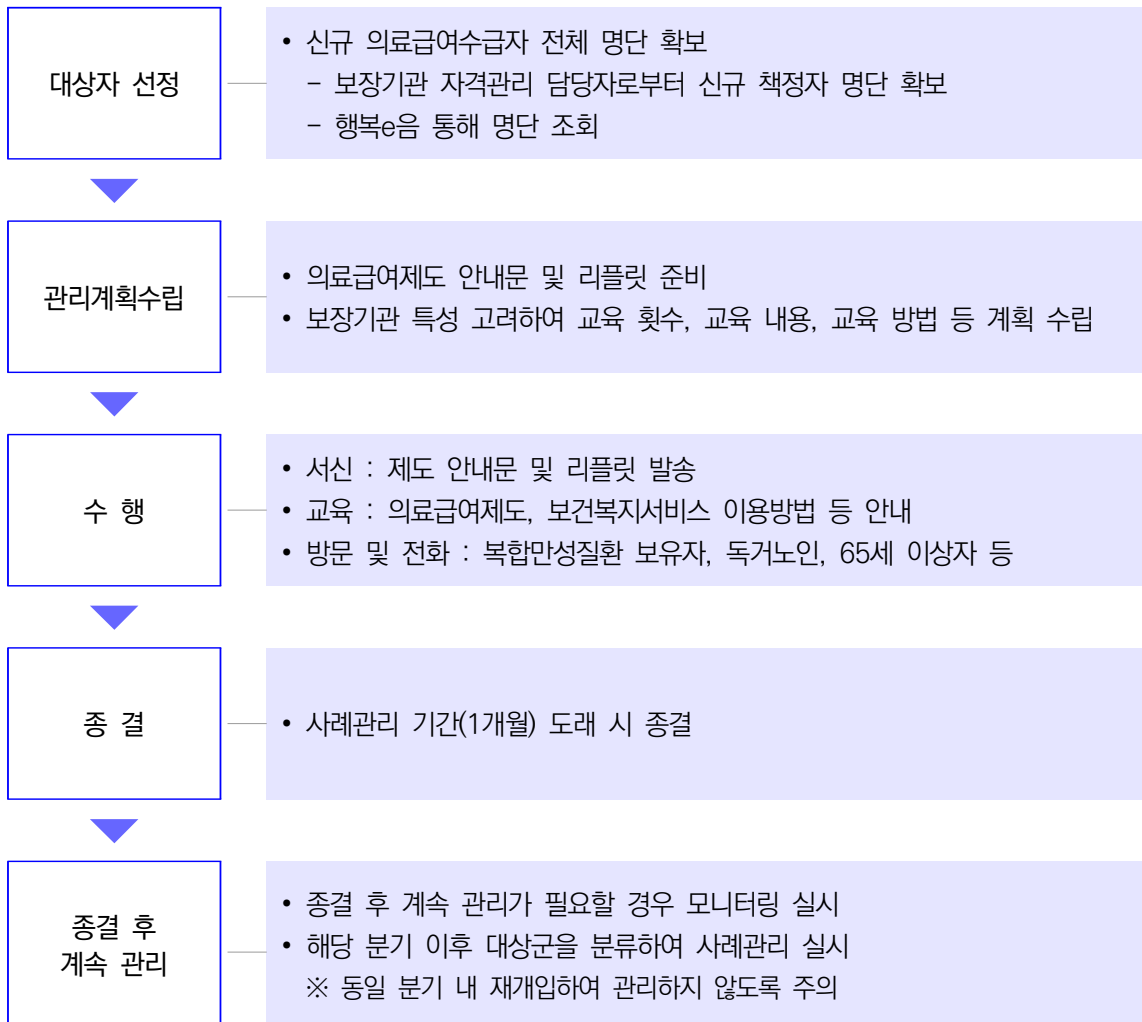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서신	집합교육	방문	전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개월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필요시

* 사례관리 대상자인 신규 수급자의 5%(예시 : 연간 신규 수급자가 200명인 경우 10명 방문)

※ 교육 : 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하되, 개최 시 '교육'용어 사용(명시)을 지양할 것
 예) 의료급여 바로알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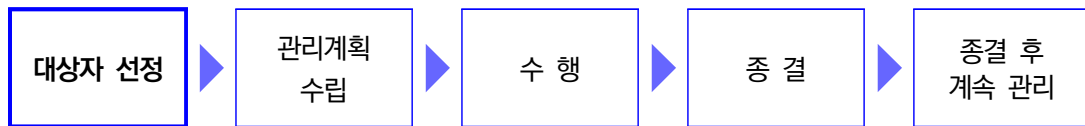
대 상	교육 횟수	교육 방법	내 용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반기별 1회 이상	※ 아래 교육 방법 중 선택 • 집합교육/동별 순회 교육 • 소그룹교육 • 개별교육(1:1 방문교육)	• 의료급여제도 • 자가 건강관리(건강검진·암검진 안내 및 독려) •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5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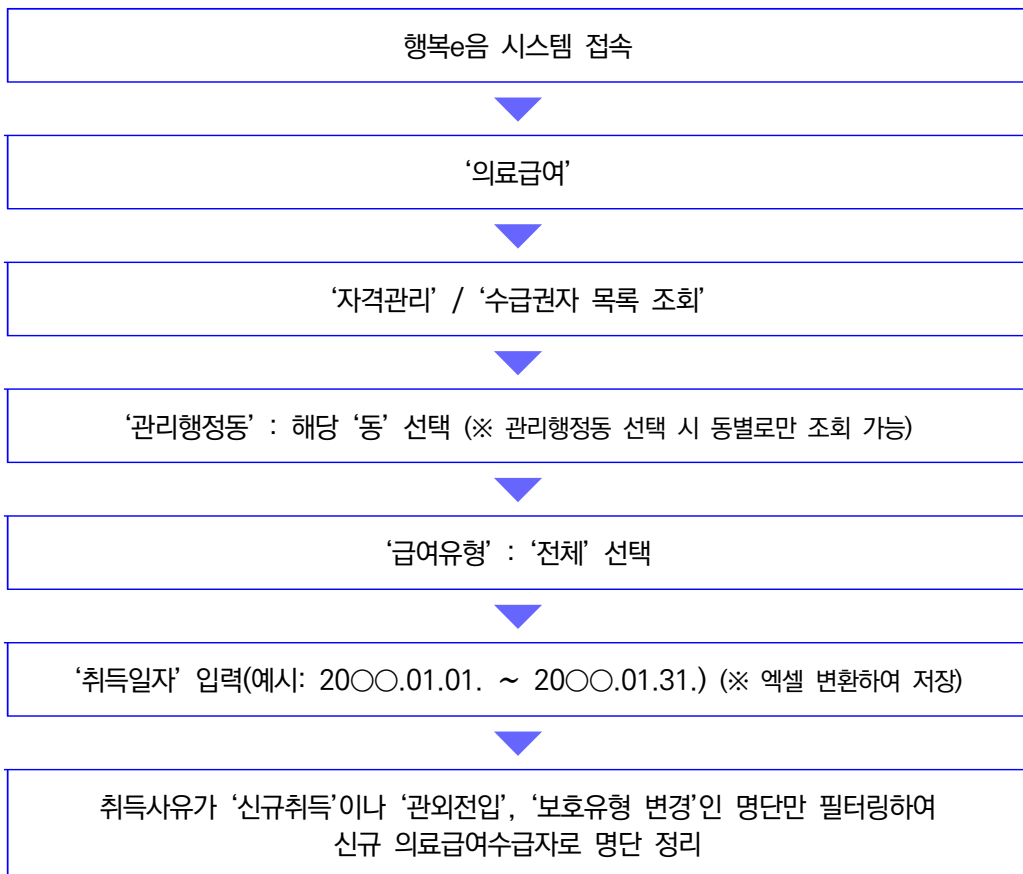


II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 1) 보장기관 자격관리 담당자로부터 월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확보
- 2)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명단 조회



※ 월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를 관리 목표로 하되,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연간 200명 미만으로 관리인원이 부족할 경우 관외전입 및 보호유형 변경까지 포함하여 관리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목록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자격관리 > 수급권자 목록 조회 > 관리 행정동 및 취득일자 입력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가. 서신

-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 리플릿 등 발송
 -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됨 안내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제도적 차이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시·군·구청명, 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등

❖ 예시 :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 발송 공문

○○시·군·구

수신자 김◇◇ 외 ○○명
(경유)

제 목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 발송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나. □□□과-○○(20○○.○.○.)“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실시 계획”

2. 위와 관련, 20○○년 ○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을 송부하오니 의료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2. 의료급여 이용 안내문 1부
 3.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별첨). 끝.

시·군·구청장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 결재 시 수신자를 ‘별첨 안내’로 명시하여, 비공개 문서로 발송
- ※ 내부결재 득한 후 서신 발송

❖ 예시 : 의료급여 이용 안내문

의료급여 이용 안내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비교

구 분	의료급여(1, 2종)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재원조달	조세(국고+지방비)	보험료(일부 국고)
급여절차	3단계 (의원 → 병원 → 3차 의료기관) ※ 상위 의료기관 진료 시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첨부	2단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자격증명	의료급여증, 신분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 등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처방조제	CT, MRI	보건기관
외래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500원	특수장비 총액의 5%	없음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500원	2,000원			
입원		없음					

□ 2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처방조제	CT, MRI	보건기관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				
외래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1,500원	급여비용 총액의 15%	급여비용 총액의 15%	500원	특수장비 총액의 15%	없음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입원		급여비용 총액의 10%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의료급여일수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입니다.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금으로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로, 상한일수 초과 시 초과일수 해당 비용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적용됩니다.

▣ 질환별 상한일수 ▣

질환 구분	상한일수
등록 중증 및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등록 중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전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조건부 연장승인 : 등록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또는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2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정한 병·의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병원 외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의료이용** 해야 하며, 의뢰서 없이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증 타인 대여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00.0.0.

시·군·구청장

담당자 : ◇◇◇과 ○○○(☎ 123-4567)

❖ 리플릿 활용 :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또는 자체제작 자료

Ⅰ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방법 Ⅰ



나. 교육

1) 교육 대상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

2) 교육 방법 : 아래의 교육방법 중 보장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실시

구분	세부 내용
집합교육 (권역별 또는 동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횟수) 반기별 1회 이상 •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제도 - 만성질환 관리, 약물 복용, 생활습관 관리 등 건강관리방법 - 보건복지서비스 이용방법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지원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릿, 자체 자료 등 활용 • (타 부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 만성질환 조기 발견,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 치매 증상관리 및 예방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희망복지지원단 : 복지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서 연계 시 협조문서 발송 전 사전 협의 ※ 의료급여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집합교육 장소에서 개별상담은 지양하며, 필요 시 추후 별도 면담 시행
소그룹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횟수) 분기별 또는 수시 • (교육 내용) 집합교육 참조하여 소그룹 특성에 맞게 제공 • (교육 방법) 대상자 거주지 등 고려하여 2인 이상 대상으로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면적이 넓거나 농어촌 지역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실시
개별교육 (1:1 대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횟수) 월별 또는 수시 • (교육 내용) 집합교육 참조하여 의료급여수급자 개별특성에 맞게 제공 • (교육 방법) 방문 또는 내소를 통한 1:1 교육 제공

※ 교육은 교육방법 구분 없이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등 반드시 내부결재 득할 것

※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 별도 안내

Ⅱ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관련근거 및 지원내용 Ⅱ

- 의료급여법 제1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일반건강검진 :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 각 1회
- 영유아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실시
- 암 조기검진 : 위암 40세 이상,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 50세 이상,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폐암 만 54~74세 이상 고위험군

❖ 집합교육 시 준비사항

구분	세부 내용
교육 대상자 명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을 통해 동별·권역별로 월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정리 ※ 교육 당일 출석부로 활용 가능
교육 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 주민센터 시설 담당자와 교육 일정 등 협의(동별 순회교육 시) 교육 장소 예약 설비 예약 : 노트북, 빔 프로젝트, 스크린, 마이크 등 ※ 필요시 공문 발송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 리플릿, PPT 등 자료 활용 보장기관 자체 교육자료 준비
교육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관리사 및 외부자원 활용 예시) 약물 오남용 교육 시 보건소 협조 요청
교육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기관 여건 등 고려하여 계획수립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자료, 지역신문 등 활용 예산 확인 후 배너 및 현수막 제작
교육 당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표지판 부착 전산 및 설비 작동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 확인 출석부, 볼펜, 음료, 홍보물 등 준비
교육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성취도, 만족도 등 설문 조사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행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계획 수립 공문

○○시·군·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과-○○(20○○.○.○.)
2.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와 적정 의료이용 안내를 통해 잠재적 과다 의료이용을 예방 관리하고자 『2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계획서 1부
2. 약물교육자료 1부. 끝.

시·군·구청장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권역별)집합교육 계획(안)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위한 집합교육 추진 계획(안)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내용과 적정 의료급여 이용방법 안내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재정안정 도모하기 위함.

I. 개 요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사례관리」
-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 『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대 상 : 20○○년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기 간 : 20○○.○.○.(화) ~ 20○○.○.○.(수)

○ 장 소 : ◇◇동 주민센터

○ 내 용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제도
-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관리, 약물복용법 등 건강관리 방법
- 혈압, 혈당, 치매조기검진 등 기초건강조사
- 질의응답 등

○ 방 법

- ○개동을 ○권역으로 묶어 집합교육 실시
- 리플릿, PPT, 동영상 자료 등 활용

II. 세부 추진계획

○ 권역별 교육일정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동 별	003,8동	004,7동	005,6동	001,2동
날 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계획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0:00~10:10	추진배경 및 취지 설명	의료급여 담당자
10:10~10:20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이용 방법	의료급여관리사
10:20~10:30	만성질환 관리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	업무 담당자
10:30~10:50	기초건강조사(혈압·혈당, 치매조기검진 등)	
10:50~11:00	총 평	의료급여 담당자

III. 소요예산

- 예상 소요예산 : 000,000원
 - 산출내역 : 현수막 000,000원 + 음료 00,000원
 - 예산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 ◇◇◇비

IV. 행정사항

- 관련부서 교육지원 협조 요청
- 지역 특성상 차량 필요시 차량지원 협조 요청(해당 과)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강좌 참석 안내 공문(수신자 : 의료급여수급자)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참석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20○○년 ○월 ~ ○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년 ○월 ~ ○월까지 선정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시 : 20○○.○.○.(목) 오전 10시

다. 장소 : □□□대회의실

라. 내용 : 의료급여제도, 건강관리 방법 등. 끝.

시·군·구청장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약물교육 의뢰 공문(수신자 : 보건소)

○○시·군·구

수신자 □□□과장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약물교육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귀 부서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일정표 1부. 끝.

시·군·구청장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협조 요청 공문(수신자 : 각 주민센터)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2. 교육 시 필요한 기기(스크린, 빔 프로젝트 등) 비치 여부를 20○○.○.○. (목)까지 불임 양식에 의거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계획서 1부
2. 동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1부
3. 교육 일정 및 기기 확인 서식 1부. 끝.

시·군·구청장

❖ 불임자료 예시 : 교육 일정 및 기기 확인 서식

구 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비 고
동 별	□□ 3,8동	□□ 4,7동	□□ 5,6동	□□ 1,2동	
장 소	□□ 3동	□□ 4동	□□ 5동	□□ 2동	
날 짜	20○○.○.○.	20○○.○.○.	20○○.○.○.	20○○.○.○.	
시 간	15시	15시	15시	14시	

장 소	빔 프로젝트	노트북	스크린	손 세정제
□□ 3동	O	O	O	O
□□ 4동	X	O	X	O
□□ 5동	O	X	O	O
□□ 2동	O	X	X	O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행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전 보도자료 게재 협조 공문

○○시·군·구

수신자 홍보 담당부서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계획 보도자료 제출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보도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언론매체(주요일간지, 지역신문 등) 및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계획서 1부. 끝.

시·군·구청장

❖ 붙임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전 보도자료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계획

□□시·군·구(시·군·구청장: ○○○)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20○○년 ○월 ○일(목) ◇◇◇대회의실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및 이용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내용과 자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보건소 △△△과와 연계하여 올바른 약물 복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구는 이번 강좌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 정』

- ◆ 대상 : 20○○년 ○월 ~ 20○○년 ○월까지 선정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 일시 : 20○○.○.○. (목) 오전 10시
- ◆ 장소 : ◇◇◇대회의실
- ◆ 문의 : □□시·군·청 △△△과 (☎ 123-4567)

『의료급여제도 안내』 집합교육 실시 결과보고

- 200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

I. 개요

- 참석자 : 2000년 0월 이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00명
- 추진일정

회차	일시	동별	장소
1	0월 0일(화)	00동	□□시·군·구청 대회의실
2	0월 0일(수)	□□동	□□동 주민센터

II.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교육 강사
-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차이 - 의료급여제도 안내(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급여관리사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방법 - 혈압·혈당 체크 등 개인 기초건강 조사 및 건강 상담	보건소 담당자

III.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000,000원
 - 산출내역 : 현수막 000,000원 + 음료 00,000원
 - 예산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 ◇◇◇비

IV. 향후계획

- 필요시 가정 방문·전화 상담 등 개인별 맞춤교육 실시

※ 교육 사진

□□회의실(2000.0.0.(화) 14:00~)



❖ 예시 : 교육 평가 설문지

연번	주요 항목	세부 문항	평가		
			만족	보통	미흡
1	교육 주제의 적절성	교육 주제는 적절하였는가?			
2	교육 시간의 적절성	교육 시간은 적절하였는가?			
3	교육 장소의 적절성	교육 장소는 적절하였는가?			
4	교육 내용의 유익성	교육 내용은 유익하였는가?			
5	교육 내용의 이해도	교육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는가?			
6	교육 만족도	교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7	교육 요구도	앞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인가?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후 보도자료 게재 협조 공문

○○시·군·구

수신자 홍보 담당부서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결과 보도자료 제출

1.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관리 방법 안내를 위한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에 강좌 결과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시·군·구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후 보도자료 1부
2.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동별 교육 사진(JPG 파일) 3부. 끝.

시·군·구청장

❖ 붙임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후 보도자료

□□시·군·구	제공일자	20○○년 ○월 ○일	
	담당부서	◇◇◇◇과(☎ 000-0000)	
	과장		
	계장		
	의료급여관리사		
보도자료	□ 사진 첨부 ■ 총 1쪽		

□□시·군·구,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시·군·구는 지난달 ○일 □□시·군·구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동영상 시청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방법,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적인 내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명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이용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구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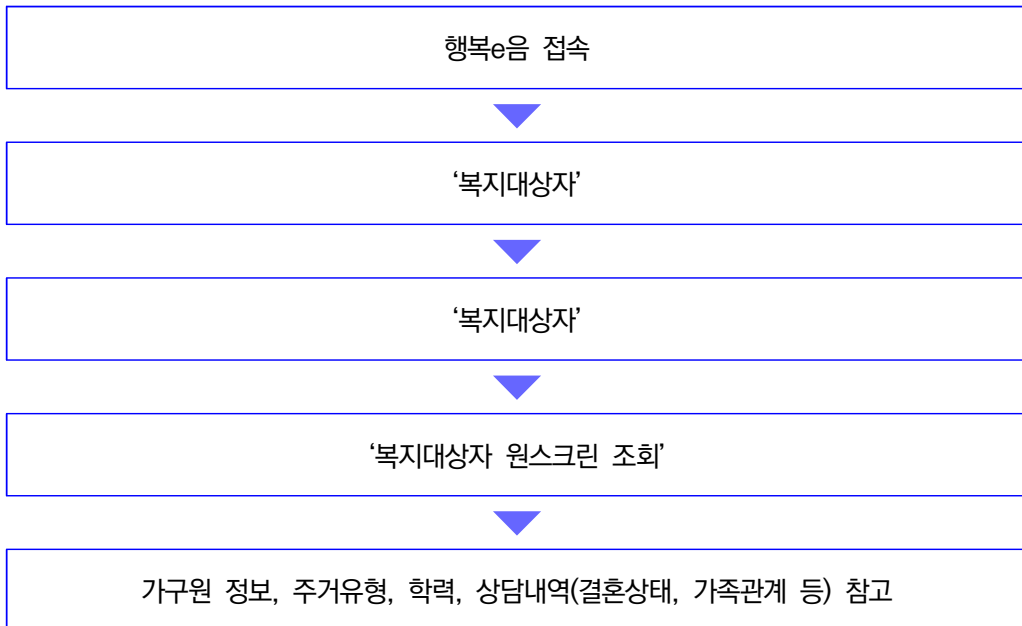
다. 방문 및 전화

1) 대상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자,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자, 독거노인, 65세 이상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로 과소 또는 과다 의료이용이 의심되는 자

2) 대상자 선정

가) 행복e음 활용



※ 업무 특성 상 시·도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원스크린 조회 가능 범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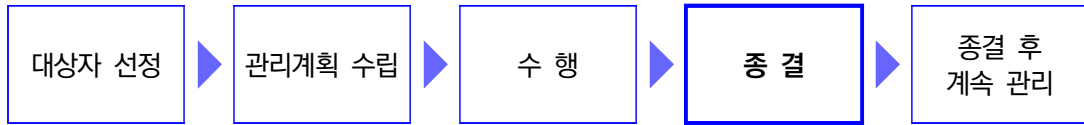
❖ 시·도용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 시·군·구용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 소득재산 상세, 공제부채, 구비서류 반영, 신청조회, 조사결정 조회 권한은 없음.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행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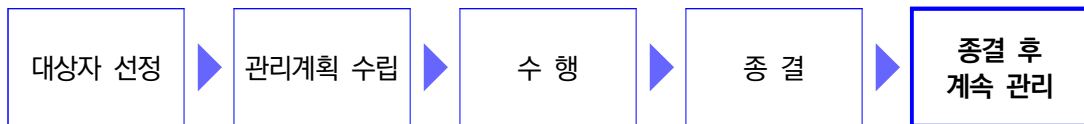
3 종결



가. 서비스 수행 후 관리기간(1개월) 도래 시 종결

나. 행복e음 시스템 종결 처리

4 종결 후 계속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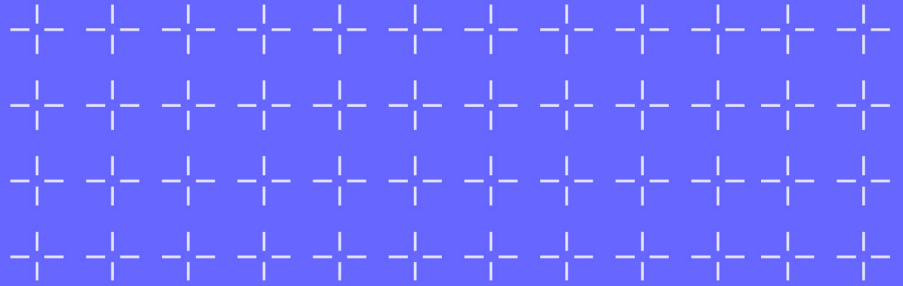


가. 종결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실시

나. 해당 분기 이후 대상군 분류하여 사례관리 실시

※ 동일 분기 내 재개입하여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

제 2 장



고위험군 사례관리

I. 개요	49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51

I 개요

1 정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2 목적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 기여

3 관리대상

- 질병대비 과다 이용자로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에서 급여일수, 총 진료비, 이용 의료기관 수, 입내원일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초과일수 등 자료 활용
 - ※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등 과다처방·진료가 우려되는 의약품·행위(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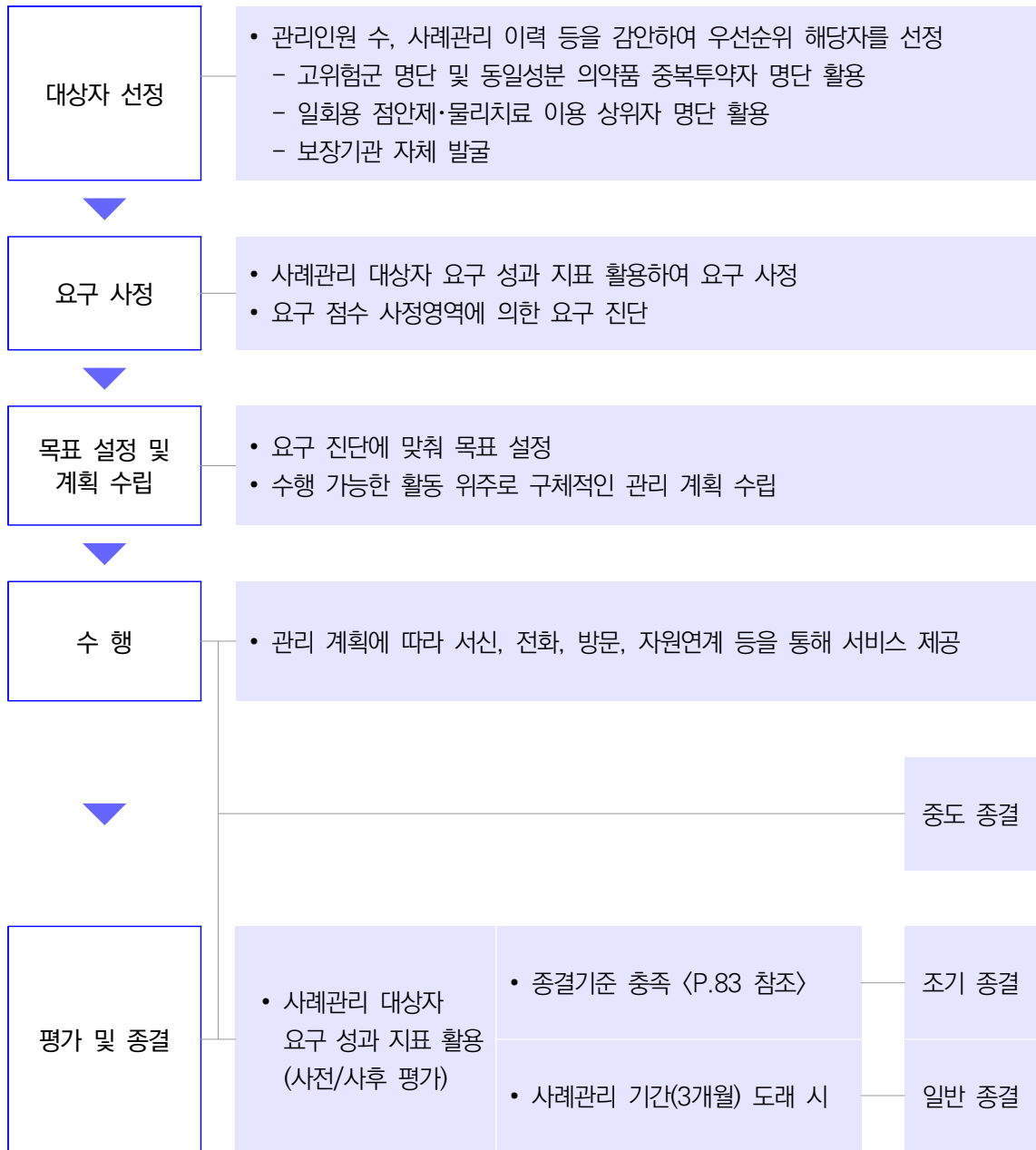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고위험군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방문	전화	서신
고위험군	3개월	2회 이상	4회 이상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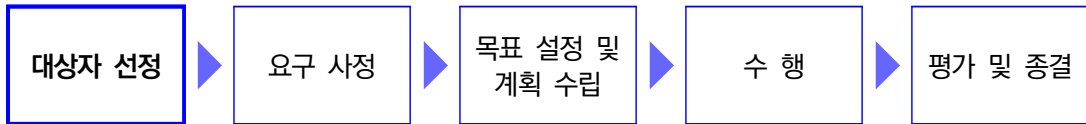
※ 신변에 위험이 예측되는 대상자를 가정방문 상담할 경우 개인의 신변보호에 각별히 유념 (사회복무요원 등 2인 이상 방문)

5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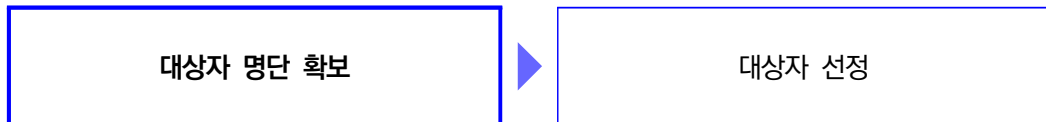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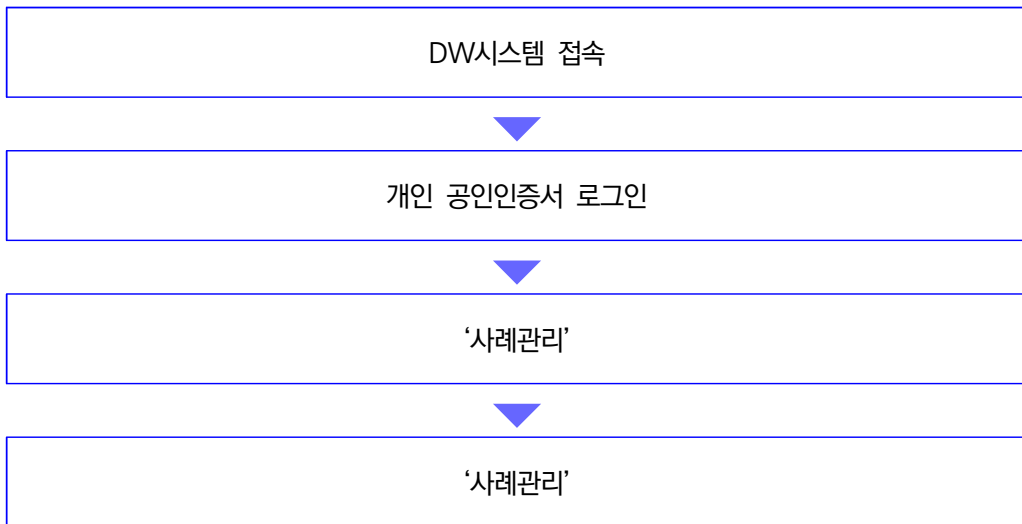
1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명단 확보



1) DW시스템을 통한 고위험군 명단 확보



※ 우선순위 자동 선정되어 게시

❖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조회 : DW시스템 > 사례관리 > 사례관리 > 고위험군 사례 관리 대상자 명단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회원설명서 HOME > 사례관리 > 사례관리

* 해당/보장기관 전체 전체 * 발령년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연번	보장기관 기호	장애통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일수		급여일수		이유 기초수	총지출액	우선순위	정신질환 일련일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초과일수	신약특례		사례관리 해당국		우편번호	주소	
					연월	일	연월	일						연월	일	연월	일			연월

❖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중복투약일수 조회 : DW시스템 > 사례관리 > 사례관리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초과일수'클릭 > 중복투약일수 상세내역

중복투약일수 상세내역

출력일
페이지

수진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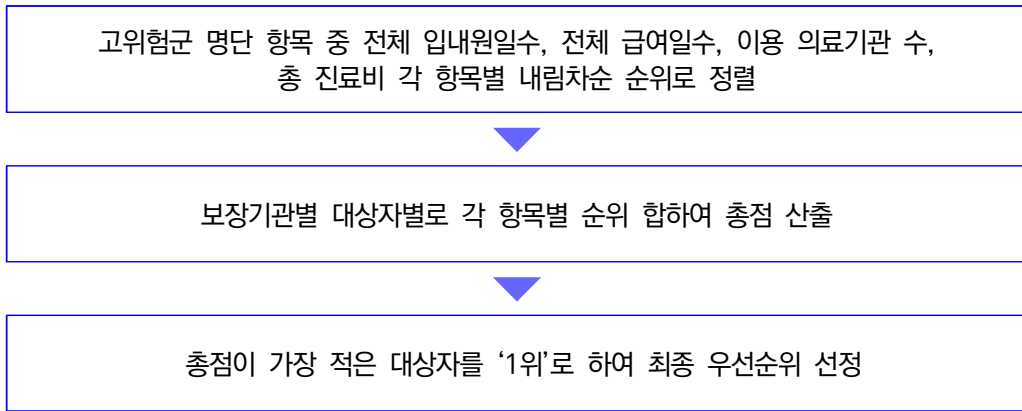
* 당월일수(반영일수): 발령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이월일수: 발령기간 이후 초과 처방일수

상병	의료급여기관	진료개시일	기관부담금	종별	유형	지급년월	지급처수	무음번호	접수번호	주상병	처방전발행	성분코드	총투여	반영	이월	단가	금액
성분	의료급여기관명	본인부담금	보장기관	지급일련	입내원/투약	상세	접수년월	부상병	약제코드	약제명							
				이월 반영일수	일					총 초과일수	일						

• 고위험군 명단 통보 기준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통보시기	3월	9월
진료연월(진료기간)	전년도 1~12월(12개월)	당해연도 1~6월(6개월)
총 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350일 이상자
통보인원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 전체	
통보방법	DW시스템 > 사례관리 > 사례관리	

❖ 우선순위 선정방법(※ 대상자 명단 통보 시 우선순위 자동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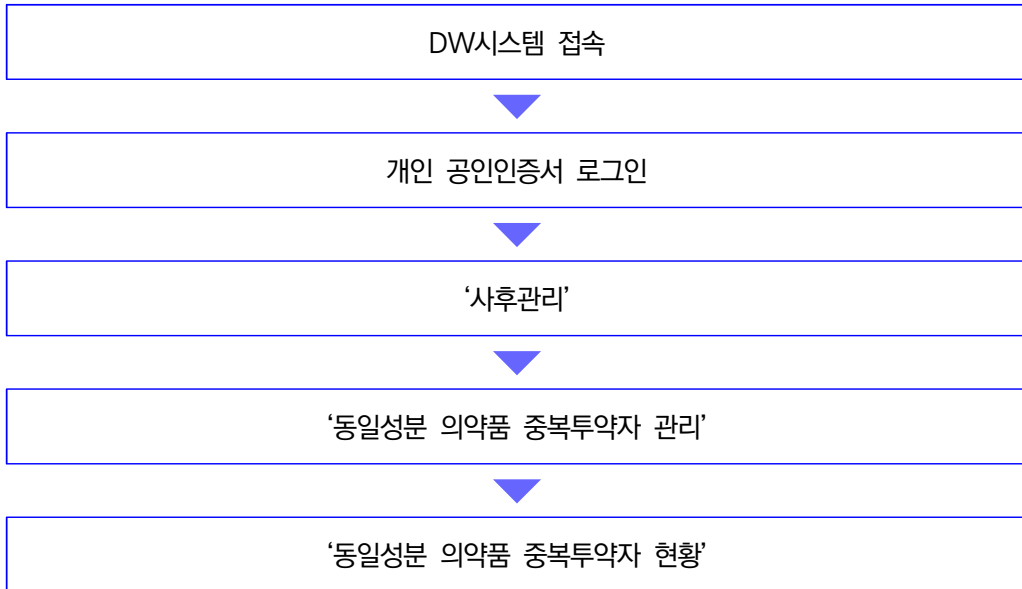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근원보고)

2)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통보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통보시기	4월	10월
진료연월	전년도 7~12월	당해 연도 1~6월
통보기준	일회용 점안제 : 6개월 누적 1,800관(조제사용량) 이상 처방받는 대상자	
	물리치료 : 6개월 누적 150건(명세건수) 이상 물리치료 받는 대상자	
통보방법	심사평가원 → 복지부 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시·도 → 시·군·구	
실적보고	6월	12월

3) DW시스템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명단 확보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개인별 현황 : DW시스템 > 사후관리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현황 > 발체년월 입력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개인별 현황

출력일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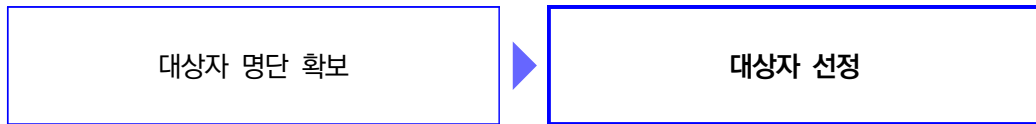
발체년월 :

발체년월	수진자주민번호	수진자명	구분	본인부담 기간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4) 보장기관 자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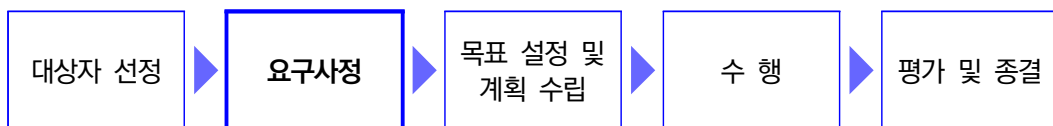
- 고위험군 통보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자,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전입 대상자 등 중에서 질환, 약국일수, 입·내원일수, 진료비, 중복투약일수 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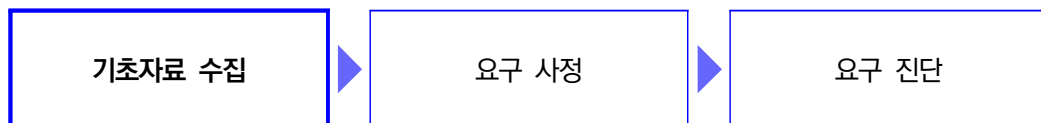


- 선정 기준
 -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통보 명단을 활용하여 질병대비 의료쇼핑, 부 적정 의료급여 기관 선택, 약물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선정
 - 1차 스크린 한 대상자별로 DW시스템 진료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사례관리 할 대상자를 최종 선정

2 요구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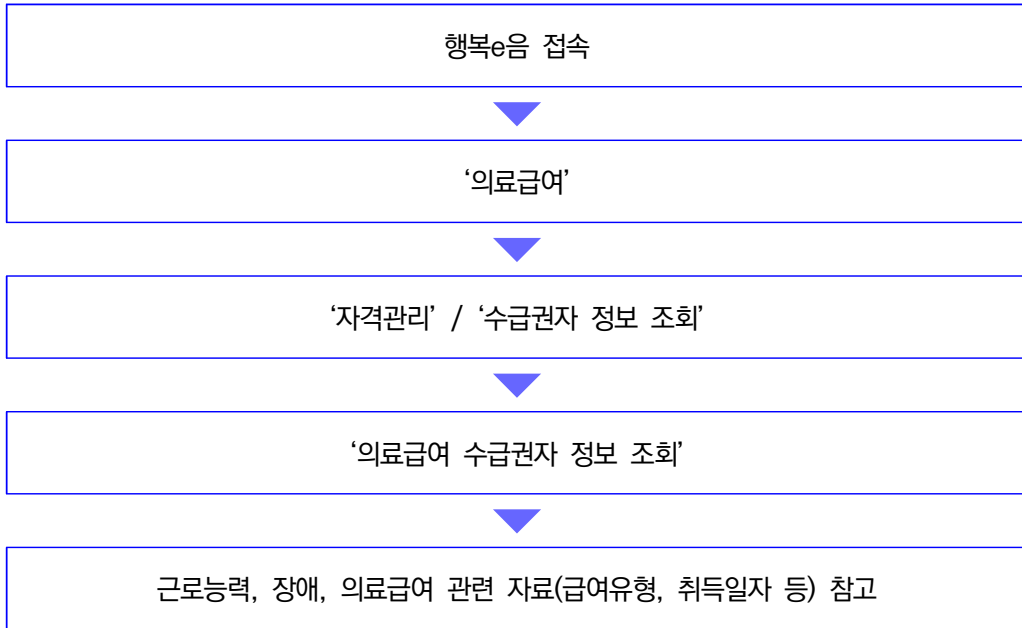


가. 기초자료 수집



1) 행복e음 활용

① 기초정보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정보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자격관리 > 수급권자 정보 조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정보 조회

행복e음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로그아웃

변동처리현황(2436)

복지일장 · My메뉴 · 새창 · 운영관리

홈 > 상담 신청 > 변동 사후 > 자료정비 > 의료급여 > 장애인복지(구)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보 조회

도움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급자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나이)	소재행정동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상태	직장명	직장전화	최종학력
근로능력	건강상태	질병종류	종합장애등급
장애등록일자	장애종지일자	주장애유형	부장애유형

● 의료급여 취득 정보

가구주성명	가구주주민번호	가구주취득일자	가구주와의관계
대상자구분	급여유형	종별	전산관리번호
취득일자	취득사유	상실일자	상실사유
입대일자	제대일자	시설명	
양부모성명	양부모주민번호	지원방식	자격상태

● 본인부담구분 & 선택병의원 정보

본인부담구분	신청일자	작업구분	시작일자	종료(예정)일자	선택기준년도	질환구분	질병명	복합질환여부	출상(예정)일자	재학증명여부
1.선택의료급여기관						2.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				
3.선택한의원						4.선택치과의원				

② 원스크린 조회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조회

도움말 | 관련업무조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초기화 | 업무진행단계 | 신청 | 조사 | 결정 | 사후

가구 | 개인 | 주민등록정보 | 관련업무바로가기

①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② 특례/주거 정보

특례주거: 가구특례유형, 특례일자, 년방종류

연락처: 주거유형

주소정보: 주거기타내용

한력정보: 주거위치내용

계좌정보:

비고사항:

수정

보장 | 급여·서비스 | 소득재산 | 공제부채 | 상담내역 | 부양의무자 | 중점관리 | 구비서류

* 보장 혹은 서비스 클릭시에는 해당 가구원들, 가구원을 클릭시 클릭한 가구원의 보장과 서비스가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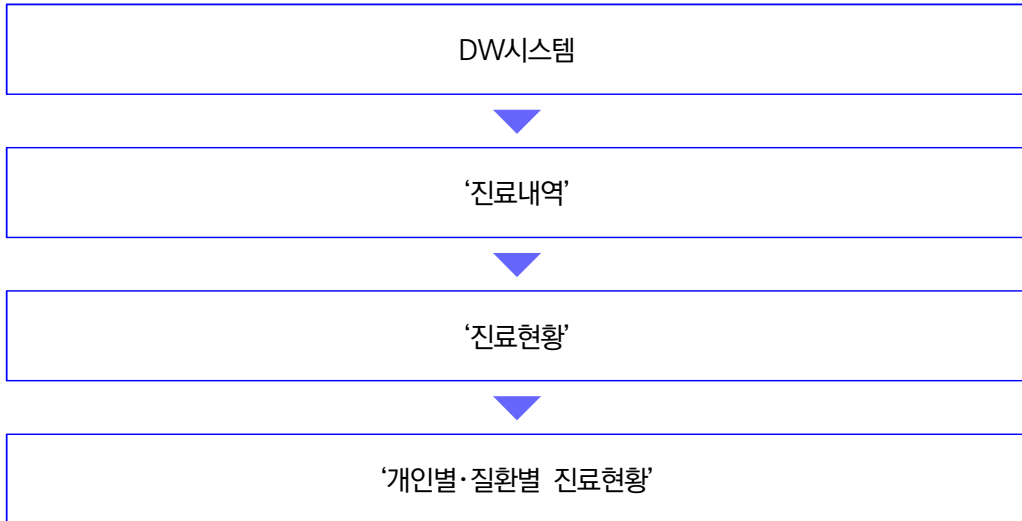
③ 보장 | 이력조회 | ④ 가구원 | 복지알림이 | ⑤ 급여·서비스

보장구분	소득인정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서비스	서비스 시작일자	서비스 상태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속
(근로보험) (고용보험)

2) DW시스템 활용

① 개인별·질환별 진료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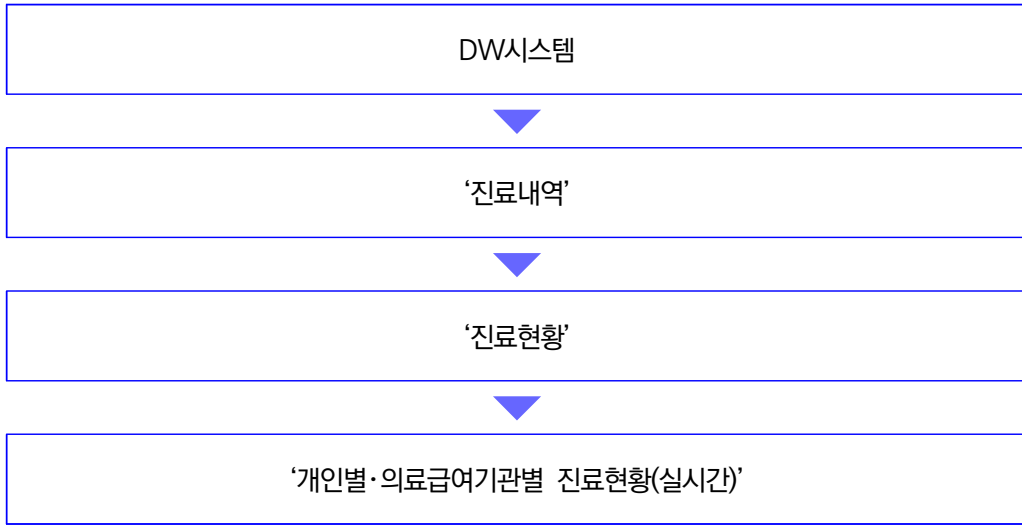


❖ 개인별·질환별 진료현황 조회 : DW시스템 > 진료내역 > 진료현황 > 개인별·질환별 진료 현황

The screenshot shows the 'DW시스템' interface with the '진료내역' menu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개인별·질환별 진료현황' report. The report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Category), '주상병명' (Main Disease Name), '상병코드' (Disease Code), '총급여액수' (Total Payment Amount), '실급여액수' (Actual Payment Amount), '진료건수' (Number of Visits), '입원일수' (Number of Inpatient Days), '외래일수' (Number of Outpatient Days), '투약일수' (Number of Medication Days), '기권무담금' (Waived Payment), and '의료기관수 (약국제외)'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excluding Pharmacies). The data is summarized by '회계년차성질환' (Fiscal Year and Visit Type) and '기타질환' (Other Visits).

구분	주상병명	상병코드	총급여액수	실급여액수	진료건수	입원일수	외래일수	투약일수	기권무담금	의료기관수 (약국제외)
합계			121	117	0	0	4	117	1,318,600	3
회계년차성질환	소계		4	2	0	0	2	2	12,850	1
	파킨슨병	G20	4	2	0	0	2	2	12,850	1
기타질환	소계		117	115	0	0	2	115	1,305,750	2
	허추행학,요천부	M4807	2	1	0	0	1	1	104,510	1
	상세불명의말림	R251	2	1	0	0	1	1	242,450	1
		ZZZZZ	113	113	0	0	0	113	958,790	0

② 개인별·의료급여기관별 진료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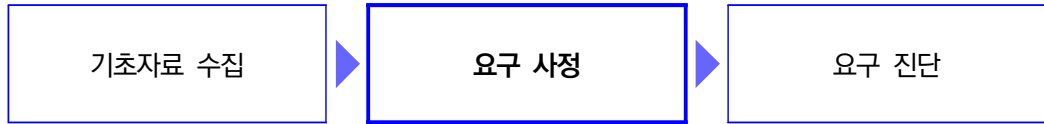
❖ 개인별·의료급여기관별 진료현황 조회 : DW시스템 > 진료내역 > 진료현황 > 개인별·의료급여기관별 진료현황(실시간)

개인별 의료급여기관별 진료현황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번호	종별	총급여원수	진료건수	임원월수	외래월수	부역월수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합계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행
(근로부고)

나. 요구사정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에 의거하여 사정
 - 요구 점수 사정은 영역별 세부 항목 내용을 토대로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및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를 확인하여 향후 사례관리 수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 요구 점수 사정영역

영역	세부 항목
I. 제도 이해	• 의료급여제도 이해 정도
II. 합리적 의료이용	• 의료쇼핑 • 이용 의료기관 전문 수준 • 이용 의료기관 수 • 중복처방 정도 •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III. 건강 삶의 질	• 건강상태 • 일상수행능력(ADL) • 통증 • 우울 • 신체증상관리/상태조절 • 약물 복용
IV. 자가 건강관리능력	• 전반적 질병 이해 정도 • 건강관심도 • 생활습관 관리(흡연, 음주, 운동, 식이) • 위생 및 예방에 대한 관리 정도 (개인위생 청결 정도, 예방접종 유무, 정기 건강검진 유무)
V. 지지체계 구축	• 사회적 고립도 • 자원연계 정도
VI. 생활환경	• 주거환경 (채광/환기, 냉난방, 부엌 상태, 안전 상태, 화장실/목욕시설)

❖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p>I. 제도 이해</p>	<p>1. 의료급여 제도 이해</p>	<p>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본인부담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대상자가 알아야 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잘 아는 편이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p>
<p>II. 합리적 의료이용</p>	<p>1. 의료쇼핑</p>	<p>동일 질병으로 3기관 이상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의 경향을 보임</p> <p>1. 매우 심하다 2. 조금 심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p>
	<p>2.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p>	<p>질병대비 의원급이나 1차 진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주로 2·3차 병원 등 전문 진료를 이용함</p> <p>1. 매우 심하다 2. 조금 심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p>
	<p>3. 이용 의료기관 수</p>	<p>단골기관 없이 많은 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함</p> <p>1. 매우 심하다 2. 조금 심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p>
	<p>4. 중복처방 정도</p>	<p>대상자가 동일 질병으로 중복처방 받은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3개 질환 이상을 1~2회 정도 중복처방을 받고 있거나 또는 1개 질환을 4회 이상 중복처방 받고 있음 2. 2개 질환을 1~2회 정도 중복처방 또는 1개 질환을 3회 중복처방 받고 있음 3. 1개 질환을 현재 1~2회 정도 중복처방 받고 있음 4. 1개 질환을 과거 한번 정도 중복처방 경험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음 5. 중복처방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p>
	<p>5.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p>	<p>대상자의 질병상태 및 증상과 비교하여 의료쇼핑,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이용 의료기관 수, 중복처방의 적정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2점 : 위의 4항목이 모두 심한 경우 3~4점 : 위의 4항목 중 3항목이 심한 경우 5~6점 : 위의 4항목 중 2항목이 심한 경우 7~8점 : 위의 4항목 중 1항목이 심한 경우 9~10점 :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p> <p>1. 매우 불합리적 ~ 10. 매우 합리적</p>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수 (의원방고)

III. 건강 삶의 질	1. 건강상태	<p>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대상자 주관적 판단)</p> <p>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p>
	2. 일상수행 능력	<p>일상수행능력에 대해 질문(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p> <p>2.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있다.</p> <p>3.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p> <p>4.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p> <p>5.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3. 통증 정도	<p>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통증에 대해 질문(대상자 주관적 판단)</p> <p>1.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2. 심한 통증이 있다 3. 가벼운 통증이 있다 4.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다 5. 전혀 없다</p>
	4. 우울 정도	<p>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대해 질문(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p> <p>2.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p> <p>3.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p> <p>4.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p> <p>5.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p>
	5. 신체증상 관리/ 상태조절	<p>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관리나 혈압, 혈당 체크 등 상태 조절을 위한 관리를 어느 정도 의사 지시에 따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도를 질문·관찰(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2. 가끔 관리한다 3. 보통이다 4. 잘 관리한다 5.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p>
	6. 약물 복용	<p>약물복용 횟수, 양, 시간을 지시대로 이행하는지 질문(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2.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3. 보통이다 4. 잘 복용한다 5. 처방대로 매우 잘 복용한다</p>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사전·사후 평가용)

I. 자가 관리능력 (30점)										
1. 자신의 질병상태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의료급여 제도 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3. 신체증상관리/상태조절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4. 약물 복용	①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②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복용한다	⑤ 처방대로 매우 잘 복용한다					
5. 생활습관관리 (금연/절주/운동/식이)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6. 위생 및 예방 (위생/청결/건강검진/예방접종)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II. 합리적 의료이용 (30점)										
1.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① 매우 부적정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적정
2. 의료쇼핑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3.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4. 이용 의료기관 수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5. 중복처방 정도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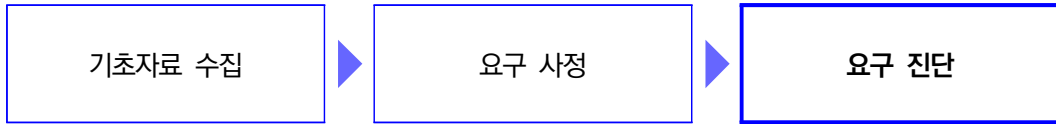
Ⅲ. 지지체계 구축 (10점)

1. 사회적 고립도	<p>〈 점수 : 체크한 항목 개수 〉</p> <p>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②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③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④ 밖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p>
2. 자원연계	<p>〈 요구에 대해 필요한 자원연계 정도 : 현재 상태를 판단 〉</p> <p>① 매우 부족 ② 약간 부족 ③ 보통 ④ 양호 ⑤ 매우 양호</p>

Ⅳ. 건강 삶의 질 (30점)

1. 건강상태	<p>〈 최근 3개월간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 〉</p> <p>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p>
2. 일상 수행 능력	<p>〈 현재 상태를 판단 〉</p> <p>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3. 통증	<p>〈 지난 일주일간 〉</p> <p>①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② 심한 통증이 있다. ③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④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⑤ 전혀 없다.</p>
4. 우울	<p>〈 지난 일주일간 〉</p> <p>①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②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③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④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⑤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p>
5. 건강 관심도	<p>〈 현재 상태를 판단 〉</p> <p>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p>
6. 주거환경	<p>〈 현재 상태 판단(양호한 경우 체크), 점수 : 체크된 항목 개수 〉</p> <p><input type="checkbox"/> 채광·환기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부엌 상태 <input type="checkbox"/> 안전 상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목욕시설</p>

다. 요구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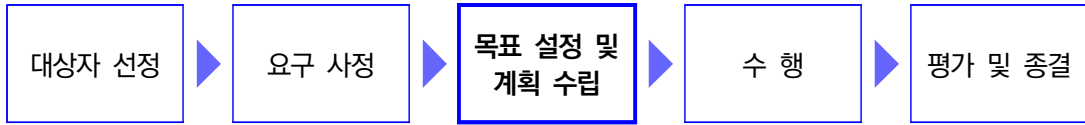


- 요구 사정된 항목을 문제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따른 요구 진단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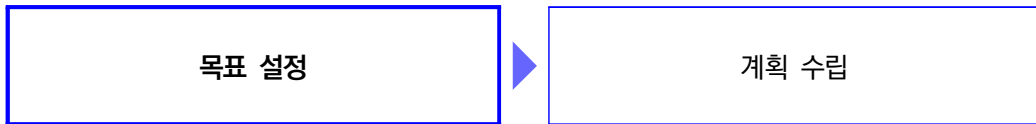
❖ 문제 영역별 요구 진단

문제 영역	세부 항목	요구 진단
1.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이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이해 부족
2.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쇼핑 • 이용 의료기관 전문 수준 • 이용 의료기관 수 • 중복처방 정도 •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상병으로 다수 의료기관 이용 • 질병대비 전문 의료기관 이용 • 다수 의료기관 이용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 비합리적 의료이용
3. 건강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 일상수행능력 • 통증 • 우울 • 신체증상관리 / 상태조절 • 약물 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건강상태 • 일상생활능력 저하 • 부적절한 질병관리 • 약물 복용 불이행
4. 자가 건강 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질병 이해 정도 • 건강관심도 • 생활습관관리(흡연, 음주, 운동, 식이) • 위생 및 예방에 대한 관리 정도 (개인위생 청결 정도, 예방접종 유무, 정기 건강검진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 • 낮은 건강관심도 • 부적절한 생활습관 • 위생 및 예방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청결한 개인위생 - 예방행위(예방접종, 건강검진) 불이행
5.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도 • 자원연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사회적 고립 • 자원연계 부족
6.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생활환경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가.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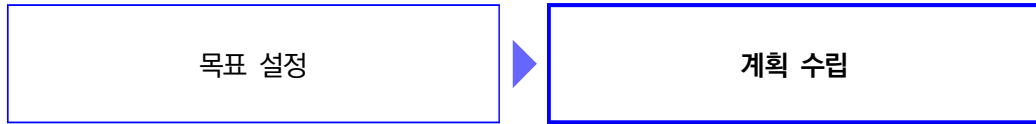


- 요구 진단 목록 작성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함

❖ 요구 진단에 따른 목표 설정

요구 진단 목록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쇼핑 - 비합리적 전문 의료기관 이용 - 약물 중복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쇼핑 감소 -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 - 약물 중복처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질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치료 순응도(혈압/혈당 상태 조절 등) - 부적절한 증상관리(통증, 우울 등) - 합병증 발생 • 약물 복용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순응도 향상 - 증상관리능력 향상 - 합병증 예방 • 복약 순응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건강관심도 - 부적절한 생활습관 - 예방행위 불이행 • 질병에 대한 지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심도 증가 - 생활습관 개선 - 예방행위 실천 • 질병에 대한 지식 및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개선

나. 계획 수립



- 요구 진단별 목표 설정에 따라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사례관리 기간, 수행 내용 및 방법, 상담일 등 기재
- 계획 수립 후 세부 계획내용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예시 : 고위험군 사례관리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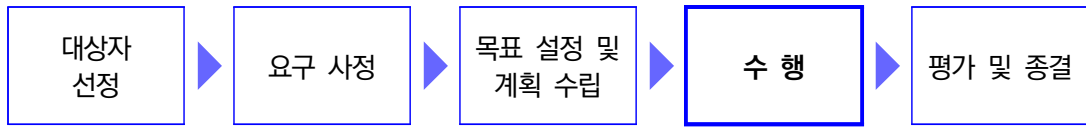
< 대상자 사례관리 계획서 >

1. 사례관리 대상자 : □□□
2. 사례관리군 : 고위험군
3. 사례관리 기간 : 3개월(2000년 1월 2일 ~ 4월 2일)
4. 사례관리 수행 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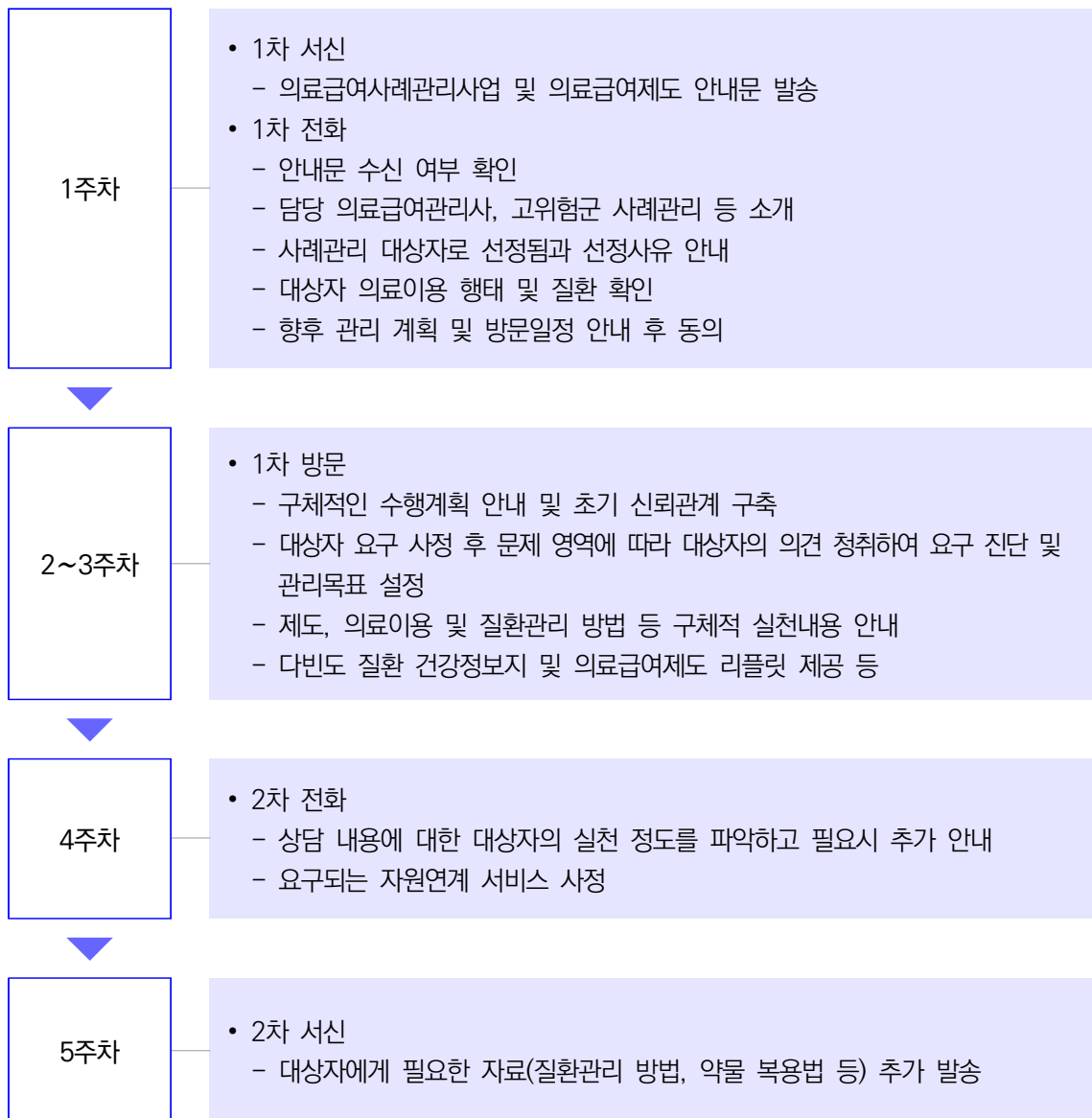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서신	1차 서신				2차 서신							
전화	1차 전화			2차 전화			3차 전화					4차 전화
방문		1차 방문								2차 방문		
자원 연계			사정	계획 수립		연계				모니터링	평가	
5. 사례관리 수행 계획 일자
 - 방문 횟수 : 2회(2000.01.30. / 03.20.)
 - 전화 횟수 : 4회(2000.01.02. / 01.31. / 02.10. / 04.01.)
 - 서신 횟수 : 2회(2000.01.02. / 02.02.)
 - 마지막 평가일자(종결일자) : 2000.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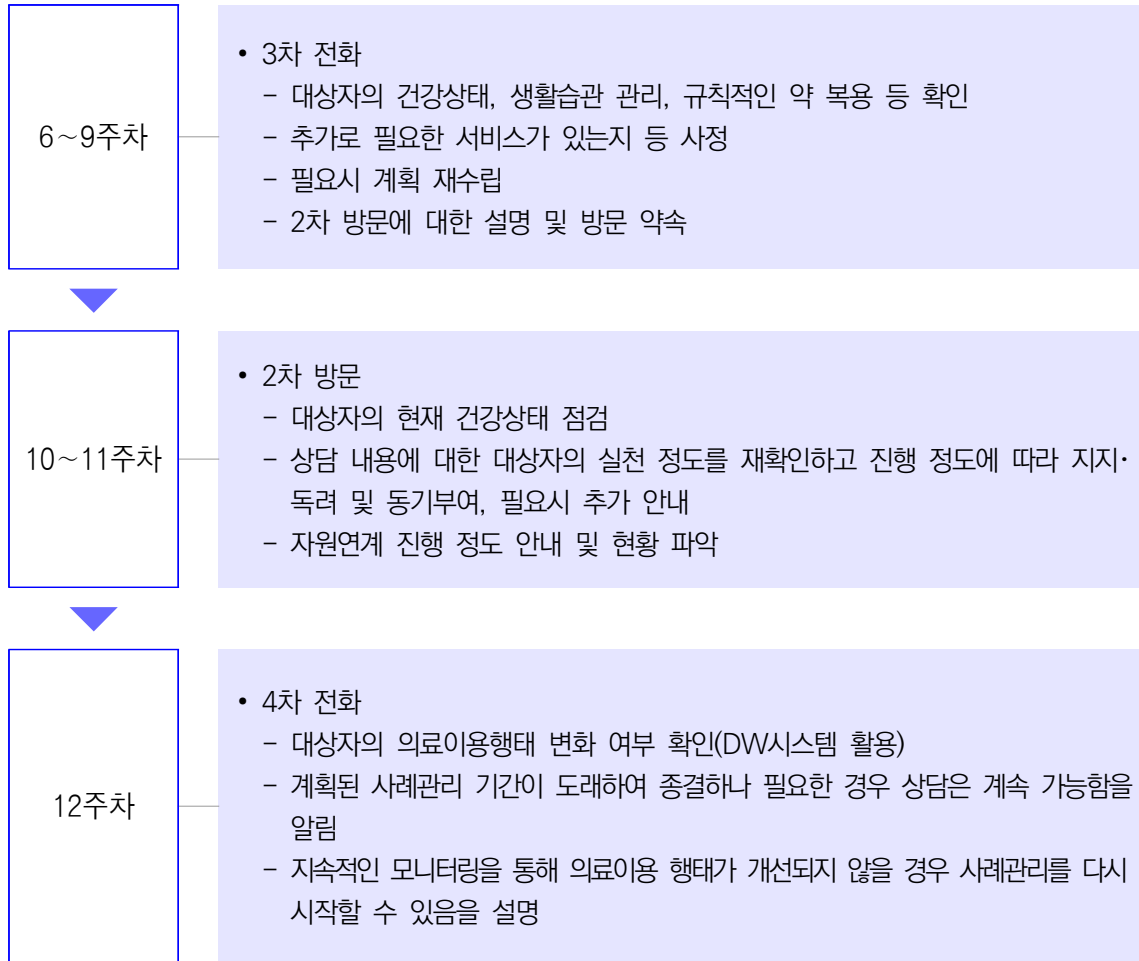
※ 대상자별 특성 및 보장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수행계획 수립

4 수행



가. 서비스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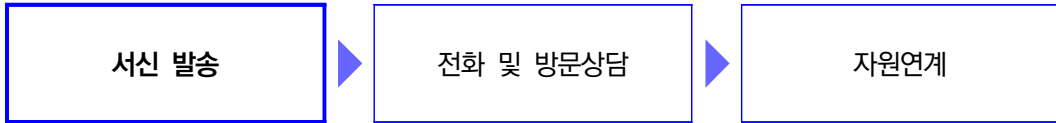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표준절차 예시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수행내용 및 절차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나. 서비스 수행 내용

1) 서신 발송



-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 및 리플릿 등 발송
 -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등 개요
 -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 등
 - 올바른 약물 복용법,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방법
 - 시·군·구청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 예시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 안내문 발송 공문

□□시·군·구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 안내문 발송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 ◇◇◇◇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추후 귀 댁에 전화 및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군·구청 ◇◇◇◇과(☎ 123-12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급여사례관리 안내문. 끝.

시·군·구청장

의료급여사례관리 안내문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근거하여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20○○년 ○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로 통보 (신경계 및 고혈압 질환으로 총 ○○○일 이용)되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추후 귀 댁에 전화 및 방문 상담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청 ◇◇◇◇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시·군·구청 ◇◇◇◇과 의료급여관리사 ○○○(☎ 123-1234)

❖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 하나.** 단골 병 · 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니세요.
단골 병 · 의원을 정해서 가면 비슷한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방지해 줍니다.
- 둘.** 현재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반약, 처방약, 한약 등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과 과거에 경험했던 약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 의사 및 약사에게 알려주세요.
- 셋.**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해 주세요!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추가로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건강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시 · 도 _____ 시 · 군 · 구청 _____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전화 _____

위험한 119
힘겨울 땀 129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제관리사업지원단

약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증상을 경감시키고 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지만 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를 입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약!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약에 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 ①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의약품 이름, 모양, 사용방법, 사용기한, 투여용량과 복용시간을 확인합니다.**

- 약의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사용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약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②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 우유, 콜라, 자몽주스 등 주스류, 커피, 녹차는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③ **지시된 양을 지시된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복용합니다.**

- 약을 2배로 먹는다고 2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고 기존의 약과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비슷하다고 친구나 가족과 약을 나누어 먹지 않고 본인의 약만 복용합니다.**



- ⑤ **의약품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설명서와 함께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 ⑥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치료가 끝난 약,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방치된 약은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수거함에 버립니다.**



- ⑦ **약을 복용 후 불편한 경우 (가려움, 복통, 설사, 어지러움 등)에는 의사, 약사에게 문의합니다.**



❖ 「허리통증에 좋은 운동법」 리플릿

허리에 좋은 생활습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 아침에 일어날 때는 팔과 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몸을 좌우로 비틀어 경직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물건을 들 때는 다리 힘을 이용하세요.

- 몸만 비틀어 물건을 잡는 동작은 척추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다리를 굽혀 들어 올립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누워서 보는 습관은 척추질환을 유발합니다.

- 목을 받치고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습관은 척추를 옆으로 휘게 만들고 온몸의 근육과 인대, 척추 등에 압박을 주어 허리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와 등을 의자나 벽에 붙이고 고개를 앞으로 빼지 않는 곧은 상태로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시·도	시·군·구청
부서명	
담당자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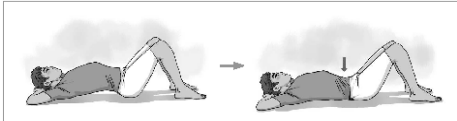
국민행복119
합거울편 1129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허리통증에 좋은 운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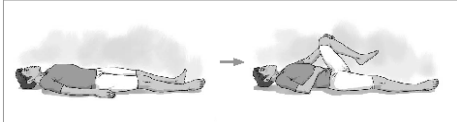
- 준비 자세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동작을 할 때는 숨을 천천히 내뿜습니다.
-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합니다.
- 통증이 극심할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1 누워서 허리누르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동작을 취할 때 엉덩이를 들면 안 됩니다.

2 누워서 한쪽 다리 당기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양측) |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등 아치 만들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면 운동을 중단합니다.

4 앉구리 늘리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양측) | 상체를 기울일 때 가슴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5 누워서 엉덩이 들어 버티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어 허리가 아치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6 일드려 상체 일으키기



10초간 유지, 10회 반복 | 고개를 들 때 통증이 있으면 팔꿈치를 더 넓게 벌려 경사를 낮게 합니다.

7 누워서 상체 일으키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머리와 어깨만 바닥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 「무릎관절염에 좋은 운동법」 리플릿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의 적절한 강도, 시간, 빈도 등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걷기, 수영, 물 속 걷기, 물 속 에어로빅 : 관절을 보호하며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및 폐의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실내 자전거타기 :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는 무릎이 완전히 펴지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 뛰기, 점프, 쪼그려 앉기 : 관절에 무리가 가며 관절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한 체중 감량은 무릎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시 · 도	시 · 군 · 구청
부서명	
담당자	
전 화	



무릎관절염에 좋은 운동법

적절한 운동은 관절주변의 근육, 인대, 건 등을 풀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 슬개골 움직임 운동



-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반쪽으로 10초간 밀어줍니다.
-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허벅지 쪽으로 10초간 밀어줍니다.
-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반대편 다리 쪽으로 10초간 밀어줍니다.

2. 하지 거상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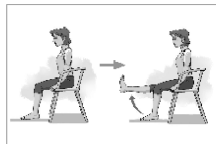
-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의 발목을 들 쪽으로 당기며 바닥에서 30cm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는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3. 대퇴근육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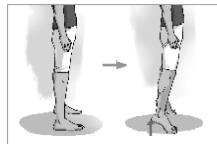
- 다리를 쭉 펴고 반대편 다리는 구부린 채로 바닥에 앉습니다.
- 무릎 부분을 바닥을 향해 10초간 누르듯 힘을 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1. 앉아서 허벅지 올리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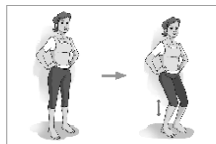
-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편 뒤 10초간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 천천히 힘을 빼며 다리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2. 발뒤꿈치 들어올리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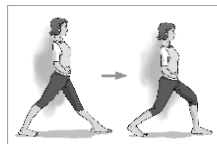
- 바로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로 섭니다.
- 자세를 2~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1. 스쿼트



- 양 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의자에 살짝 앉는 자세로 유지한 후 다시 무릎을 펴고 섭니다.
- 상체가 앞으로 기울지 않게 5회씩 1세트 시행하고 30초간 휴식 후 3세트 시행합니다.

2. 런지



- 한 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굽히고 반대편 다리가 바닥에서 10~20cm 떨어지도록 합니다.
-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편 발도 같은 동작으로 시행합니다. 양쪽을 5회씩 1세트 시행하고 30초간 휴식 후 3세트 시행합니다.

※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목, 어깨 통증에 좋은 운동법」 리플릿

건강한 목과 척추를 지키기 위한 생활지침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바닥에 구부리고 앉는 것은 목, 어깨, 척추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바닥에 앉을 때는 등과 허리를 똑바로 하고 앉도록 합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합니다.

- 스트레칭은 근육의 뻣뻣함과 피로를 풀어주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 관절,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산소 운동으로는 전신을 고루 사용하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낮게 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 위치를 높게 하고, 수시로 목과 어깨 등의 스트레칭을 하여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책을 읽을 때에는 독서대를 사용합니다.

늘거나 딱딱한 베개는 목과 어깨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배 건강에 좋은 식물을 섭취합니다.

- 닭살이 풍부한 식품은 우유, 요구르트, 멸치, 미역, 김 등이 대표적입니다.
- 닭살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쬐면 우리 몸에서 저절로 합성됩니다.

시 · 도 시 · 군 · 구 · 향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전 화 _____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목, 어깨 통증에 좋은 운동법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기본원칙

- 스트레칭 전에는 전신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빼주세요.
- 모든 동작은 천천히 시행합니다.
- 무리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 서서히 운동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 스트레칭 도중 또는 후에 통증이 악화되면 중단하고 병행 검진을 받습니다.
- 모든 동작 앞에서 10초간 정지하고 유지하며, 하루 10회 이상 실시합니다.

목, 어깨에 안 좋은 자세



- 고개를 앞으로 빼고 컴퓨터를 하는 자세
-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자세
- 소파 앞쪽에 머리를 기대고 누는 자세



- 앞으로 누워 한쪽 발로 목을 받치는 자세
- 한쪽 어깨만 사용하는 자세
-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

스트레칭 운동법

1. 목 앞쪽 운동



- 의자에 허리를 기대고 앉습니다.
- 턱을 최대한 당겨서 이음턱을 만듭니다.

2. 목 회전 운동



-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손을 들어 왼쪽 턱에 얹습니다.
- 오른쪽으로 턱을 만듭니다.
-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 손을 아래까지 있을 경우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부드럽게 고개를 돌립니다.

어깨 운동법



-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 한쪽 팔을 반대편 어깨 방향으로 목 쪽과 다른쪽 발로 짚어 가슴방향으로 당깁니다. 시선은 당기는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 한쪽 팔을 어깨 위로 남긴 다음 반대쪽 손으로 앞꿈치를 잡은 다음 당깁니다.

-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크게 원을 그리듯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 양손을 머리 위에서 지지 합니다.

- 그대로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 팔뚝은 구부리지 않고, 한여 끝만 들어 머리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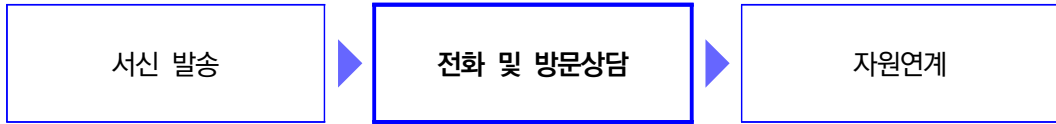


- 주먹 전 앞팔을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 팔이 최대한 커 가며 뻗습니다.

- 이 자세에서 주먹 전 앞팔을 바깥으로 돌려 올립니다.

- 주먹 전 앞팔을 바깥으로 흔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내립니다.

2) 전화 및 방문상담



- 방문일정 약속
- 대상자와 신뢰관계 구축
- 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수행계획 안내하여 참여 독려
- 구체적인 실천내용 중심으로 상담(올바른 약물 복용법, 질환관리 방법, 생활습관 관리방법 등)
- 요구되는 자원연계 서비스 사정
- 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변화, 의료이용 행태 개선여부 등 모니터링

❖ 방문 시 준비사항

- DW시스템 활용하여 질환, 급여일수, 진료비, 이용 의료기관 수, 의약품 중복 투약일수 등 의료이용 현황 파악
- 의료급여제도, 질환관리 등 제공자료
- 대상자와 방문일정 협의 후 대상자의 연락처 및 주소 등 확인
-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
- 방문 일정에 대해 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보고
 - 방문목적, 방문대상, 방문시간, 방문 장소, 출장자, 예상복귀시간 등
 - 예정에 없던 대상자 방문 시 유선 등을 통해 사전 보고 후 방문
-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무원 등 2인 이상 방문
-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 항상 소지

※ 세부내용은 부록(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안)) 참조

- 대상자의 사정 내용을 참고하여 행복e음에 사례관리 수행내용 입력

❖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기초조사서 관리 > 기초조사서 등록

기초조사서 등록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①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순번	사례관리 시작일자	등록일자	종결일자	의료급여관리사ID	대상자분류	재등록여부	비상연락관계코드
1							
2							

대상자 기본정보 | 인적사항 | 합리적인의료이용 | 건강상의 질 | 자가건강관리 능력 | 지지체계 구축 | 수행계획

① 1. 제도이해

1. 제도이해 여부 연장승인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관리사 없음

2. 의료급여제도 이해 정도

제도이해의 부족

②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전반적 의료이용 상태

2) 문제영역 외래 입원

3) 세부문제

동일질병 의료소핑 장기 입원 약물

다수의외기관 이용 (이용기관 수 _____ 개) 다빈도 입원

필요보다 전문기관 이용 불필요 입원

필요보다 일차기관 이용 과소 이용

과소이용

비합리적 의료이용

의료소핑

비합리적 이용기관 전문수준

약물 중복처방

1. 의료소핑

2. 이용기관 전문수준

3. 이용기관 수

4. 중복처방 정도

5.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 요구(건강)점수는 사례관리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로 구분되며 사전·사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함에 유의

❖ 수행기록지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수행기록지 관리 > 수행기록지 등록

수행기록지 등록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① 등록내역 ※ 수행기록지 수정,삭제는 최종차수만 가능합니다.

순번	사례관리 시작일자	수행기록 등록일자	의료급여관리사	수행차수	수행시간	사례관리 종료일자	제도이해부족 교육여부	제도이해부족 모니터링여부	제도이해 종료일
1									
2									
3									

대상자 기본정보 | 수행기록지1 | 수행기록지2 | 액션 | 추가등록 | 삭제 | 수정 | 저장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의료급여관리사: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종결예정일자: _____

수행일자: _____ 수행방법: _____ 수행시간: _____ 수행차수: _____

요구도 진단 |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 모니터링 | 종료 | 수행 평가

1. 제도이해의 부족 [선택]

비합리적 의료이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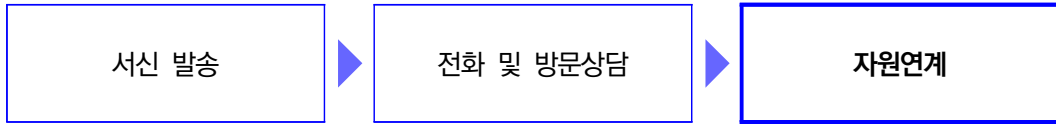
의료소핑 [선택]

II. 비합리적 이용기관 전문수준 [선택]

약물 중복처방 [선택]

※ 수행기록지 입력 시 요구도 진단-수행내용 체크 후 수행평가 작성, 수행 차수별 수행 평가점수 변화 확인 후 자체평가서로 이동하여 기록

3) 자원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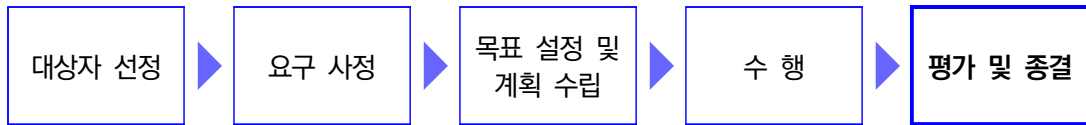


- 요구 사정 후 필요시 자원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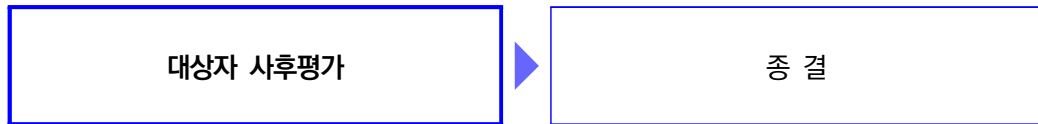
Ⅱ 자원연계 Ⅱ

- 자원연계 계획, 서비스 수혜 여부 안내
- 공공·민간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3]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의 동의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 자원연계 전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목록 등 확인
-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는 서비스 경우 자원연계 의뢰서 [서식12] 작성
※ 위기가구 발견 시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평가 및 종결



가. 대상자 사후평가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사후평가 실시
 - 모든 수행을 종료한 후 대상자의 요구 변화를 최종 평가하고 사전 평가점수와 비교하여 문제영역별 목표 달성 여부 확인
 - 행복e음 시스템 자체평가서는 수행기록지 마지막 차수의 수행평가 점수가 최종 사후점수로 기록됨.
 - 의료급여관리사는 자체평가서 중 합리적 의료이용, 지지체계 구축, 건강 삶의 질, 의료급여관리사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후평가 실시
- ※ 요구 사정 부분의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p.64) 참조

❖ 자체평가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자체평가서 관리 > 수행실적/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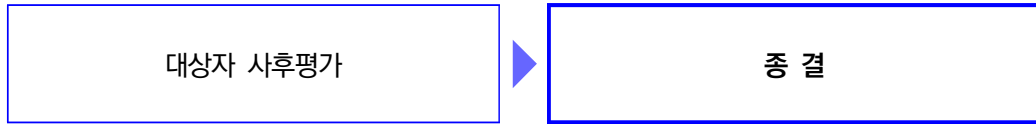
※ 의료급여관리사 전체 평가 항목 :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록할 것

❖ 자체평가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자체평가서 관리 > 사전평가/사후평가

※ 사전/사후 점수 변화에 유의, 필수 입력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종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수 (근원보고) (고원보고)

나. 종결



1) 종결기준

- 일반종결
 - 사례관리 기간과 목표관리 횟수가 끝난 경우
- 조기종결
 - 사례관리 기간과 목표관리 횟수를 모두 채우지 않았지만 목표 달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즉 종결기준을 적용하여 충족되는 경우
 - ※ 종결기준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측정표 및 종결기준(p.83) 참조
- 중도종결
 - 대상자의 사망, 전출, 수급 중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극적인 수행에도 의료이용 행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강제종결
 - 행복e음에 사례관리 입력 오류 건을 삭제한 경우
 - ※ 강제종결 건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2) 종결기준에 따라 사례관리 종결 후, 행복e음 자체평가서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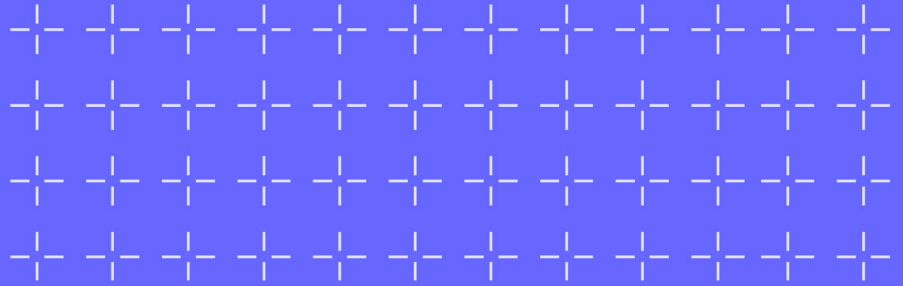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측정표 및 종결기준

영역	분류		점수	종결기준
I. 자가 건강관리능력	지식	1. 자신의 질병상태	5	3
		2. 의료급여제도 이해	5	3
	치료순응도	3. 신체증상 관리/상태 조절	5	3
		4. 약물 복용	5	3
	건강행위	5. 생활습관 관리	5	
		6. 위생 및 예방	5	
	소 계		30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10	
	2. 의료쇼핑		5	3
	3. 이용 의료기관 전문 수준		5	3
	4. 이용 의료기관 수		5	
	5. 중복처방 정도		5	3
	소 계		30	
III. 지지체계 구축	1. 사회적 고립도		5	
	2. 자원연계		5	3
	소 계		10	
IV. 건강 삶의 질	1. 건강 상태		5	
	2. 일상수행 능력		5	
	3. 통증		5	
	4. 우울		5	
	5. 건강관심도		5	3
	6. 주거환경		5	
	소 계		30	
총 계			100	

※ 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3점) 이상을 종결자로 함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요구 측정표(고원보고)

제 3 장



장기입원 사례관리

I. 개요	87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91
III.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	124
IV.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32

I 개요

1 정의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2 목적

-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 외래이용 전환,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자원 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여 적정 의료이용 도모 및 재정 안정화 기여

3 관리대상

- 장기입원자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부 적정 입원자
 - 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
 - 숙식 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 통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는 자
 -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자
- 장기입원자 또는 부 적정 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 ※ 의료급여기관 :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를 포함하여 관내 전체 의료급여기관
 - ※ 사회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전체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Ⅰ 장기입원 사례관리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Ⅰ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방문	전화	서신
장기입원자	6개월	2회 이상	6회 이상	수시

5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 목적
 -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증대
- 연계대상
 -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 수급권자 측면 사유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협조가 안 되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연계방법
 - 시·군·구는 의뢰서식[서식기]에 의거 의료급여기관 기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후 매월 23일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파일 취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로 매월 25일까지 제출
 - ※ 연계 대상 명단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계획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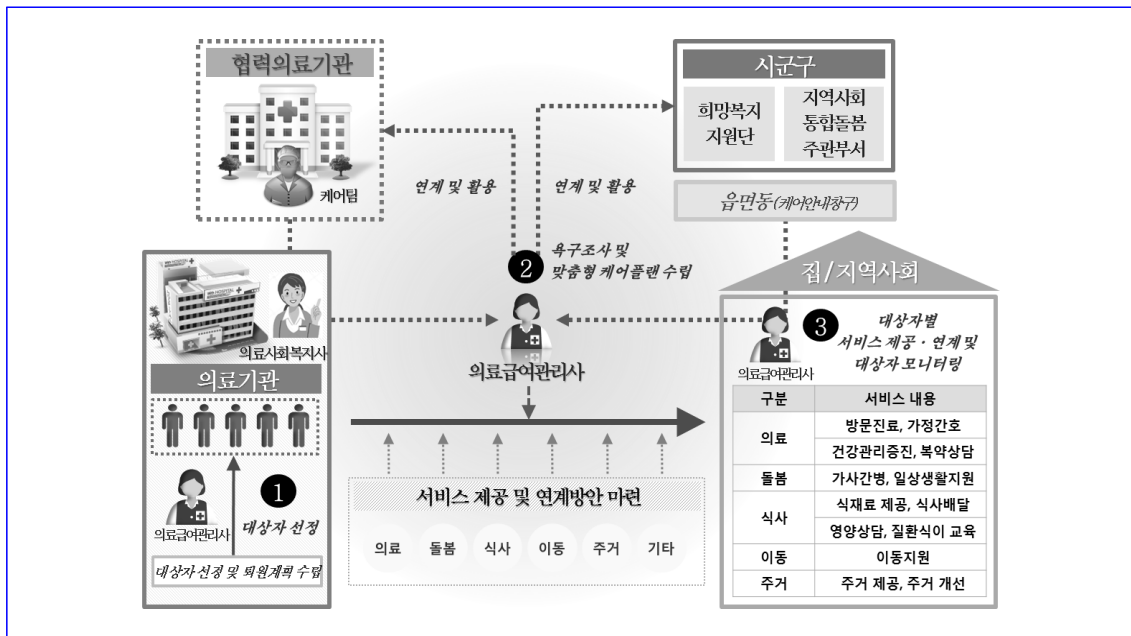
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연계

- 목적 : 의료급여사례관리(신규군 제외)에 따라 퇴원하는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연계대상 : 만 65세 미만의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신체수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6개월, 월 40시간)
- 연계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담당부서에 제출
 - ※ 시·군·구 가사간병담당부서와 대상자의 중복 지원여부 등을 사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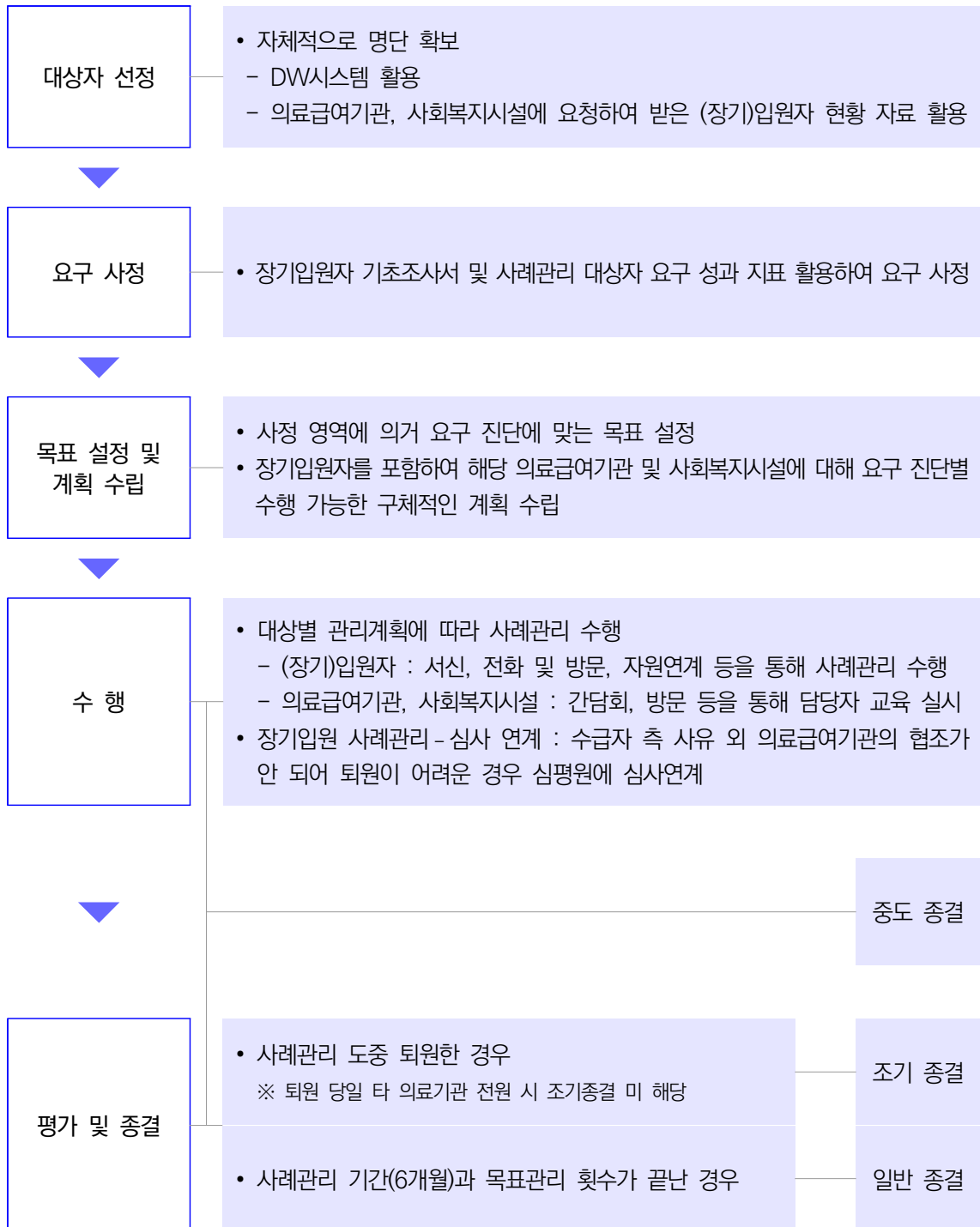
7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계)

- 목적
 -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 모델 개발
 - 대상자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재정 효율화가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제도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시범사업 기간 : 2019년 6월~ (2년간 실시예정)
- 시범사업 대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노인형 13개 시·군·구) 의료급여 퇴원자
- 시범사업 내용
 - 대상자 요구 및 필요도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지역 의료급여관리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관부서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하여 장기입원사례관리 수행 및 퇴원 후 필요자원 연계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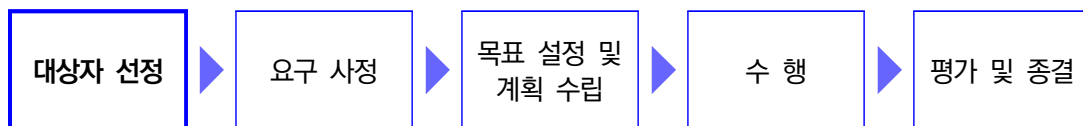


8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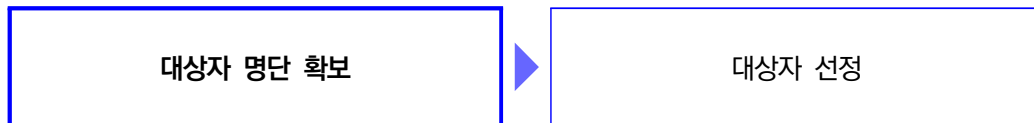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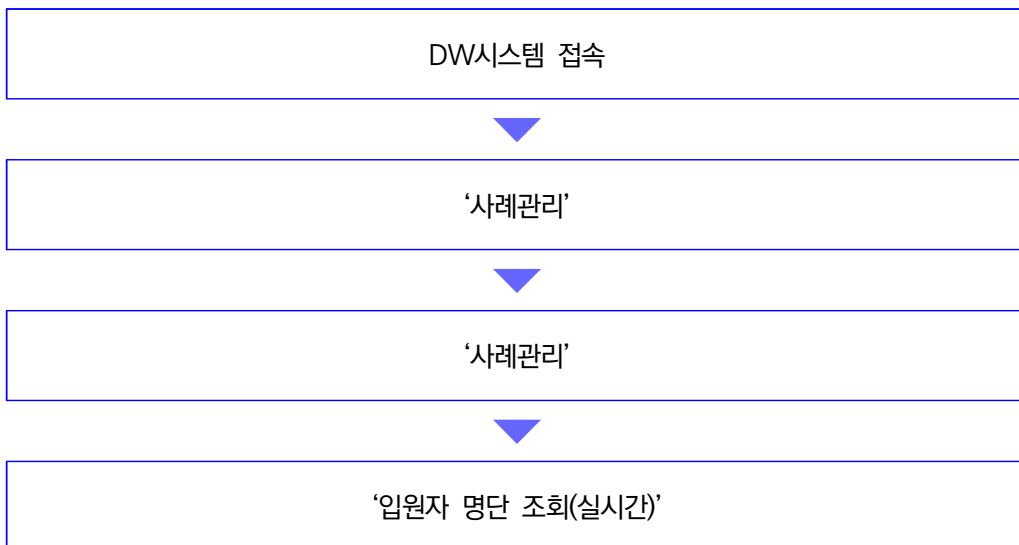


가. 대상자 명단 확보



1) DW시스템에서 명단 확보

① 입원자 명단 조회(※ 진료확인번호 부여 기준)



❖ 입원자 명단 조회 : DW시스템 > 사례관리 > 사례관리 > 입원자 명단 조회(실시간)



2)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요청하여 명단 확보

❖ 예시 :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 요청 공문(수신자 : 의료급여기관)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법 제32조2(자료의 제공)과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귀 기관에 입원 중인 우리 시·군·구 의료급여수급자 자료를 요청하오니 2000년 ○월 ○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원환자 현황 서식 1부. 끝.

시·군·구청장

❖ 예시 :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 요청 공문(수신자 : 사회복지시설)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중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기)입원자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20○○년 ○월 ○일(월)까지 우리 시·군·구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기)입원자 현황 조사표
 2. (장기)입원자 안내문(시설용).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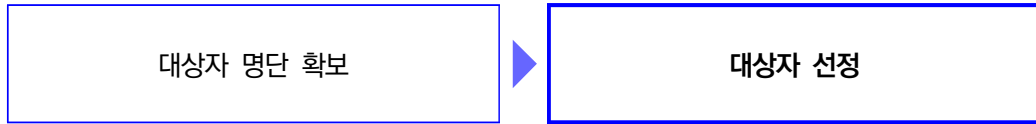
시·군·구청장

▣ 사례관리 대상자 개인정보 요청 및 취급 관련근거 ▣

- 「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 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급권자 개인정보관리

나.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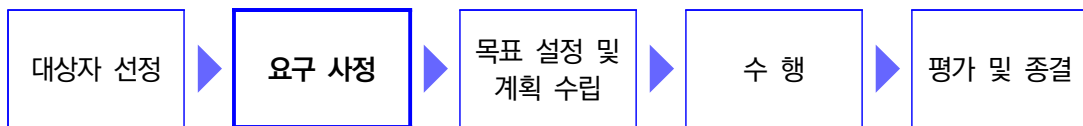
- 선정기준

- 대상자별 DW시스템 진료내역을 확인·분석하여 질환 대비 장기입원자, 반복적인 입·퇴원자 등 부 적정 입원이 의심되는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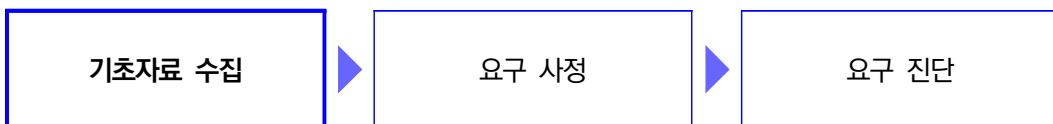
- ※ 시·도와 시·군·구 간 관리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행 전 반드시 대상자 공유

- ※ 시·도에서 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기급적 우선 수행

2 요구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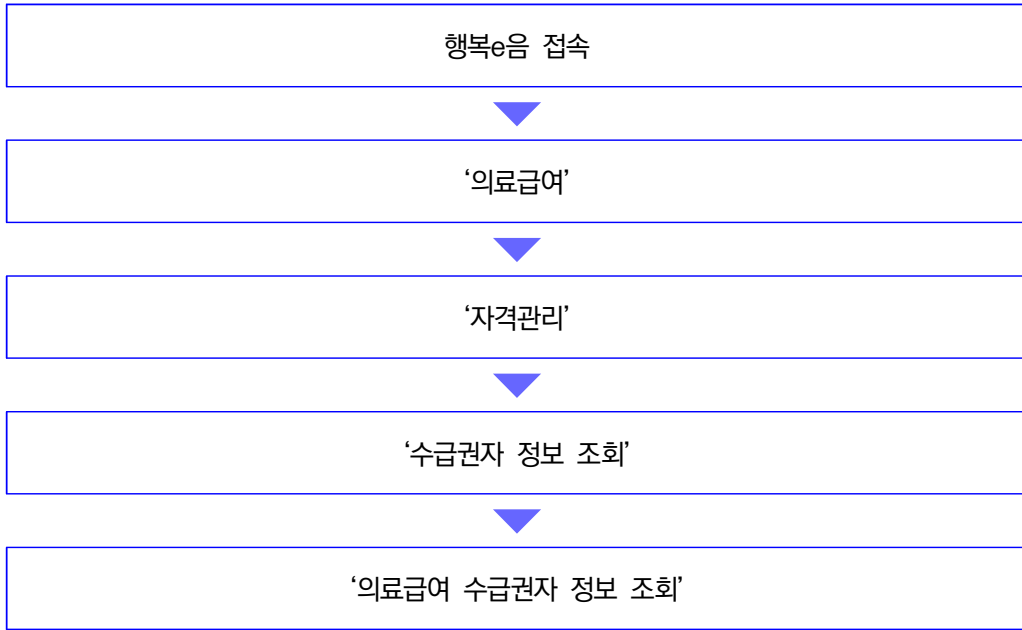


가. 기초자료 수집



1) 행복e음 활용

① 기초정보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정보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자격관리 > 수급권자 정보 조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정보 조회

행복e음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로그아웃 [44] 변동처리현황(2436) 복지일장 · My메뉴 · 세창 · 운영관리

통계 · 상담 · 신청 · 변동 · 사후 · 자료정비 · 의료급여 · 장애인복지(구)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보 조회

도움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수급자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나이)	소재행정동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상태	직장명	직장전화	최종학력
근로능력	건강상태	질병종류	종합장애등급
장애등록일자	장애종지일자	주장애유형	부장장애유형

② 의료급여 취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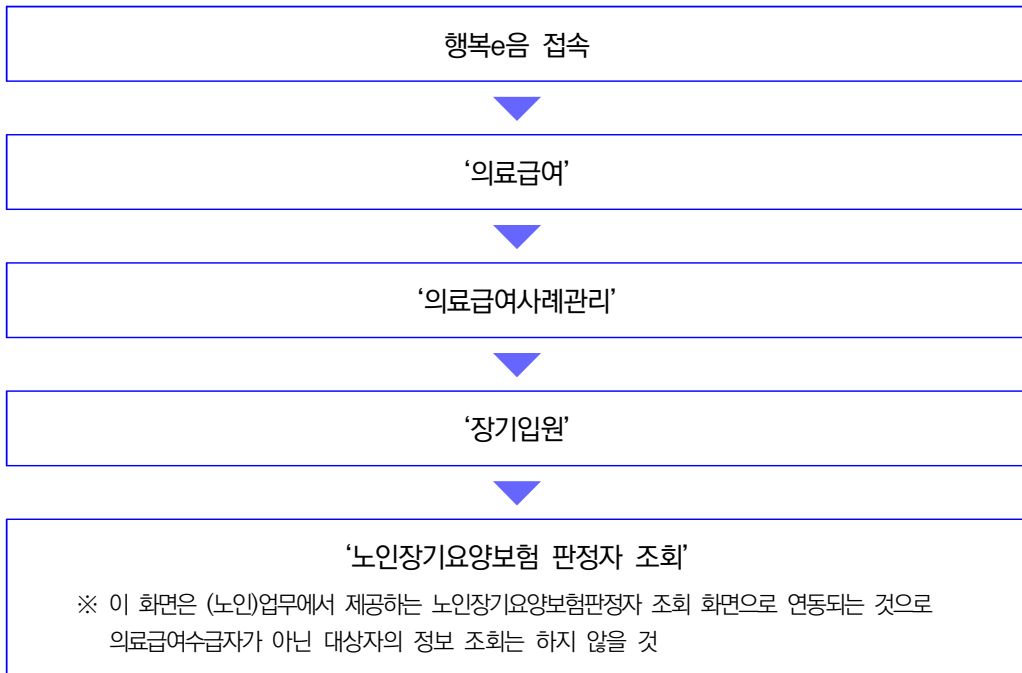
가구주성명	가구주주민번호	가구주취득일자	가구주와의관계
대상자구분	급여유형	종별	전산관리번호
취득일자	취득사유	상실일자	상실사유
입대일자	제대일자	시설명	
양부모성명	양부모주민번호	지원방식	자격상태

③ 본인부담구분 & 선택병의원 정보

본인부담구분	신청일자	작업구분	시작일자	종료(예정)일자	선택기준년도	질환구분	질병명	복합질환여부	출산(예정)일자	재향증명여부
1.선택의료급여기관				2.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						
3.선택한의원				4.선택치과의원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급권 (필수) (필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1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조회

노인 장기요양보험 판정자조회

대상시군구 전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전체
 판정등급 전체 판정일자 ~ 장기요양관리번호

◎ 검색결과

대상시군구	소재행정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관리번호	일련번호	자격구분	판정등급	판정일자	유효기간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2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장기요양등급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정보시스템

장기입원기초조사서관리

관리시도: [선택] | 관리시군구: [시군구선택] | 관리행정동: [선택]

지역구분: 관내 관외

의료급여관리사: [선택] | 사례관리시작일자: [년-월-일] | 관외 의료급여관리사: [선택]

수행계획구분: [선택] | 예상계획일자: [년-월-일] | 수급권자주민등록번호: [번호]

검색결과 [총 9건]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내/관외	시작일자	종결일자	의도급여종류	최초/재등록	퇴원여부	관리행정동	대상자연락처	의료급여관리사	관외계
[검색결과 테이블 내용]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팝업)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팝업)

검색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관리번호	판정등급	판정일자	급여종류	유효기간
[검색결과 테이블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3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장기요양등급 조회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성명: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순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등록여부	비상연락처코드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등록내역 테이블 내용]								

인적사항 | 대상자 기본정보 | 합리적의료이용 | 건강상의 질 | 자가건강관리 능력 | 지지체계 구축 | 수행계획

외래 사례관리 유무: 유 무 | 재등록여부: 최초등록 재등록 | 의료급여관리사: [선택]

사례관리 시작일자: [년-월-일] | 사례관리 종결일자: [년-월-일] | 종결예정일자: [년-월-일]

등록일자: 2017-12-05 | 지역구분: 관내 관외 | 근로능력: 있다 없다

관외개입 보장기관: [시도선택] | [시군구선택] | 의도급여관리사: [선택]

비상연락처번호: [번호] | 비상연락처: [선택] | 직계가족수: [숫자] 명

결혼구분: [선택] | 동거인관계: [선택] | 동거인수: [숫자] 명

종교: [선택] | 직업: 있다 없다 | 최종학력: [선택]

거주지역: 있다 없다 | 주소록: [선택] | 장기요양등급조회: [장기요양등급조회] | 복지서비스조회: [복지서비스조회]

의사소통능력: 가능 불가능 | 장애유형: [선택] | 장애등급: [선택]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입력일자 전 1개월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입원수는 사례관리 시작일자에서 입원일을 뺀 기간만큼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은 사례관리 시작일자로부터 6개월+10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 이내에만 수정 및 자체평가서의 공단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원연계여부: [선택] | 삭제 | 추가등록 | 저장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수준관리(정원관리)

③ 복지서비스 조회



❖ 복지서비스 조회 1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복지서비스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복지서비스조회' (Welfare Service Inquiry) page. The breadcrumb trail is: **행복e음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변동사후** > **의료급여** > **장기입원기초조사서관리**. The page title is '장기입원기초조사서관리'.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관할시도', '관할시군구', '관리행정동', '지역구분',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시작일자', '관외 의료급여관리사', '수행계획구분', '예산계획일자', and '수급권자주민등록번호'. A search button '조회' is present. Below the filters, there is a table with 13 columns: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내/관외', '시작일자', '종결 예정일자', '종결일자', '의료급여종별', '최초/재등록', '퇴원여부', '관리행정동', '대상자연락처', '의료급여관리사', and '관외계'. The table currently shows 6 results. A '복지서비스조회' button is highlighted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table area.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엑셀', '수정', and '신규등록'.

❖ 복지서비스 조회 1-① : 복지서비스 상세조건



❖ 복지서비스 조회 1-② : 서비스별 모의계산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월
유무 프로그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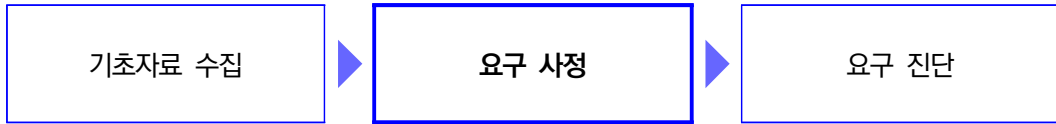
❖ 복지서비스 조회 2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인적사항 > 복지서비스 조회

2) DW시스템 활용

- ① 대상자 진료내역 확인 후 의료이용 행태 분석
- ②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조회



나. 요구 사정



- 대상자의 요구 성과 지표에 의거하여 사정
 - 요구 접수 사정은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및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를 확인하여 (장기 입원자 기초조사서[서식2] 작성
 - 각 영역별 세부 기준에 맞춰 측정

❖ 요구접수 사정 영역

영역	세부 항목
I.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II.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입·퇴원 정도 • 입원기간의 적정성 •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III. 건강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 상태 • 우울, 통증 정도 • 일상생활수행 정도 • 튜브관리 정도 • 상처관리 정도
IV. 자가 건강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확인 • 규칙적 식사 가능 여부 • 정기적 신체활동 가능 여부 • 규칙적 약물복용 여부 • 외래방문 약속일 준수 가능 여부
V.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 사회적 고립도

❖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I. 제도 이해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의료급여제도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정도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 4. 잘 안다 5. 매우 잘 안다
II. 합리적 의료이용	1. 반복적 입·퇴원 정도	동일 질병으로 타 의료기관 또는 동일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정도 1. 매우 문제있다 2. 문제있다 3. 보통 4. 적정하다 5. 문제없다
	2. 입원기간의 적정성	대상자 건강상태 대비 불필요한 입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1. 매우 문제있다 2. 문제있다 3. 보통 4. 적정하다 5. 매우 적정하다
	3.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대상자 질병상태 및 증상 대비 자원일수, 반복적 입·퇴원 의료기관 수, 입원한 의료기관 종류 등 의료이용의 합리성 정도 1. 매우 문제있다 2. 문제있다 3. 보통 4. 적정하다 5. 매우 적정하다
III. 건강 삶의 질	1. 주관적 건강 상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 1.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2. 매우 나쁘다 3. 나쁘다 4. 보통이다 5. 좋다 6. 매우 좋다
	2. 우울 정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대해 각 항목의 내용을 질문한 후 우울 정도 판단 1.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2.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3.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4.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5.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6.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3. 통증 정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통증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 1.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2. 매우 심한 통증 3. 심한 통증 4. 보통 5. 가벼운 통증 6. 전혀 없다

V. 지지 체계 구축	1.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대상자 초기 면담 시 퇴원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서비스 내용 모두 체크
	2. 자원연계 정도	현재 대상자에게 필요로 되는 자원에 비해 연계된 자원의 충족 정도 (의료급여관리사 판단) 1. 매우 부족 2. 약간 부족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3.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퇴원 후 거주지가 없어 퇴원을 못하는 경우 초기 면담 시 대상자에게 거주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연계기관 모두 체크
	4. 사회적 고립도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에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질문한 후 체크 (체크된 항목 개수 = 해당 점수, '해당사항 없음' 항목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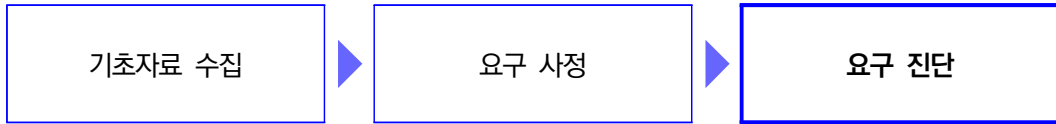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

I. 자가 건강관리능력(25점)	
1. 신체변화 관찰, 확인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2. 규칙적 식사 가능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3. 정기적 신체활동 가능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4. 규칙적 약물복용 가능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5. 외래 방문 약속일 준수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II. 합리적 의료이용(35점)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반복적 입·퇴원 정도	① 매우 문제있다(2점) ② 문제있다(4점) ③ 보통(6점) ④ 적정하다(8점) ⑤ 문제없다(10점)
3. 입원기간의 적정성	① 매우 문제있다(2점) ② 문제있다(4점) ③ 보통(6점) ④ 적정하다(8점) ⑤ 문제없다(10점)
4.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① 매우 문제있다(2점) ② 문제있다(4점) ③ 보통(6점) ④ 적정하다(8점) ⑤ 문제없다(10점)
III. 지지체계 구축(10점)	
1. 자원 연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자원연계 정도〉</p> <p>① 매우 부족</p> <p>② 약간 부족</p> <p>③ 보통</p> <p>④ 양호</p> <p>⑤ 매우 양호</p> </div> <div style="width: 45%;"> <p>2. 사회적 고립도</p> <p>〈점수 : 체크된 항목 개수, '해당사항 없음' 항목 제외〉</p>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 줄 사람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div> </div>

IV. 건강 삶의 질(30점)

1. 주관적 건강 상태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0점) ② 나쁘다(1점) ③ 조금 나쁘다(2점) ④ 보통(3점) ⑤ 좋다(4점) ⑥ 아주 좋다(5점)
2. 우울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0점) ②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1점) ③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2점) ④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3점) ⑤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4점) ⑥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5점)
3. 통증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0점) ② 매우 심한 통증(1점) ③ 심한 통증(2점) ④ 보통(3점) ⑤ 가벼운 통증(4점) ⑥ 전혀 없다(5점)
4. 일상생활 수행 정도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거나 앉아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5. 튜브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튜브 없음
6. 상처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상처 없음

다. 요구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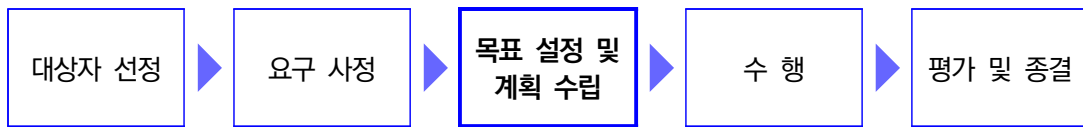


- 요구 사정된 항목을 문제 영역에 따라 분류, 그에 따른 요구 진단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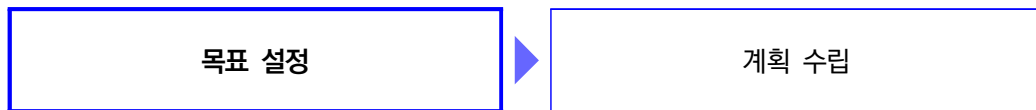
❖ 문제 영역별 요구 진단

영역	세부 항목	요구 진단
I.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부족
II.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입·퇴원 정도 - 질병 관련 입원기간의 적정성 -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의료이용
III. 건강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 - 우울 정도 - 통증 정도 - 일상수행능력 정도 - 튜브관리 정도 - 상처관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부족
IV. 자가 건강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확인 - 규칙적 식사 가능 여부 - 정기적 신체활동 가능 여부 - 규칙적 약물복용 여부 - 외래 방문 약속일 준수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 곤란 - 불규칙적 식사 - 정기적 신체활동 곤란 - 규칙적 약물복용 불이행 - 외래 방문 약속일 준수 불이행
V.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정도 •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 사회적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부족 • 사회적 고립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가.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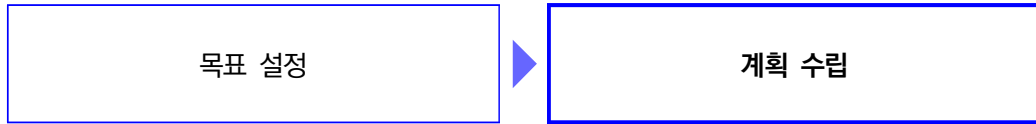


- 사정 영역에 의거, 요구 진단 목록 작성하여 목표 설정

❖ 요구 진단에 따른 목표 설정

요구 진단 목록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입·퇴원 - 부 적정 입원기간 - 입원 의료이용의 비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불 건강상태 - 일상수행능력 저하 - 통증 - 우울 - 튜브관리 미흡 - 상처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 곤란 - 규칙적 식사 곤란 - 정기적 신체활동 곤란 - 규칙적 약물복용 불이행 - 외래 방문 약속일 준수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나.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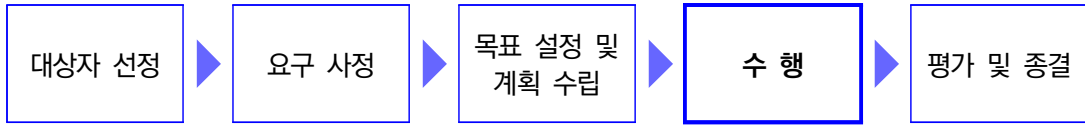
- 요구 진단별 설정 목표에 따라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사례관리 기간, 수행방법 및 내용, 상담일 등 기재
 - 대상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계획하여 상호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함
- 장기입원자를 포함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행활동 계획 수립

❖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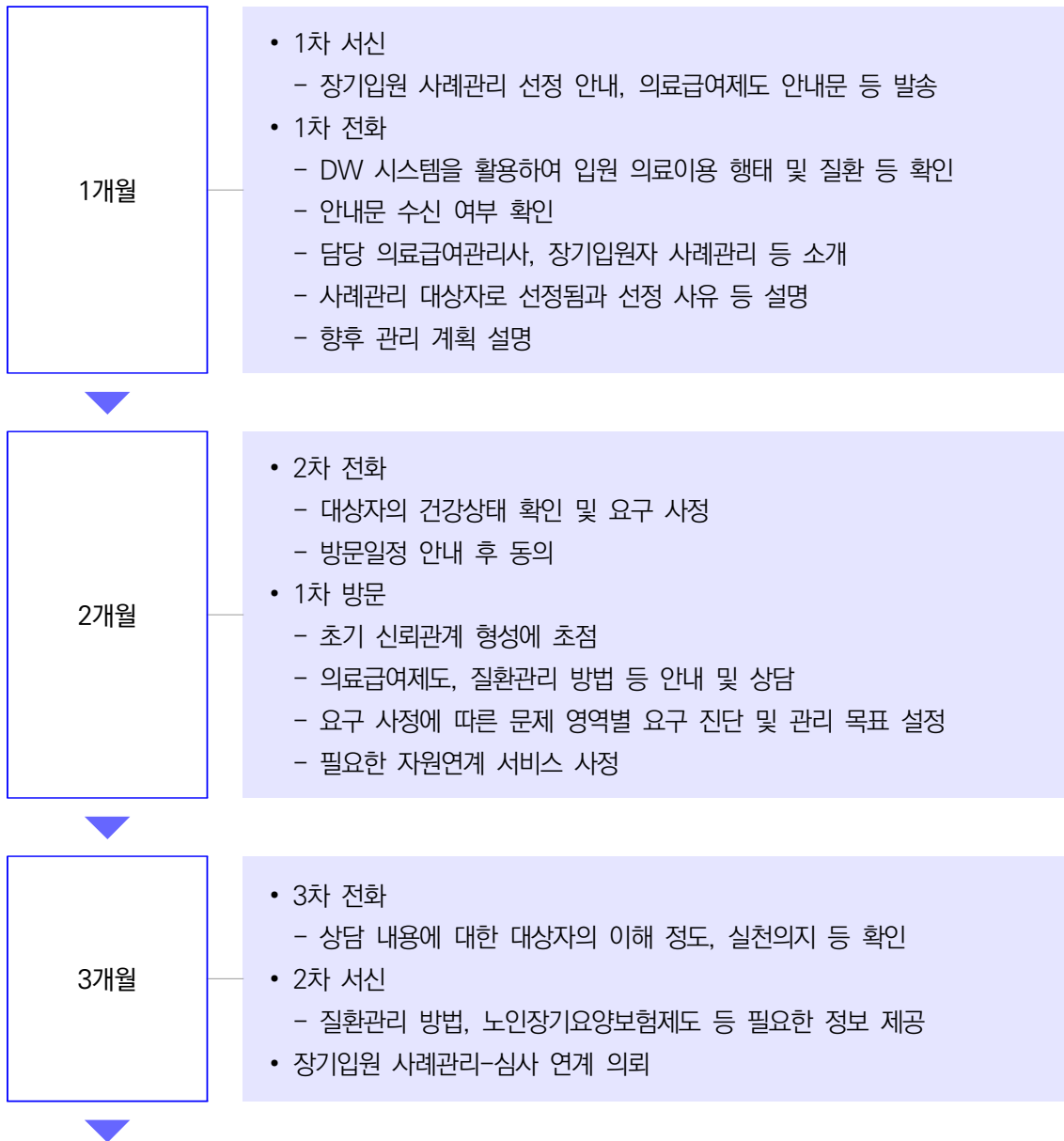
〈 대상자 사례관리 계획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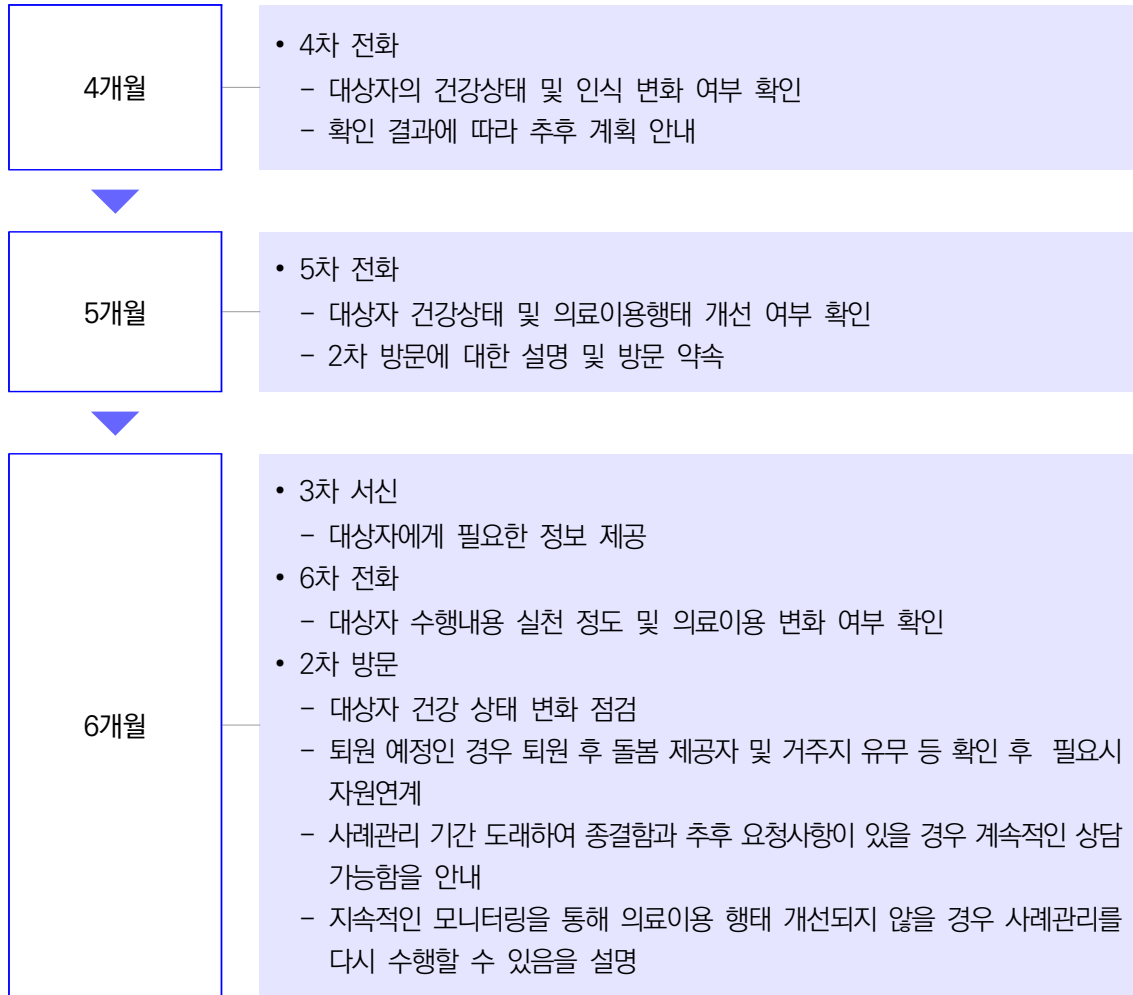
1. 입원자 : □□□
2. 의료기관 : ◇◇◇요양병원
3. 사례관리 기간 : 6개월(2000년 1월 2일 ~ 6월 30일)
4. 사례관리 수행계획 일자
 - 서신 횟수 : 3회(2000.01.02. / 03.02. / 06.02.)
 - 전화 횟수 : 6회(2000.01.02. / 02.02. / 03.02. / 04.02. / 05.02. / 06.02.)
 - 방문 횟수 : 2회(2000.02.01. / 06.15.)
 - 자원연계 횟수 : 1회(2000.06.20.)
 - 마지막 평가일자(종결일자) : 2000.06.30.
5. 수행내용
 - 요구 진단에 따른 수행

4 수행



가. 서비스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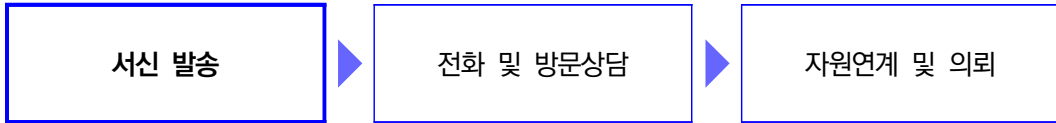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표준절차 예시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수행내용 및 절차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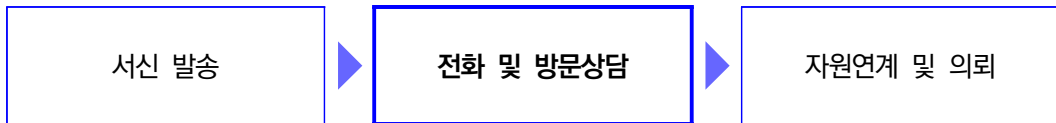
나. 서비스 수행 내용

1) 서신 발송



-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 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 질환관리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필요한 정보 제공

2) 전화 및 방문상담



- 장기입원자,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일정 약속
- 의료급여기관 및 시설 방문하여 대상자 기초정보 조사
 - 필요시 주치의 면담, 진료·간호기록지 열람 등을 통해 대상자의 현 건강 상태, 치료내역, 추후 치료계획, 퇴원 가능 여부, 보호자 방문 여부 등 파악
- 대상자 사정 내용 참고하여 사례관리 수행
 -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퇴원사정도구[서식3] 참조
- 부 적정 장기입원자의 경우 장기입원 사유, 요구되는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후 퇴원 유도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의료급여수급자용)」 리플릿

03 퇴원 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 계층, (우주대) 저소득층
- 내용 :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실 입소

- 사실 :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내용 : 급식, 요양,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편의 제공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내용 : 사실급여, 재가급여(양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가위제거급여, 특별현금급여)
- 신청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자,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내용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필요한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 내용 : 신체수업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는 「장기입원서비스사업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자
-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 목욕, 방문간호(간호, 구강위생 등)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시군구청
	과·팀
	의료급여관리사
	연락처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 의료급여관리사가 함께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제도의 안내,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역사회와 각종 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및 자활연계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01 이런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동일 질환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1일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  동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하는 경우
-  가족이 불필요하게 동반 입원하는 경우
-  향후 부정적 입원이 지속되는 경우 연장승인 신청 시 불승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 서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정보제공


- 의료급여제도, 의료서비스 이용방법,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

- 생활습관관리, 질병관리,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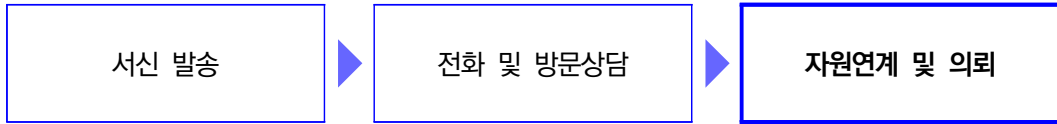
자활연계

- 주거 지원
 - 주거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사실 입소
- 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114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3) 자원연계 및 의뢰



- 퇴원 시 필요한 자원연계 의뢰
- 자원연계를 한 경우 반드시 행복e음 자체평가서 '자원연계서비스' 란에 표시 여부 확인

❖ 자원연계서비스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자체평가서 관리 > 수행실적/자원연계

장기입원 자체평가서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행실적/자원연계 | 요구점수 변화 항목 | 요구점수 변화 | 사례관리 총평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례관리기간 -

퇴원여부 퇴원 미퇴원 미퇴원 선택 종결예정일

종결형태 선택 중도종결 사유

수행실적

서신발송	전화	방문	자원연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구강보건 <input type="checkbox"/> 모자보건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진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회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무료급식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한배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목욕서비스지원 <input type="checkbox"/> 집수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사업연계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압결진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외치보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수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거처마련(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주거관련 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없음			
자원연계기관 <input type="radio"/> 장애인복지시설 <input type="radio"/>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radio"/>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radio"/> 정신보건시설 <input type="radio"/> 노숙인시설 <input type="radio"/> 여성복지시설 <input type="radio"/> 여성보호시설 <input type="radio"/> 성폭력피해지원시설 <input type="radio"/> 가정폭력보호시설 <input type="radio"/> 한센시설 <input type="radio"/> 클럽요양시설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 중복선택가능 자원연계서비스
※ 기초조사서의 자원연계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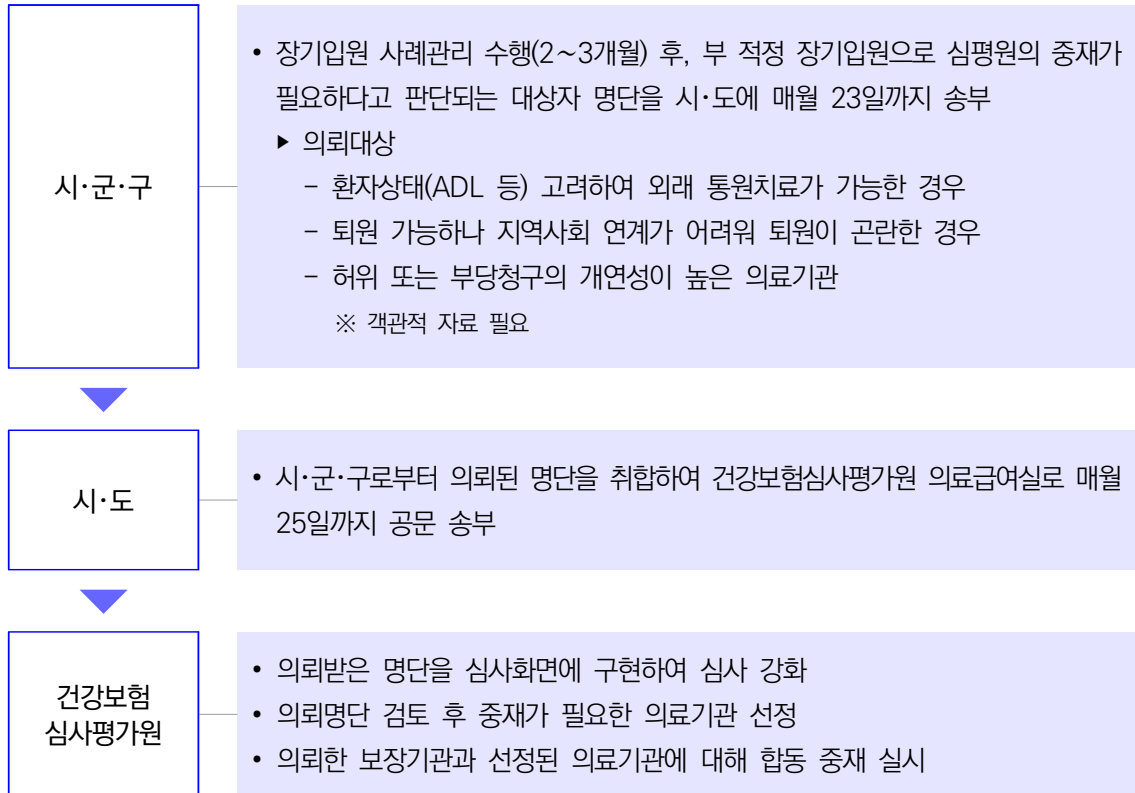
삭제 임시저장 저장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필수) (필수)

-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 수급자 측면 사유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협조가 안 되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실시

▣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수행 절차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C형)

※ 월 40시간(C형) 외 제공시간별 지원내용은 202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참조

- 목적 : 의료급여사례관리(신규군 제외)에 따라 퇴원하는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사례관리 퇴원자
- 기간 : 월 40시간, 6개월
- 서비스가격 : 본인부담금 면제(정부지원금 월 580,000원)
- 이용절차

구분	주체	내용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 치료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가사간병서비스 욕구 조사 ※ 시·군·구 가사간병담당부서 담당자와 대상자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사전 확인
신청·접수	신청인 →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신청서류 작성 • 의료급여관리사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시·군·구 담당지에 전달(공문 등)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제출
통지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8] 등 각 1부

※ [서식8], [서식9], [서식9-1], [서식9-2], [서식9-3] 활용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서식8]만 제출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및 의뢰 |

-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기준 :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 ※ 타 시·군·구 의뢰 불가

| 시·도 및 시·군·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비교 |

구 분	시·도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시·군·구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 관할 시·군에서 도로 관리 의뢰한 경우 (도내 시·군청과 의료기관 소재 시·군청 간 편도 거리 50km를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수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관외 전담 의료급여관리사 * 미채용 지역 : 기존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연간목표 관리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9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별 장기입원자 목표관리인원 기준 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공유 • 행복e음 시스템 상 관외 개입 의료급여관리사 명으로 시·도와 시·군·구 관리 대상자 구분 필요 	

❖ 관외 (장기)입원자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수행기록지관리 | 자체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순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등록여부	비상연락관계코드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인적사항 | 대상자 기본정보 | 합리적의료이용 | 건강삶의 질 | 자가건강관리 능력 | 지지체계 구축 | 수행계획

외래 사례관리 유무 유 무 재등록여부 최초등록 재등록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 시작일자 사례관리 종결일자 종결예정일자

등록일자 지역구분 관내 **관외** 근로능력 있다 없다

관외개입 보장기관 --- 시도선택 --- --- 시군구선택 --- 관외개입 의료급여관리사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직계가족수 명

결혼구분 동거인관계 동거인수 명

종교 직업 최종학력

거주지여부 있다 없다 월소득 원 장기요양등급조회 복지서비스조회

의사소통능력 가능 불가능 장애유형 장애등급 급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입력일자 전 1개월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원일수는 사례관리 시작일자에서 입원일을 뺀 기간만큼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은 사례관리 시작일자로부터 6개월+10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 이내에만 수정 및 자체평가서의 공단전송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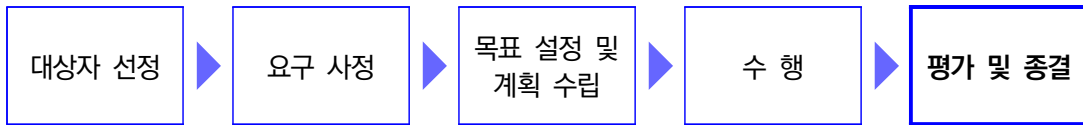
자원연계의뢰 삭제 | 추가등록 | 저장

※ 지역 구분은 관내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외 입력 시 관외 클릭 후 관외지역(입원 의료기관 지역) 및 관외개입 의료급여관리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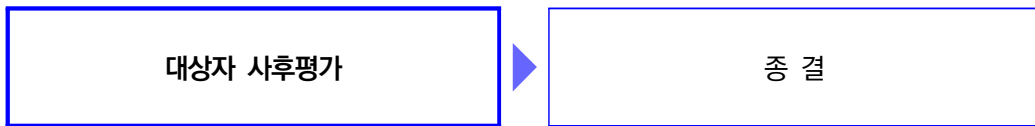
❑ 퇴원예정자 관리 ❑

- 퇴원 후 돌봄 제공자 및 거주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례관리 실시
- 응급실 내원 및 재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측면의 정보 제공 (규칙적인 약 복용 및 증상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5 평가 및 종결



가. 대상자 사후평가



-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 활용하여 사후평가 실시
- 모든 수행 종료 후 대상자 요구 변화를 최종 평가하고 사전 평가점수와 비교
- 행복e음 자체평가서는 수행기록지 마지막 차수의 수행평가 점수가 최종 사후점수로 기록됨

※ 요구 사정 부분의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 지표(p.106)' 참조

❖ 자체평가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자체평가서 관리

장기입원 자체평가서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행실적/자원연계 | 요구점수 변화 항목 | 요구점수 변화 | 사례관리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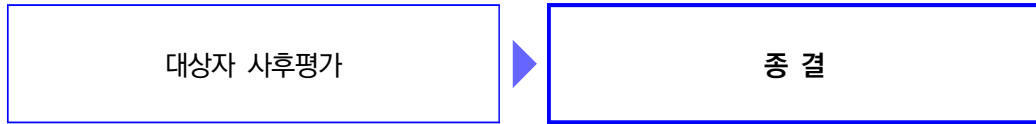
사례관리(전) 요구 점수							
건강 삶의 질	21	자가건강관리능력	13	합리적 의료이용	7	지지체계 구축	5
건강상태	2	신체변화관찰 확인 가능	3	제도이해	1	사회적 고립도	2
우울	3	규칙적 식사 가능	3	반복적 입퇴원 정도	2	자원연계정도	3
통증정도	2	정기적인 운동, 신체활동 가능	3	입원기간의 적정성	2		
일상생활수행정도	4	규칙적 약물 복용 가능	2	의료이용의 적정성	2		
투약관리	5	외래방문 약속일 수행 가능	2				
상처손상정도	5						
사례관리(후) 요구 점수							
건강 삶의 질	22	자가건강관리능력	14	합리적 의료이용	15	지지체계 구축	6
건강상태	2	신체변화관찰 확인 가능	3	제도이해	3	사회적 고립도	3
우울	3	규칙적 식사 가능	3	반복적 입퇴원 정도	4	자원연계정도	3
통증정도	3	정기적인 운동, 신체활동 가능	3	입원기간의 적정성	4		
일상생활수행정도	4	규칙적 약물 복용 가능	3	의료이용의 적정성	4		
투약관리	5	외래방문 약속일 수행 가능	2				
상처손상정도	5						

삭제 | 임시저장 | 저장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측정표

영역	분 류	점수
I. 자가 건강관리능력	1. 신체변화관찰 확인 가능	5
	2. 규칙적 식사 가능	5
	3. 정기적인 운동, 신체활동 가능	5
	4. 규칙적 약물복용 가능	5
	5. 외래 방문 약속일 수행 가능	5
	소 계	25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제도 이해	5
	2. 반복적 입·퇴원 정도	10
	3. 입원기간의 적정성	10
	4. 의료이용의 합리성	10
	소 계	35
III. 지지체계 구축	1. 사회적 고립도	5
	2. 자원연계 정도	5
	소 계	10
IV. 건강 삶의 질	1. 건강 상태	5
	2. 일상생활수행 능력	5
	3. 통증	10
	4. 우울	10
	소 계	30
총 계		100

나. 종결



1) 종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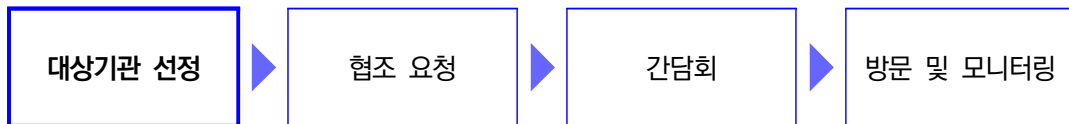
- 일반종결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기간과 목표 관리 횟수가 끝난 경우
- 조기종결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기간 내 퇴원한 경우
 - ※ 퇴원 당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경우 계속 입원이므로 조기종결에 해당되지 않음
- 중도종결
 - 대상자의 사망, 전출, 수급 중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 사망은 퇴원이 아니므로 중도종결에 해당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극적인 수행에도 의료이용 행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재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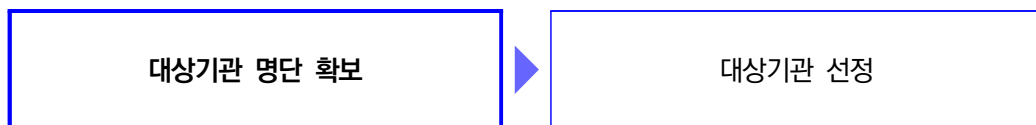
- 사례관리 종결 후 다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종결 1개월 후 수행 시작

III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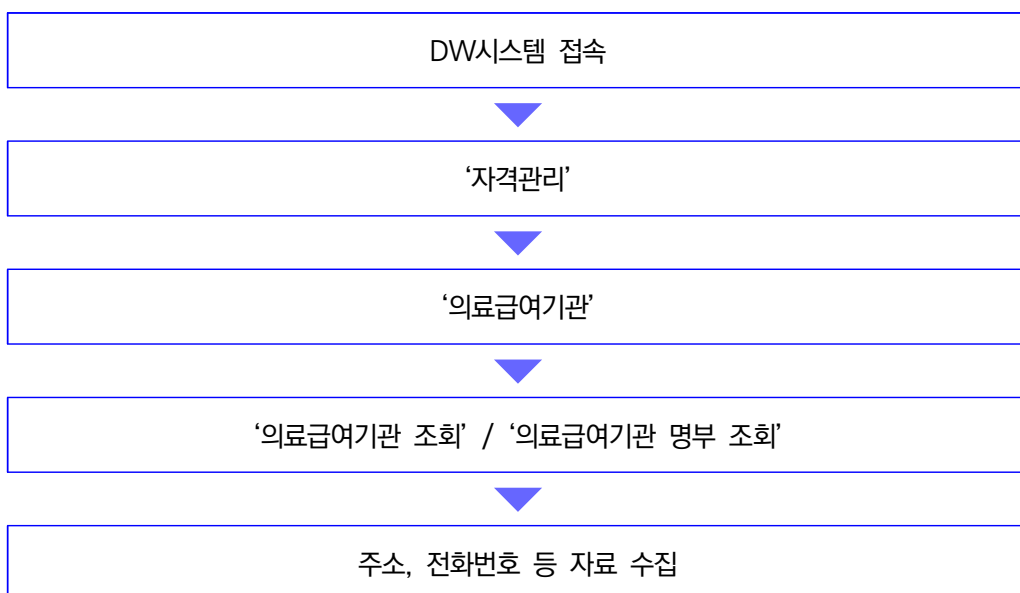
1 의료급여기관 대상 선정



가. 대상기관 명단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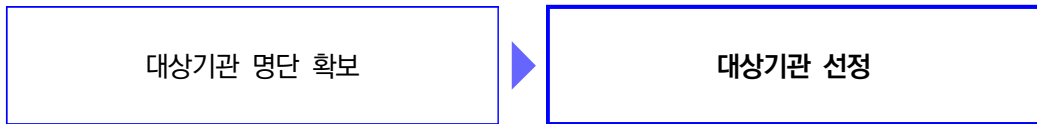
- 1) 지역 내 전체 의료급여기관
- 2)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장기)입원자가 다수인 의료급여기관
 - ①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자 현황 자료 요청하여 명단 확보
 - ② DW시스템 활용



❖ 의료급여기관 명부 조회 : DW시스템 > 자격관리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명부



나. 대상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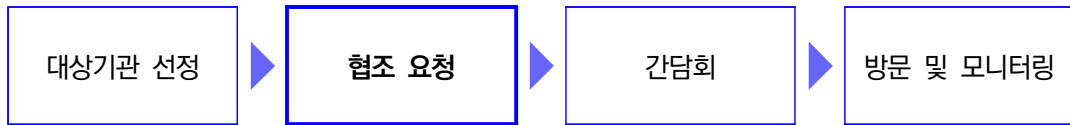


- DW시스템에서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기초정보 조사 후 대상기관 선정하여 명단 작성

시·도	시·군·구	의료급여기관 정보							비고
		기관명	기관기호	대표	기관유형	병상 수	(장기)입원 수급자 수	연락처	

4. 의료급여사제관리 수월성 (공민이치음) 기관관리

2 협조 요청



- 장기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 리플릿 등 첨부하여 협조 공문 발송

❖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요청 공문(수신자 : 의료급여기관)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련 의료급여기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의료급여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부 적정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기)입원자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리플릿(의료급여기관용) 1부. 끝

시·군·구청장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의료급여기관용)」 리플릿


장기입원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

- 정보제공**
 - 의료급여제도, 의료이용방법 등
- 건강상담**
 - 자가 건강관리, 질환관리, 약물 복용법 등 안내
- 자원연계**
 - 사회복지시설 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재가서비스
 - 방문보건 서비스 등
- 기타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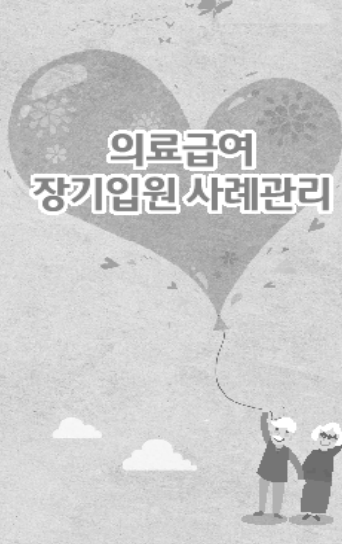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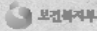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 목적**
 - 장기입원 사례관리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 효과성 증대
- 대상**
 - 장기입원 사례관리 시 수급권자 측면 사유 외에 의료기관의 협조가 안되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내용**
 -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2~3개월 진행 후,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전문 심사 및 의료기관 증제 또는 현지조사 연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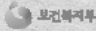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 치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부적정 의료 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

- 장기입원자**
 -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자
- 부적정 입원자**
 - 동일 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
 - 숙식 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 하는 자
 -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동반 입원 하는 자 등


장기입원자 및 부적정 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원 사례관리 절차


- 대상선정** 부적정 입원자 해당 의료급여기관, 사회복지시설
- 사례관리 홍보**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 리플릿 등 배포
- 간담회 및 협조요청** 의료급여기관 및 시설에 협조 공문 발송,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
- 상담 및 자원연계**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퇴원 시 필요한 자원연계
- 퇴원 후 관리**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전문안내 등) 모니터링

장기입원 사례관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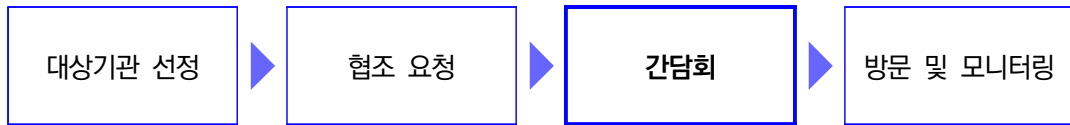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욕구 증대 및 의료급여기관 증가
- 특정 치료 없이 입원료만 발생시키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
 -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입원진료비 (14년 기준) : 670만원
- 부적정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 노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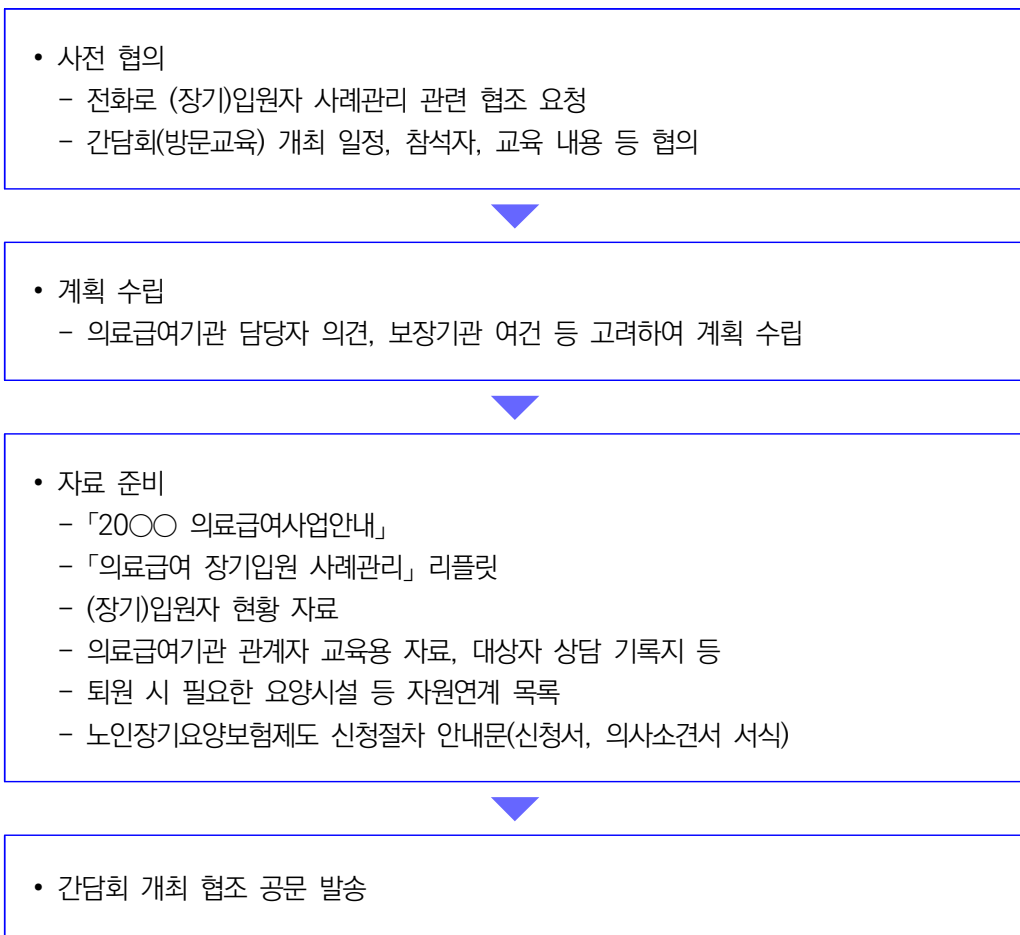
3 간담회 개최



가. 개요

- 대상 : 관내 의료급여기관 입·퇴원 담당자 및 대표(원장), 의사, 간호사 등
- 횟수 : 보장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연 1~2회 개최

나. 방법 및 절차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 적정 (장기)입원 또는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3. 관내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 (수) 14:00 ~

나. 장 소 : □□시·군·구청 ○층 ◇◇◇회의실

다. 참석 대상 : 관내 의료급여기관 입(퇴)원 담당자 및 대표자(원장),
의사, 간호사, 의료급여 담당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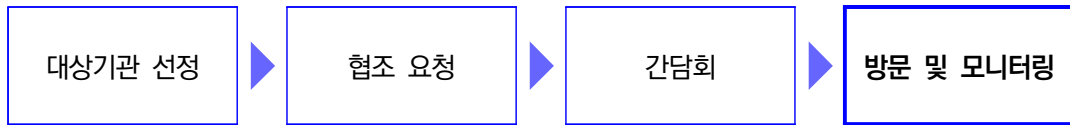
라. 주요 내용

- 의료급여사업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현황
- 의료급여기관 방문(교육) 필요성 및 협조 요청
- (장기)입원자 퇴원 시 필요한 자원연계
- 기타 건의사항 등

붙임 간담회 계획안 1부. 끝.

시·군·구청장

4 방문 및 모니터링



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주치의, 입퇴원 담당자 등 면담

나. (장기)입원자 많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예시 : 의료급여기관 방문 안내 공문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의료급여기관 방문 안내

1.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부적정 (장기) 입원자에게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귀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입원자 및 입·퇴원 담당자와 면담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급여기관 방문 일정표

2.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안내문. 끝.

시·군·구청장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안내문

평소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입원진료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우리 시·군·구에서는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별다른 치료 없이 숙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 적정(장기)입원 중인 대상자와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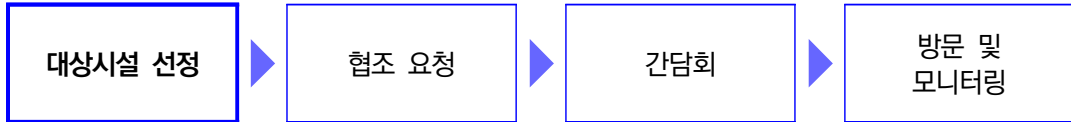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후 귀 기관에 전화,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의 진료·간호기록지 열람을 요청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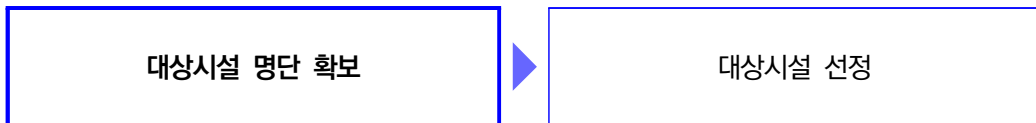
□□시·군·구청 ◇◇◇◇과 (☎ 000-123-1234)

IV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 사회복지시설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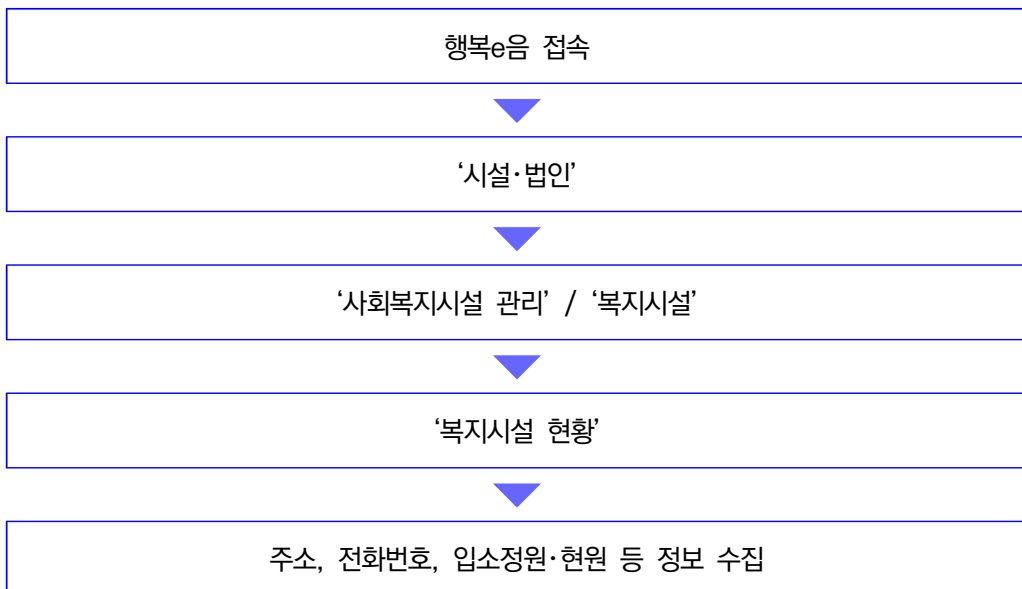
가. 대상시설 명단 확보



1) 지역 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2) (장기)입원자가 다수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 ① 사회복지시설에 (장기)입원자 현황 자료 요청하여 명단 확보
- ② 행복e음 활용



❖ 복지시설현황 조회 : 행복e음 >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 관리 > 복지시설 > 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대장 상세조회

사회복지시설대장 상세조회 도움말

시설신고번호

● 시설개요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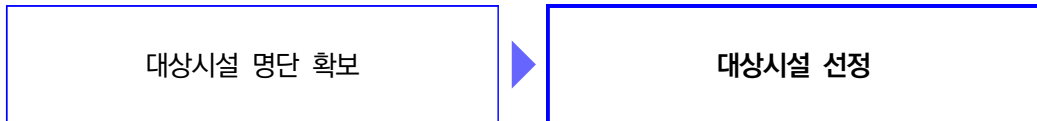
시설유형 <input type="text"/>	시설종류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설명 <input type="text"/>	시설소재지 <input type="text"/>		
시설장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시설장명 <input type="text"/>	<input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시설장주소 <input type="text"/>	시설장자격번호 <input type="text"/>	운영주체구분 <input type="text"/>	
운영주체구분 <input type="text"/>	시설설치일자 <input type="text"/>	승인일자 <input type="text"/>	
위탁여부 <input type="radio"/> 직영 <input type="radio"/> 위탁	대표자명 <input type="text"/>	대표자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대표자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대표자주소 <input type="text"/>	급여지급현원기준 <input type="text"/>	
입소정원 <input type="text"/> 명	입소정원비고 <input type="text"/>	자활사업참여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참여합 <input type="checkbox"/>
운영형태 <input type="text"/>	시설의료급여코드 <input type="text"/>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명	
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명	방문목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명	단기보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명	
재가노인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명			

● 직원

총인원 <input type="text"/> 명	자격종소지자 <input type="text"/> 명		
사무국장 <input type="text"/> 명	정신과전문요원 <input type="text"/> 명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생활지도원 <input type="text"/> 명	생활복지사 <input type="text"/> 명	작업치료사 <input type="text"/> 명	
영양사 <input type="text"/> 명	사무원 <input type="text"/>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input type="text"/> 명	
조리원 <input type="text"/> 명	위생원 <input type="text"/> 명	관리인 <input type="text"/> 명	
소장 <input type="text"/> 명	청소년지도사 <input type="text"/> 명	청소년상담사 <input type="text"/> 명	

※ 사회복지시설대장 상세조회 유무는 보장기관별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나. 대상시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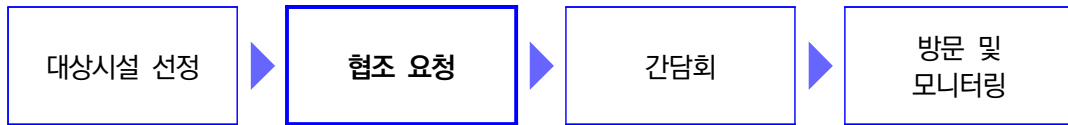


- 행복e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초정보 조사 후 대상시설 선정하여 명단 작성

사회복지시설 정보									비고
시설명	유형	시설장	주소	연락처	담당자	입소 정원	입소 현원	입원자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공민) (2023)

2 협조 요청



- 장기입원 대상자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 리플릿 등 자료 첨부하여 협조 공문 발송

❖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요청 공문(수신자 : 사회복지시설)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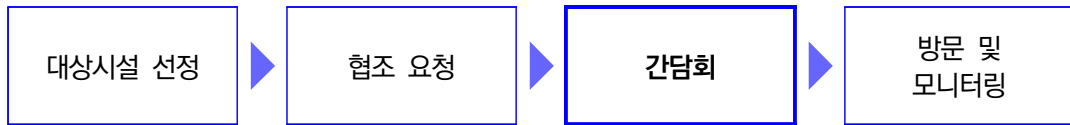
제 목 (장기)입원자 관리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협조 요청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기)입원자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리플릿 1부. 끝.

시·군·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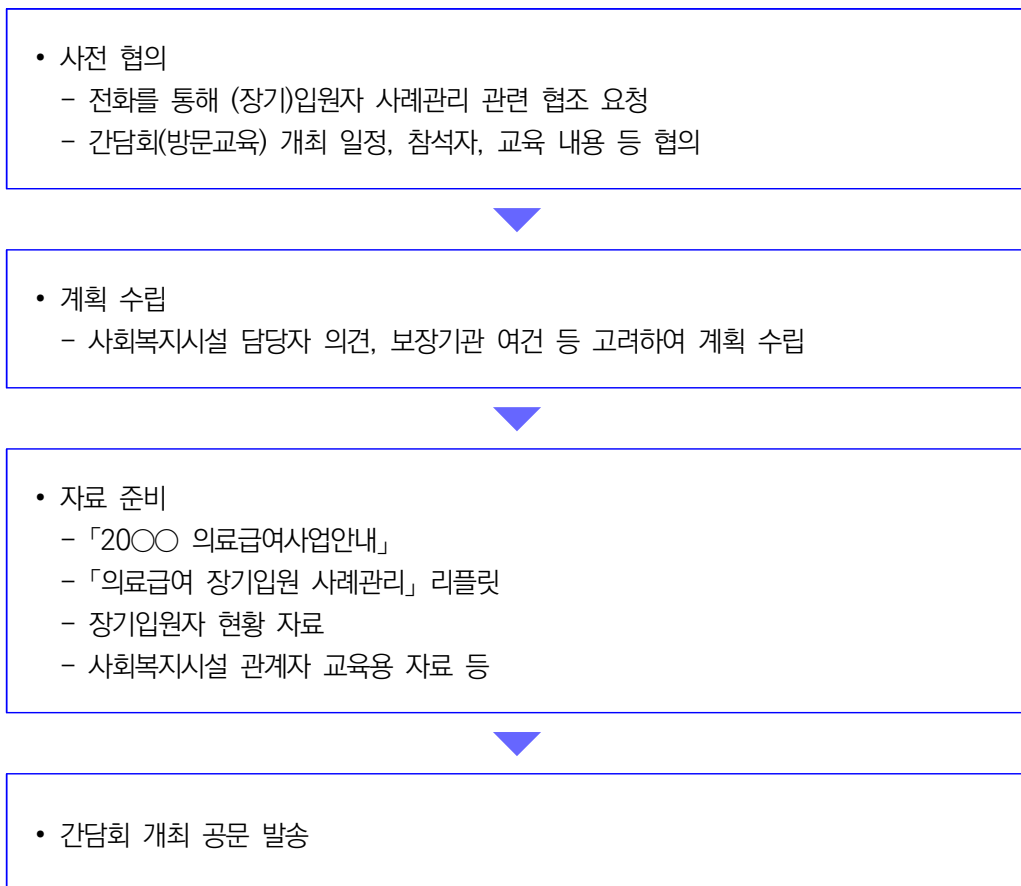
3 간담회 개최



가. 개요

- 대상 : 시설장, 사무국장, 담당자(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 횟수 : 보장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상황 고려하여 연 1~2회 개최

나. 방법 및 절차



○○시·군·구

수신자 사회복지시설장 외 □□

(경유)

제 목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관련, 관내 사회복지시설 간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목) 14:00~17:00

나. 장 소 : ○○시·군·구청 3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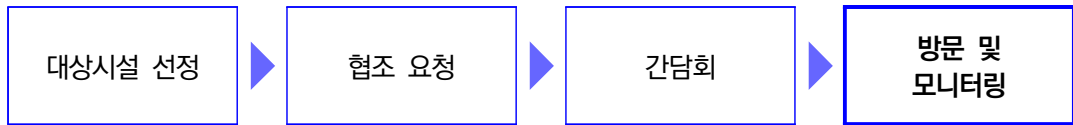
라. 주요 내용

- 의료급여제도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개요
- 시설 자체교육 운영현황(예 : 낙상, 약물복용 등)
- 장기입원자 관리 현황
- 기타 협조사항 등

- 붙임
1.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안내문 1부
 2. 퇴원 시 자원연계 목록 1부. 끝.

시·군·구청장

4 방문 및 모니터링



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담당자와 면담

나. (장기)입원자가 많거나 대상자 관리가 미흡한 시설 등 중점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자체교육 운영 독려

예시) 장기입원 발생 원인이 골절, 낙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주제에 대해 자체 교육

❖ 사회복지시설 방문 안내 공문 : '의료급여기관 방문 안내 공문 예시' 참조(p.130)

❖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안내문 :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안내문 예시' 참조(p.131)

제 4 장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I. 개요	141
II.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실제	144

I 개요

1 정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병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 또는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로 단기간의 관리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2 목적

-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종합적 접근으로 건강 삶의 질 향상 도모
-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에게 밀착 상담과 지속적인 관찰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적정 서비스 제공

3 관리대상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서 단기간의 관리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 중 상위 30% 이내인 자 우선 관리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Ⅰ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연중 관리 (12월 일괄종결)	<u>고위험군 수행서비스 기준 이상</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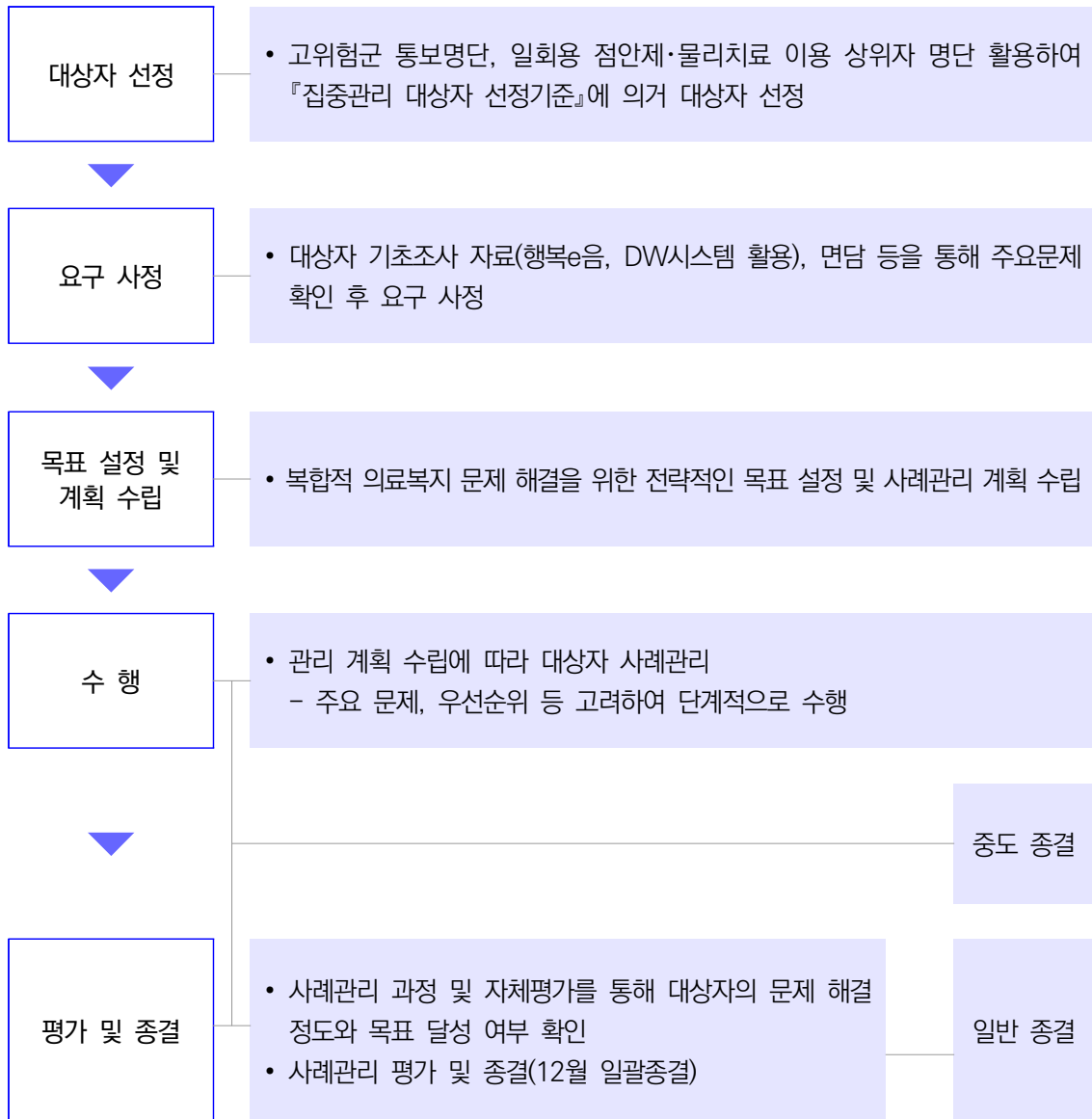
※ 행복e음 시스템 상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1분기 이내에 등록, 종결 예정일자는 12월 20일로 자동 설정되며, 12월 1~20일 사이에만 자체평가서의 일반종결로 공단 전송 가능

| 고위험군과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비교 |

구 분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 이용자 중 질병대비 부 적정 의료 이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 또는 입원대상자 중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 개입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중 질병 대비 부 적정 의료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중 우선 순위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질병 대비 과다한 부 적정 의료이용자 • 그 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사례관리 연간 목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에 따라 상이하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고위험지역 : 75~90명 - 입원고위험지역 : 50~65명 - 혼합지역 : 65~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과 관계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명
관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관리(12월 20일 일괄종결)
수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신 : 수시 • 전화 : 4회 이상 • 방문 :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자율 수행하되, 고위험군 최소 수행서비스 기준 이상 개입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월 말(1분기) 이내 사례관리 시작 및 등록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례관리 시작하되, 이후 관리 기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중도종결 미 해당건은 시작일 관계없이 연도 말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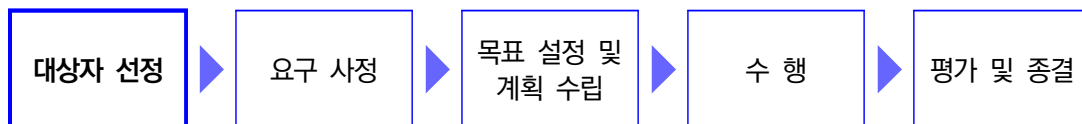
※ 사례관리 연간 목표인원 :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목표인원

5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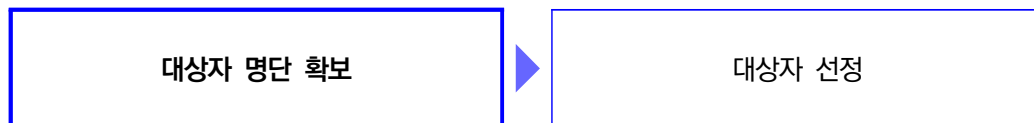


II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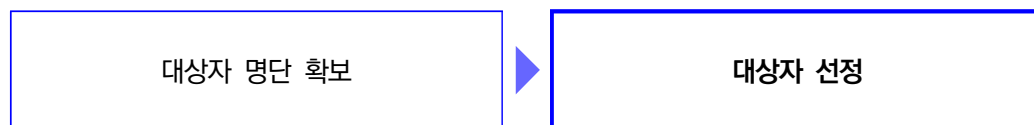


가. 대상자 명단 확보



- 고위험군 통보명단 활용
 -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명단 활용
- ※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p.51~55) 참고

나.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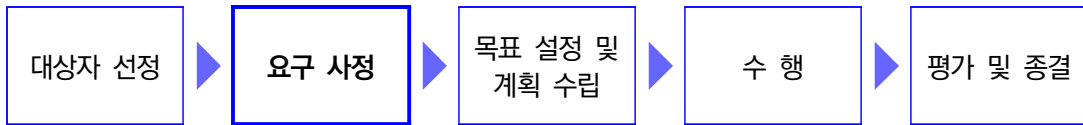
- 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

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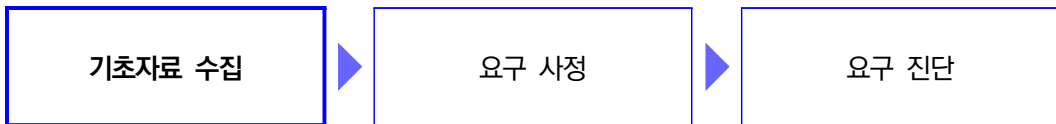
- 【외래】 •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이내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초과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 대상자 통보명단 외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 【입원】 •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체한 부 적정 입원자
- 의료기관 현황조사, 의뢰 등을 통해 발체한 부 적정 입원자

※ 전년도 고위험군 또는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종결자라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나, 가급적 새로 진입한 대상자를 우선 관리할 것

2 요구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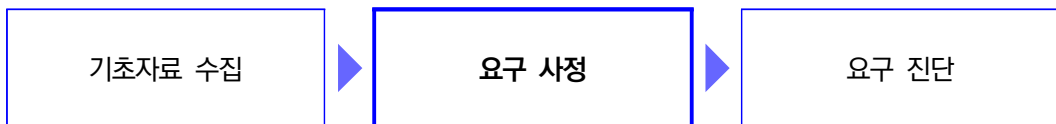


가. 기초자료 수집



- 행복e음 활용
 - (기초조사서) 주소, 연락처, 급여유형, 취득일자, 사례관리 이력 등 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 (윈스크린 조회화면) 가구원, 주거유형, 상담내역(결혼상태, 가족관계 등) 참고
- DW시스템 활용
 - 대상자 질환별·의료기관별 의료이용 현황 파악

나. 요구 사정



- 보유질환, 급여일수, 총 진료비, 이용 의료기관 수 등 의료이용 행태 파악
- 요구되는 자원 파악

- ❖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관리 > 선정기준/사정결과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수행기록지관리 | 지체평가서관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조회

기초조사서 등록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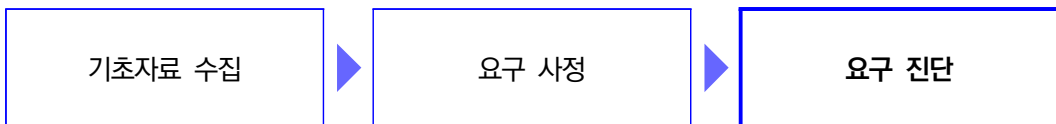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구분	사례관리시작일자	사례관리종결일자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대상자 기본정보 | 인적사항 | **선정기준/사정결과** | 목표설정/수행계획

구분	세부항목	사정결과
의료이용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
	이용 의료기관 수	[]
	의약품 처방정도	[]
	물리치료 이용정도	[]
	입원 이용정도	[]
자가건강관리	제도 이해정도	[]
	질병관리	[]
	약물복용상태	[]
지지체계 관리	생활습관관리	[]
	가족 내 지지체계	[]
	사회적 지지체계	[]
환경관리	자원연계	[]
	주거환경	[]
주치의 의견	선택 []	의료급여관리사 회원사정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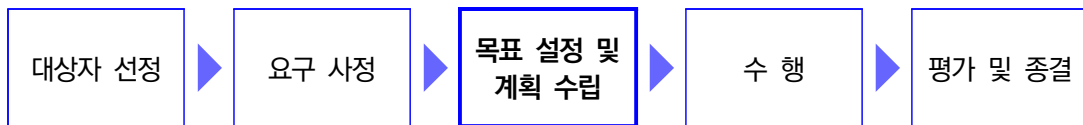
추가등록 | 저장

다. 요구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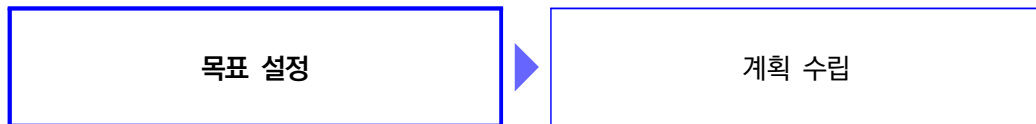


- 요구 사정한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해 주요 문제 확인 후 그에 따른 요구 진단 내림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가. 목표 설정



- 건강 상태, 의료이용행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목표 설정
- 건강 상태, 나이, 학력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의료이용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주요 문제 및 우선순위 목표 달성 가능성 등 고려하여 적정 목표 수립
- 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목표 설정
- 목표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기술
- 목표 설정 시 대상자를 참여시켜 책임감 및 동기 부여

SMART한 목표 설정 방법

S (specific)	• 구체적인 목표
M (measurable)	• 측정 가능한 목표
A (attainable)	• 달성할 수 있는 목표
R (realistic)	• 현실적인 목표
T (timely)	• 시기 적절한 목표

(made by 조지 도란)

❖ 목표 설정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구분	예시
<p>목표달성 여부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X) ⇒ 고혈압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명, 용량, 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알고 설명한다. (O) • 무릎 통증이 정도가 감소한다. (X) ⇒ 무릎 통증 정도가 8점에서 4점으로 감소한다. (통증측정 도구 활용) (O)
<p>목표 주체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에 한번 방문 상담하여 심리적 지지를 해준다. (X) ⇒ 한 달에 2번 보건소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O) • 주거환경 청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X) ⇒ 주거환경 청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1회 1번 이상 집 안 청소를 한다. (O)
<p>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를 7개에서 2개로 감소시키고, 기타질환 투약일수를 946일에서 500일 이하로 감소시킨다. (X) ⇒ 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3달 내에 7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 (O) ② 기타질환 투약일수가 2달 내에 946일에서 500일 이하로 감소한다. (O)

❖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관리 > 목표설정/수행계획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수행기록지관리 자체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② 기초조사서 등록이력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구분	사례관리시작일자	사례관리종결일자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대상자 기본정보 인적사항 선정기준/사정결과 **목표설정/수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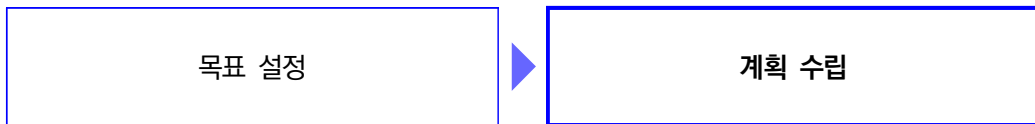
③ 목표설정

구분	세부문제	목표 설정	우선순위	목표
의료이용	비합리적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의료기관 이용 과다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의약품 중복처방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물리치료 부적절 이용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부적절 입원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자가건강관리	제도이해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부적절한 질병관리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약물 복용 불이행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지지체계	부적절한 생활습관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가족 내 지지체계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환경관리	자원연계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주거환경 불량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text"/>	

추가등록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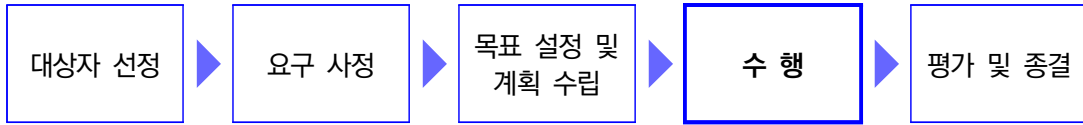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집중관리군)

나. 계획 수립



- 대상자 요구 사정 결과 및 목표 설정을 토대로 수행 시기, 내용,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의 구체적인 수행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후 세부 주요내용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

4 수행



-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자료 선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행
- 계획된 목표에 맞는 수행활동 진행, 추가 필요한 수행내용 여부 등 확인
- 대상자의 생활습관 관리, 의료이용 행태 등 실천 정도 파악 및 지지
- 필요시 재 상담 실시

❖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관리 >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등록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등록 기초조사서관리 자체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등록내역

차수	사례관리 시작일자	수행일자	수행방법	의료급여관리사

③ 수행내용

수행일자 수행방법

차수	우선순위	세부문제	목표	수행내용
1	1			
	2			
	3			

기타 상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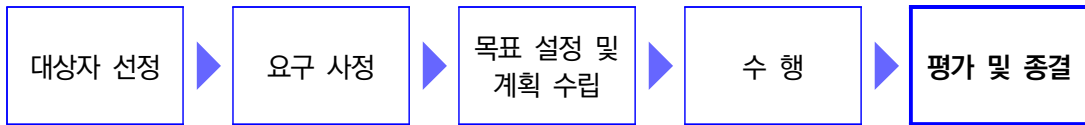
영역 연계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중복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1.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2. 주거	<input type="checkbox"/> 3.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input type="checkbox"/> 6. 보호 및 돌봄요양
	<input type="checkbox"/> 7. 보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8. 문화 및 여가	<input type="checkbox"/> 9. 안전 및 권익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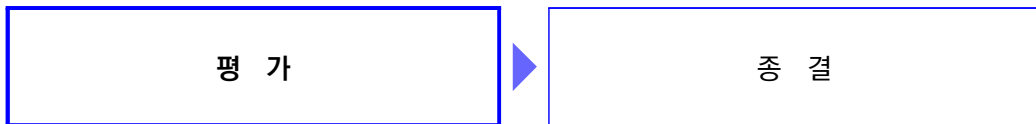
시설 입소 시
자원연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한센, 결핵) 기타 ()

* 자원연계서비스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내용이 보여집니다.

5 평가 및 종결



가. 평가



-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관심도, 건강 삶의 질 항목을 사례관리 전·후로 비교
- 목표 대비 달성 여부 평가 실시
- 목표 대비 달성 기인요인 및 미진사유 등 파악하여 향후 사례관리 시 활용

❖ 집중관리군 자체평가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자체평가서 관리 > 사례관리 평가

집중관리군 자체평가서 등록

가초조사서관리 | 수행기록지관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례관리평가 | 수행실적/결과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사례관리기간: [] ~ []

종결형태: [선택] | 종도종결사유: [선택]

대상자 퇴원여부: 퇴원 미퇴원 | 퇴원 못하는 사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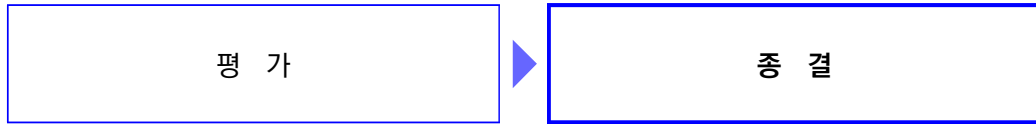
퇴원일자: [] | 퇴원 후 거주지: [선택] | 퇴원 후 돌봄제공자: 있다 없다

주관적 건강상태: 전 [] 후 [선택] | 건강관심도: 전 [] 후 [선택]

항목	전	후
운동능력	나는 걷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선택]
자기관리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지장이 없다.	[선택]
일상활동	나는 일상활동을 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선택]
통증/불편감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선택]
불안/우울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선택]

임시저장 | 공단전송

나.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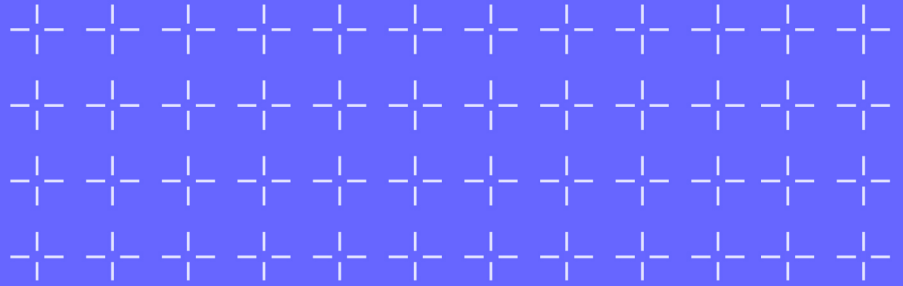
1) 종결기준

- 일반종결(행복e음 시스템 종결 가능기간 : 12월 1일~20일)
 - 목표 관리 횟수가 끝나고 사례관리 기간이 도래한 경우
 - ※ 당해 연도 12월에 일괄 종결하므로 조기종결은 없음
- 중도종결
 - 대상자 사망, 전출, 수급 중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개입

- 전년도 사례관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집중관리군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대상자 선정·관리

제 5 장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1 개요

대상자의 욕구,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파악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2 목적

사례관리 대상자 중 요구되는 자원을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증진 향상 도모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

3 내용

-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3] 작성
- 자원연계 전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와 구비서류 목록 확인
-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 경우 자원연계 의뢰서[서식12] 작성

4 종류

- 방문건강관리사업
- 정신건강사업(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 통합사례관리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자활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5 연계대상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각 사업별 관리기준 등을 확인한 후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 : 질환의심군, 건강행태위험군 등 건강취약 대상자
※ 건강행태위험군 : 흡연, 위험한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자
- 정신건강사업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등록 관리에 동의한 대상자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조현병(F00~F209), 양극성 정동장애(F31~F319)
- 중독관리사업 : 알코올(F10~F109)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
※ 연계 제외대상 : 알코올의 금단상태(F103, F104), 알코올 잔류 및 만기발병 정신병적 장애(F107)
- 통합사례관리사업 : 다양한(복지, 주거, 교육, 법률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으로 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 자활사례관리 : 직업상담 및 알선, 자활 및 일자리 사업 등 지원
- 드림스타트 :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6 연계방법

연계대상,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하기 전 담당자와 상의 후 공문을 통해 연계요청 및 회신결과 확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사업」

- (대상자 연계)

- 연계 주기 : 매월 1회

- 서식 : 자원연계 의뢰서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대상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결과 회신)

- 회신 주기 : 매월(방문건강관리사업) / 분기 1회(정신건강사업)

- 회신 내용

(연계일 : 년 월 일)

성명	성별	나이	연계내용 및 연계결과	비고

※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연계 결과는 아래 번호로 표시되어 회신

- ① 등록 후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②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으로 연계
- ③ 대상자가 서비스 거부

- 「통합사례관리사업」 및 「드림스타트」

-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드림스타트 대상자(사전협의 후 협력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합동방문 및 다각적 관리 실시

- (대상자 연계)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등록 대상자에 한함

❖ 대상자 의뢰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외래/장기입원/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조회]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순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등록여부	비상연락관계코드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인적사항 | 대상자 기본정보 | 합리적의료이용 | 건강상의 질 | 자가건강관리 능력 | 지지체계 구축 | 수행계획

외래 사례관리 유무 유 무 재등록여부 최초등록 재등록 의료급여관리사 [과제4번] [과제4번]
 사례관리 시작일자 [] 사례관리 종결일자 [] 종결예정일자 []
 등록일자 [2019-12-04] 지역구분 관내 관외 근로능력 있다 없다
 관외지역 [--- 시도선택 ---] [--- 시군구선택 ---] 관외개입 의료급여관리사 []
 비상연락번호 [] 비상연락관계 [선택] 직계가족수 [] 명
 결혼구분 [선택] 동거인관계 [선택] 동거인수 [] 명
 종교 [선택] 직업 있다 없다 최종학력 [선택]
 거주지역 있다 없다 월소득 [] 원 장기요양등급조회 [장기요양등급조회] 복지서비스조회 []
 의사소통능력 가능 불가능 장애유형 [선택] 장애정도 [선택]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입력일자 전 1개월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원일수는 사례관리 시작일자에서 입원일을 뺀 기간만큼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은 사례관리 시작일자로 부터 6개월+10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 이내에만 수정 및 자체평가서의 공단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원연계의뢰 의뢰신청서 [삭제] [추가등록] [저장]

※ 대상자 기본정보, 인적사항 탭 등 필수항목 입력·저장 후 [의뢰신청서] 버튼 활성화

❖ 의뢰신청 내역조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사례의뢰현황 > 의뢰신청내역조회

복지대상자 조회

의뢰신청내역조회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의뢰일자 [] ~ [] 의뢰자 [] [조회]
 접수구분 [전체] 접수상태 [전체] 관리행정동 [전체] [내담당 의뢰만]

의뢰신청내역

번호	신청구분	의뢰자	의뢰일자	의뢰부서	접수구분	접수상태	대상자	접수일자	행정동	생년월일	나이	진행
1	의료		2019-12-24		통합	접수		2019-12-24				인적정
2	의료		2019-12-23		통합	접수		2019-12-23				
3	의료		2019-12-23		드릴	접수		2019-12-23				
4	의료		2019-12-20		통합	접수		2019-12-20				
5	의료		2019-12-20		드릴	요청						
6	의료		2019-12-20		드릴	접수		2019-12-20				
7	의료		2019-12-20		드릴	접수		2019-12-20				
8	의료		2019-12-16		드릴	요청						
9	의료		2019-12-11		드릴	요청						
10	의료		2019-12-11		드릴	요청						
11	의료		2019-11-11		통합	요청						

[1] [전체 : 11 건]

- (의뢰 접수)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에서 의뢰된 대상자 조회 및 접수상태 설정

❖ 의뢰접수 내역조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사례의뢰현황 > 의뢰접수내역조회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의뢰접수내역조회' (Request Reception History) page. At the top,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대상자' (Target), '주인등록번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and '접수상태' (Reception Status). Below the filters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번호' (Number), '의뢰일자' (Request Date), '접수일자' (Reception Date), '대상자' (Target),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관리행정동' (Management Administrative District), '접수상태' (Reception Status), '의뢰사례' (Request Case), '의뢰자' (Requester), and '접수자' (Receiver).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공부내용)

7 의뢰받은 경우

- 건강상태, 의료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사례관리 여부 결정 및 결과 회신
 - ※ 예시) 질병 대비 의료쇼핑, 부적정 의료기관 선택, 약물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 숙식목적 또는 가족이 동반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 적정 입원자

8 사례관리 회의 참석

- 공공부문 사례관리 회의(예시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특히 대상자의 입·퇴원 관련 내용일 경우 반드시 참석
 - ※ 타 사업 추진 중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지원내용 등 안내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발견 시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연계 요청

9 기타 협조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교육 및 지원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시 혈압, 혈당 체크 등 만성질환 조기 발견
 -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 가구 중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시·군·구 관련 업무담당 팀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연간 의료급여사례관리 계획 수립 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장을 협조자로 지정하여 추후 단위사업 추진에 활용

❖ 예시 :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안)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안)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 도모 및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I. 개요

- 일 시 : 20○○.○.○.(목) 15:00~17:00
- 장 소 : □□시·군·구청 3층 대회의실
- 대 상
 - □□시·군·구청 :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 담당 공무원, 방문간호사

II. 주요내용

-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사업 개요
- 의뢰한 대상자 관리 현황
- 각 사업별 협조사항
- 기타 현안 등

III. 기대효과

-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예시 : 서비스 연계 의뢰 관련 공문(수신자 : 보건소)

□□시·군·구

수신자 ◇◇◇과

(경유)

제 목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방문보건서비스 연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년 ○월에 실시한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의뢰하오니 붙임 참고하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3. 의뢰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연계 여부를 ○○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서비스	비고

- 붙임 1. 자원연계 의뢰 결과서 1부
2. 자원연계 의뢰서 1부. 끝.

시·군·구청장

❖ 자원연계 의뢰 결과서

성명	성별	나이	연계 내용 및 연계 결과	비고

예시 : 자원연계 의뢰서

자원연계 의뢰서					
서비스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0000.00.00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치주질환 발생 등 부적절한 구강관리	필요 서비스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연계의뢰 사항	의뢰 대상기관	명칭	◇◇◇보건소 구강보건팀	담당자	△△△
		주소		전화번호	
	의뢰 서비스	올바른 치아관리방법 교육 및 칫솔질방법 등			
<p>1. 본 기관의 대상자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고자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귀 기관·단체로 서비스 실시를 의뢰하오니,</p> <p>2.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및 서비스 계획(서비스 내용 또는 제공방법, 담당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신(서면, 전화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상기 신청인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담 당 자 : (직) 성명</p> <p>문의전화번호 :</p> <p>담 당 기 관 :</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4. 의료급여사례관리 수
요 (공무원)

제 **5** 편

각종 서식

의료급여사례관리 기초조사서(외래)

I. 제도 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전반적 의료이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과다 <input type="checkbox"/> 과소 <input type="checkbox"/> 혼재		
2) 문제영역	<input type="checkbox"/> 외 래	<input type="checkbox"/> 약 물	
3) 세부문제	<input type="checkbox"/> 동일질병 의료쇼핑	<input type="checkbox"/> 중복 처방	
	<input type="checkbox"/> 다수 의료기관 이용(기관 수 ____개)	<input type="checkbox"/> 부 적정 복용	
	<input type="checkbox"/> 필요보다 전문기관 이용	<input type="checkbox"/> 잉여 약물	
	<input type="checkbox"/> 필요보다 일차기관 이용		
	<input type="checkbox"/> 과소 이용		
1. 의료쇼핑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2. 이용 기관 전문 수준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3. 이용 기관 수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4. 중복처방 정도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5.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III. 건강 상태			
1. 질병명 및 심각도	1) 질병 현황		
	건강 여부	질병코드 질병명	
	<input type="checkbox"/> 건강		
2) 기타 주요 증상			

2. 건강 상태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3. 일상수행능력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통증	①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② 심한 통증이 있다 ③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④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⑤ 전혀 없다
5. 우울	①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②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③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④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⑤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6. 신체증상관리 /상태 조절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7. 약물 복용	①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②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복용한다 ⑤ 처방대로 매우 잘 복용한다
IV. 자가 건강관리 수준	
1. 전반적 질병 이해 정도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건강 관심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3. 현 생활습관	1) 흡연 ① 1갑 이상 ② 1갑 이하 ③ 금연
	2) 음주 ① 안함 ② 불규칙적 ③ 규칙적
	3) 운동 ① 폭력 등 문제 ② 보통 ③ 절주
	4) 식이 ① 불균형 ② 보통 ③ 균형
4. 생활습관관리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5. 위생 및 예방	1) 개인위생 청결 정도 ① 불결 ② 보통 ③ 청결
	2) 예방접종 유무 ① 유 ② 무
	3) 정기 건강검진 유무 ① 유 ② 무
6. 위생 및 예방에 대한 관리 정도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V. 지지자원					
1. 지원 사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 수급자원</td> <td>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요구되는 자원</td> <td>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 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td> </tr> </table>	기 수급자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요구되는 자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 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 수급자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요구되는 자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 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사회적 고립도	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②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③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④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⑤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있다. ⑥ 해당사항 없음				
3. 자원연계 정도	① 매우 부족 ② 약간 부족 ③ 보통 ④ 양호 ⑤ 매우 양호				
VI. 생활환경					
1. 주거환경 (양호한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채광·환기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부엌 상태 <input type="checkbox"/> 안전 상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목욕시설				
VII. 수행계획					
1. 예상관리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input type="checkbox"/> 2개월 <input type="checkbox"/> 3개월				
2. 서신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3. 전화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4. 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5. 기타					

	질병 현황	질병코드	진단명
3. 건강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④ 보통	② 나쁘다 ⑤ 좋다 ③ 조금 나쁘다 ⑥ 아주 좋다
	우울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②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③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④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⑤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⑥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통증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④ 보통	② 매우 심한 통증 ⑤ 가벼운 통증 ③ 심한 통증 ⑥ 전혀 없다
	일상생활수행 정도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 있는 시간의 50%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튜브 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튜브 없음
	상처 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상처 없음
	4. 자가 건강관리 능력	신체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외래방문 약속일을 지킬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서식 3]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퇴원사정도구

퇴원 사정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

질병 특성

진 단 명(현재)	
입원 시 주 호소	
입 원 경 로	<input type="checkbox"/> ① 응급실 <input type="checkbox"/> ② 외래 <input type="checkbox"/> ③ 타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입 원 기 간	_____개월 _____일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퇴원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재활병원/일반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없음

간호요구도

1)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명료(alert) ② 기면(drowsy) ③ 혼돈(confusion)
④ 반혼수(semicomatose) ⑤ 혼수(coma)

2) 상처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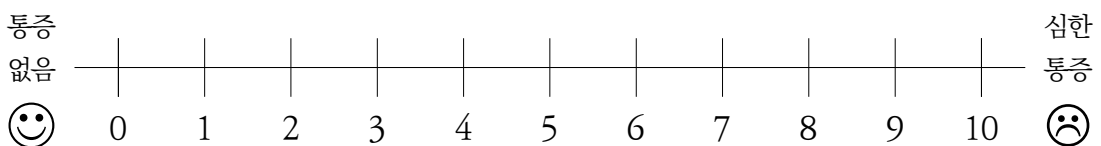
2-1) 상처간호가 필요한 부위가 있습니까 ?

- ① 유 (2-2 문항으로 이동) ② 무

2-2) 있다면 조직손상의 정도는 ?

- ① I 단계 ② II 단계 ③ III 단계 ④ IV 단계

3) 지난 1주일 간 통증의 정도는?



4)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표로 표시하십시오.

항 목	기능자립 정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① 옷 벗고 입기			
② 세수하기			
③ 양치질하기			
④ 목욕하기			
⑤ 식사하기			
⑥ 체위 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 조절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⑬ 머리감기			

5) 영양공급경로는 어느 것입니까?

① 경구 ② 위관영양(L-tube, Gastrostomy 등) ③ 총 비경구영양(TPN)

6) 튜브(tube) 관리

구 분	유	무
인공호흡기(Ventilator)		
산소 공급(O ₂)		
기관절개관(Tracheostomy)		
중심정맥관(C-line, port 등)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동정맥루관(Shunt)		
장루(Stoma)		
기타(자세하게 기술하세요)		

7)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의 투입경로는 어디입니까?

① 정맥(IV) ② 근육(IM) ③ 피하(SC) ④ 경구(oral) ⑤ 없음

→ 개인적 특성

8) 자가 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표 하시오.

문 항	전혀 자신없다	거의 자신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①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확인 할 수 있다					
②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					
③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 할 수 있다					
⑤ 외래방문 약속일을 지킬 수 있다					

9) 퇴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없다_____

② 있다_____

10) 퇴원의사와 상관없이 퇴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관적 건강/질병 인식

② 거주지 없음

③ 생계유지 곤란/경제적 어려움

④ 돌봄제공자가 없음

⑤ 병원 통원치료의 어려움(교통문제 등)

⑥ 이유없음

→ 환경

11) 퇴원을 한다면 누구와 함께 살 예정입니까? (모두 선택)

① 환자 혼자/아무도 없음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아들 부부

⑤ 딸 부부

⑥ 부모

⑦ 손자녀

⑧ 친인척/친구

⑨ 간병인

⑩ 기타()

12) 퇴원을 한다면 환자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

- ① 환자 혼자/아무도 없음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아들 부부
⑤ 딸 부부 ⑥ 부모 ⑦ 손자녀 ⑧ 친인척/친구
⑨ 간병인 ⑩ 필요없음 ⑪ 기타()

13) 퇴원을 한다면 거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환자 소유/전·월세(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② 가족 소유/전·월세(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③ 일반생활시설(양로시설/장애인시설/노숙인시설/아동·청소년 양육시설)
④ 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⑤ 요양병원/재활병원/일반병원
⑥ 기타()
⑦ 없음

➔ 의료급여관리사의 종합의견

항 목	구 분
14) 퇴원사정 결과	<input type="checkbox"/> ① 퇴원 불가 <input type="checkbox"/> ② 퇴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③ 퇴원 필수
15) 자원연계	<input type="checkbox"/> ① 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② 일반생활시설(양로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아동·청소년양육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③ 재가서비스(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보건(지)소/보건진료소], 재가복지, 노인장기요양방문 등)
16) 종합 의견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시설 현황조사표

- 방문 일시 : 년 월 일
- 기본 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시설명/시설유형		
입소자격		
정원/현원(명)		
비고		

- 입원 현황 :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방문 시 현 시점 기준)

연번	대상자명	진단명	입원 일자	입원 의료기관명	기타 사항	비고

- 교육 현황

1. 시설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시설 입소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4. 기타(건의사항)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사업 대상자 의뢰서

보장기관명(기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기관명(기호)		연계	① 퇴원 가능	② 시설연계 미흡	

진단명(현재)							
입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총 일)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퇴원여부	① 없음	② 시설	③ 의원	④ 병원, 종합병원	⑤ 상급종합병원		

순번	평가지표	환자 상태				
1	의식수준	① 명료	② 기면	③ 혼미	④ 반혼수	⑤ 혼수
2	상처간호 필요 여부	① 불필요		② 필요		
3	통증의 정도	① 없음	② 경미한 통증	③ 중증도 통증	④ 심한 통증	
4	퇴원 후 거처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5	퇴원 후 돌봄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6	일상생활 수행능력	완전 자립	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① 옷 벗고 입기	()	()	()	()	()
	② 세수하기	()	()	()	()	()
	③ 목욕하기	()	()	()	()	()
	④ 식사하기	()	()	()	()	()
	⑤ 방 밖으로 나오기	()	()	()	()	()
7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여부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신청 중	⑦ 미 신청		
8	기타 의견 (미 퇴원 사유 등)					
		년	월	일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인)	

※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의뢰는 엑셀파일 사용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시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청능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음악재활 <input type="checkbox"/> 행동 <input type="checkbox"/> 놀이심리 <input type="checkbox"/> 재활심리 <input type="checkbox"/> 감각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운동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심리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진단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영유아)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input type="checkbox"/> 44시간 <input type="checkbox"/> 88시간 <input type="checkbox"/>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5. 각종 서식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장애상태의 변화	[] 직장생활	[] 학교생활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취약가구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활동지원급여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조손가정 (19세 미만)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지원 유형	[] 단태아() [] 쌍생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 산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소득기준 이하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주인센터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험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 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 체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정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인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¹⁾)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시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 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9-1]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외래)

수급자명		생년월일		관리행정동	
주소				전화번호	
시작일자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동거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동거인 돌봄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교육수준		주거형태		종교	

1. 선정 기준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이내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초과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통보명단 외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2. 질병 현황	질병코드	진단명			
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4. 건강 관심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5. 건강 삶의 질	운동능력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			
	자기관리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			
	일상활동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 없다.			
	통증/불편감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불안/우울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5. 각종 서식

6. 의료 이용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이용 의료기관 수					
	의약품 처방정도					
	물리치료 이용정도					
	입원 이용정도					
	제도 이해정도					
7. 자가 건강 관리	질병관리					
	약물복용상태					
	생활습관관리					
8. 지지 체계 관리	가족 내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체계					
	자원연계					
9. 환경 관리	주거환경					
10. 수행 계획	서신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전화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기타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입원)

수급자명		생년월일		관리행정동	
주소				전화번호	
시작일자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동거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동거인 돌봄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교육수준		주거형태		종교	
입원일		재원일수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입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담당자		연락처	
기관 사례관리 협조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협조적 <input type="checkbox"/>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부분적 협조 <input type="checkbox"/>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퇴원시 거주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주 면담자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의료인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입력)	<input type="checkbox"/> 기관 관계자

1. 선정기준	<input type="checkbox"/>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체한 부 적정 입원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현황조사, 의뢰 등을 통해 발체한 부 적정 입원자				
2. 질병현황	질병코드	진단명			
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4. 건강관심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5. 건강삶의 질	운동능력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
	자기관리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
	일상활동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 없다.
	통증/불편감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불안/우울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6. 의료이용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이용 의료기관 수	
	의약품 처방정도	
	물리치료 이용정도	
	입원 이용정도	
	제도 이해정도	
7. 자가 건강 관리	질병관리	
	약물복용상태	
	생활습관관리	
8. 지지체계 관리	가족 내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체계	
	자원연계	
9. 환경관리	주거환경	
10. 수행계획	서신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전화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방문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기타	

자원연계 의뢰서						
서비스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 서비스	
연계의뢰 사항	의뢰 대상기관	명칭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의뢰 서비스					
<p>1. 본 기관의 대상자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고자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귀 기관·단체로 서비스 실시를 의뢰하오니,</p> <p>2.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및 서비스 계획(서비스 내용 또는 제공방법, 담당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신(서면, 전화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상기 신청인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담 당 자 : (직) 성명</p> <p>문의전화번호 :</p> <p>담 당 기 관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시장·군수·구청장 (인)</p>						

제6편

부 록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안) 195

I 안전관리

1 폭력

- 신체공격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 등을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함
-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행위, 기물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함

2 폭력 위험요인

1) 개인적 요인

- ① 정신질환 및 망상,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자
- ②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충동적 성향의 성격을 가졌을 경우
- ③ 약물남용 및 알코올 중독 여부
- ④ 신경학적 손상 발생(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 등)
- ⑤ 타인에게 폭력 행사, 협박을 하였거나 자해 경험이 있는 경우
- ⑥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 ⑦ 가족, 주변인의 지지 및 교류가 적은 경우

2) 환경적 요인

- ① 부모가 정신질환을 보유하였거나 약물남용 하는 경우
- ② 갑작스러운 실직,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최근 스트레스 요인 발생
- ③ 거주지가 빈곤지역이거나 지역사회 내 범죄율이 높은 경우

3 폭력유형별 대처방법

구분	대처방법															
언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분한 목소리 톤과 태도로 이야기하며,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함 직접적인 시선 접촉, 요청하지 않은 조언이나 비판, 논쟁 삼가 대상자가 흥분상태일 때 농담 하지 않기 대상자와 적절한 공간 확보하며 진정이 필요할 경우 침묵 사용 대상자의 언성이 높아질 경우 음료 등을 권하여 상담 속도 조절 가능한 중립적으로 말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음 대상자의 질문에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함 대상자가 폭언을 지속하여도 절대 흥분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욕설 등으로 맞대응하지 않음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질문 등을 통해 분노 감정 줄이는 대화 시·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언어적 진정 기술의 적용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내용</th> <th style="width: 50%;">예시</th> </tr> </thead> <tbody> <tr> <td>거절</td> <td>완곡한 표현으로 거절</td> <td>- “할 수 없습니다”, “안돼요” ⇒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td> </tr> <tr> <td>요청</td> <td>명령형이 아닌 청유형으로 요청</td> <td>- “하세요”, “기다리세요” ⇒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td> </tr> <tr> <td>대답</td> <td>부정형보다 긍정형으로 표현</td> <td>- “잘 모르겠는데요” ⇒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td> </tr> <tr> <td>질문</td> <td>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표현으로 접근</td> <td>- “화가 나셨나요?” ⇒ “언짢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td> </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녹음 사전 고지 후 대상자 상담내용 녹음 수차례 폭언 중지를 요청하여도 지속할 경우 상담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복귀하도록 함 	구분	내용	예시	거절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	- “할 수 없습니다”, “안돼요” ⇒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청	명령형이 아닌 청유형으로 요청	- “하세요”, “기다리세요” ⇒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대답	부정형보다 긍정형으로 표현	- “잘 모르겠는데요” ⇒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표현으로 접근	- “화가 나셨나요?” ⇒ “언짢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구분	내용	예시														
거절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	- “할 수 없습니다”, “안돼요” ⇒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청	명령형이 아닌 청유형으로 요청	- “하세요”, “기다리세요” ⇒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대답	부정형보다 긍정형으로 표현	- “잘 모르겠는데요” ⇒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표현으로 접근	- “화가 나셨나요?” ⇒ “언짢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와 적절한 거리 유지하며 상담함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치우고 신체적 접촉은 삼가 손가락질, 팔짱 낀 자세, 주머니 속에 손을 넣는 자세 등 삼가 대상자와 정면으로 서지 않으며 대상자 앞에서 등 돌리지 않음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접근하지 않음 대상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공격의 가능성에 주의함 폭력 발생 즉시 그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나며, 벗어날 수 없는 경우 도움 요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폭력상황 발생 시 신변보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도구(베개, 책 등)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머리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 바닥에 넘어졌을 경우 발과 다리로 공격 막기 - 머리를 잡아당기는 경우 대상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혀 손가락 꺾기 </div>															

구분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서 공격할 시 팔 올려 방어하기 - 뒤에서 공격할 시 재빠르게 주저앉아 피하기 - 목을 졸리고 있는 경우 양팔을 곧게 들어 올려 재빠르게 돌아서서 빠져나가기 - 대상자에게 물렸을 경우 물린 부분을 빼려고 하지 말고, 물고 있는 안쪽으로 밀어 넣기
성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시 높임말을 사용하여 적당한 거리를 둬 • 대상자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림 • 분명하고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하며 중단할 것을 요청 •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녹음 사전 고지 후 상담내용 녹음 • 중지를 요청하여도 지속할 경우 상담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복귀

4 안전 기본수칙

구분	내 용
방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해 위험요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특성, 과거 폭력이력, 폭력 관련 개인력, 전과기록,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여부, 위협이 될 만한 동물 여부 등 • 대상자 방문 일정에 대해 부서에 반드시 사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대상, 방문시간, 방문장소, 출장자, 예상복귀시간 등 - 예정에 없던 대상자 방문 시 유선 등을 통해 사전 보고 후 방문 • 폭력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대처방법 사전 숙지 • 친숙하지 않은 곳을 방문할 경우 방문지역에 대해 사전 숙지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 위험이 예측되는 대상자 방문 시 사회복무요원 동행 등 2인 이상 방문 • 방문 시 대상자나 가족이 술에 취해 있거나 다툼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방문을 연기하고 이미 방문하였다면 즉시 나오는 것이 바람직 •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방문 시 술이나 약물에서 회복되는 시간대 선택 방문하고 평소 협조적인 가족 및 보호자와 함께 면담 시행 • 소속기관과 이름 밝히고, 방문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 상담 전 흥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치우기 • 음료나 음식을 권할 경우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함 • 주방이나 방보다는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면담 진행하기 • 방문 시 모든 출구 확인. 방문 또는 현관문은 열어 두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앉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시 활동이 불편한 의복 및 장신구 착용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타이, 부츠, 굽 높은 구두, 모자 달린 상의, 길이가 긴 장신구 등 •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기 • 차량 이용 시 가능한 공용차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는 되도록 가까운 곳에 하며 상담이 끝나고 돌아갈 때 다른 차에 막혀 떠나기 어렵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는 방향으로 주차하기 - 자동차 열쇠는 가방보다 주머니에 보관하기 - 대상자와 함께 차량 탑승 시 반드시 2인 1조로 탑승하며 대상자는 조수석 뒷자리, 미 운전자는 대상자 옆자리에 함께 앉도록 함 • 위험 발생 시 인근 파출소, 119 응급구조대 등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대기하거나 면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상담실 내부 공간 충분히 확보 • 상담실 안 가구는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것으로, 테이블은 물리적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폭이 넓은 것으로 비치 • 위험이 되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별도 비치 • 폭력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시스템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 보안카메라, 녹음 전화기 등 설치 •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기관(경찰 등)과의 사전 협의 및 신고 시스템 구축
대상자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으며 상담실 문은 열어두기 • 대상자가 흥분상태이거나 위협적인 경우 상담실보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넓은 곳에서 면담하여 안전 확보하기 • 대상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함 • 위험이 되는 상황이면 상담을 중단하고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림 •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 규정과 기준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며 존중의 태도를 유지 •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대상자의 경우 일단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어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함 • 음주 상태인 경우 감정을 가라앉히고 술이 깬 후 재방문해 줄 것 권유 • 흥기를 소지한 경우 흥기를 함부로 빼앗기보다 책상이나 바닥에 내려 놓도록 제안하고 다수의 사람이 제지하며 경찰에 도움 요청

1) 대상자가 기관으로 방문한 경우

- ※ 상담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대상자의 감정조절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즉시 종료하여 안전 확보하기
- ※ 위험한 상황에서까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므로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하지 않아야 함

❖ 관련법령

① 폭행 및 협박 관련

-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희롱 관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기물 파손 관련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녹음 관련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II 감염병 예방

1 감염병

사람에게 침투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

2 전염경로에 따른 분류

1) 공기매개 감염병

- 정의 :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
 - * 비말핵 : 환자의 기침, 재채기, 타액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와 날아다니기 쉬운 형태로 된 것
- 종류

구 분	잠복기	증 상	치 료
결 핵	4~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 기침, 가래, 식욕부진, 식은 땀, 전신 피로감, 체중 감소,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남 • 완치 후에도 석회화된 결핵종, 폐실질내 공동, 기관지 확장증, 기흉 등의 후유증이 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결핵제 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 호전되어도 최소 6개월 이상 약 복용 - 약을 정확히 복용하지 않을 경우 질환 악화, 약제 내성균 발생
인플루엔자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 객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 발생 48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사용 • 대증요법 시행
풍 진	12~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와 목 뒤, 후두부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커짐 • 얼굴에서 신체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발진이 나타남. 색소침착은 없음 • 발열, 피로, 결막염, 비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증요법 시행 • 임신부의 풍진 노출 시 즉시 항체검사하여 감염 여부 확인

구 분	잠복기	증 상	치 료
홍역	7~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구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 (발진기) 앞머리에 홍반성 구진이 생긴 후 24시간 내 얼굴, 목, 팔, 몸통으로 번짐. 2일째는 대퇴부, 3일째는 발까지 확산된 후 발진이 생긴 순서대로 소멸되며, 발진 출현 후 2~3일 간 40℃ 이상의 고열 발생 • (회복기) 발진 소멸 후 색소침착을 남긴 후 피부가 작은 겨 껍질 모양으로 벗겨지며 7~10일 내에 소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과 영양공급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약 2~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액선 비대와 동통이 특징이며, 대부분 이하선(귀밑샘)을 침범 • 처음에는 한쪽에서 시작하여 2~3일 후에는 양쪽이 붓지만, 환자의 약 25%는 한쪽만 침범하기도 함 • 이하선 비대는 1~3일째 최고에 달하며 7일 이내 점차 가라앉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자연 치유됨 •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 시행
디프테리아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과 함께 코, 인두, 편도 등 상기도 침범 부위에 위막을 형성하고, 드물게 피부, 결막 등을 침범함 • 목 부위가 심하게 부어 황소 목처럼 보이는 소목 증상(bull neck)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독소 및 항생제 투여 • 대증요법 시행
뇌수막염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두염, 발열, 근육통, 전신쇠약 등 • 뇌막염 증상(두통, 구토, 고열, 의식 저하)이나 뇌막자극 징후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치료 • 대증요법 시행

2) 접촉성 감염병

- 정의 : 감염자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 시 전염되는 감염병
- 전파경로
 - 비경구적 노출 : 오염된 주사침,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 점막 노출 : 감염자의 혈액, 체액 등이 눈, 코, 입에 튀는 경우
 - 피부 노출 : 베이거나 피부가 벗겨졌거나, 피부염 등으로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 기타 : 물리는 등 기타 감염원에 노출된 경우

• 종류

구분	원인	잠복기	증상	치료
파상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 동물 분변에 있던 파상풍균 포자가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 • 화상, 비위생적인 외과적 시술, 동물에 물리는 경우 등 	3~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복기가 짧을수록 경과가 좋지 않음 • 초기 상처 주위 근육 수축 발생하며, 점차 목과 턱 근육이 수축되고 차츰 입을 열지 못하거나 삼키지 못하는 등 마비 증상이 나타남. 이후 몸통 근육수축으로 진행 • 전신 경련,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글로불린투여 • 항생제 치료 • 상처 소독 및 괴사 조직 제거 등
B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접촉 시 • 출산 시 B형 감염이 있는 모체에서 수직감염 • 성적 접촉,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등 	45~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한 소변색, 황달,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구역, 구토, 오심, 근육통, 미열, 이상복부 통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 대개 저절로 회복됨. 휴식과 고단백 식이요법 필요 • 만성 : 항바이러스제 치료
유행성 각결막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와의 손접촉, 감염자가 쓰던 수건 사용 등 직간접적 접촉에 의해 발생 • 수영장, 사우나 등 습기 및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잘 발생 	12시간~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혈, 통증, 이물감, 눈곱, 눈물, 눈꺼풀종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항생제안약 투여

3 예방

- ① 예방백신 접종
- ② 보호구 착용(마스크 등)
- ③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 ④ 대상자 대면 시 적절한 거리 유지
- 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성 주지

- 감염병 종류, 원인, 감염경로, 증상 및 잠복기, 예방방법, 감염 노출 및 감염 시 보고 등 조치방법



안전사고 대책

1 지자체의 역할

- ① 상해보험 가입
- ②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 ③ 1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 ④ 조직 내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사건사고 보고체계 구축
- ⑤ 안전매뉴얼 비치 및 관련 보고양식과 필요 서류 마련
- ⑥ 위험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 ⑦ 파출소, 119 응급구조대와의 업무 연계체계 사전 구축
- ⑧ 방문인력의 예정 복귀 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안전 여부 확인
- ⑨ 방문인력이 위험사건에 대해 보고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숨기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
- ⑩ 피해 받은 방문인력에게 심리적 치료, 업무복귀 지원 등 사후관리 실시
- ⑪ 방문인력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대책을 계획하고 업무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이직 예방

2 사고 유형별 대책

구분	내용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안전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사실 내부 공유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 필요시 정신건강 상담 등 치료 지원
폭력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차, 경찰 등 필요한 관련 기관에 연락 • 폭력 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필요시 법적 대응 여부 협의

구 분	내 용
감염병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을 나타내는 증상이나 증후가 있는지 관찰 • 감염이 의심되는 즉시 검사 실시하여 감염 여부 확인 •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감염 후 동료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 제한

3 안전사고 보고서

- ① 필요성 : 사고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기록과 근거 필요. 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사후 지원의 근거 제시
- ② 작성시기 : 사고 발생 직후 또는 사고 발생 징후가 파악되었을 경우 작성
- ③ 작성자 : 사고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당사자가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목격자가 작성할 수 있음
- ④ 작성내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사고발생 경위 및 내용 등

예시 : 안전사고 보고서

안전사고 보고서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사고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사고발생 장소		가해자명	
피해자명		가해자 성별/나이	
목격자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증거자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사고유형	<input type="checkbox"/> 폭력 (<input type="checkbox"/> 언어폭력 <input type="checkbox"/> 신체폭력 <input type="checkbox"/> 성적폭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감염 (<input type="checkbox"/> 공기매개 감염 <input type="checkbox"/> 접촉성 감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물질적 손상()		
사고발생 형태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서면(편지, 이메일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발생 경위			
사고피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손상(한달 이내) <input type="checkbox"/> 장기적 손상(한달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작용 발생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이상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			
사고조치 후 결과	<input type="checkbox"/>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input type="checkbox"/> 지속적인 치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추후 관찰 필요 <input type="checkbox"/> 기타()		
향후 대처계획			
보고일자	년 월 일 시		
보고자		근무부서	

참고자료

- 의료업 종사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안전보건공단, 2013
- 감염병관리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6
-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7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7

2020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전 화 : 02) 3495-2914 / 팩스 : 02) 521-2624

홈페이지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macmc.or.kr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